

발 간 등 록 번 호
11-1352159-000521-01

행복한
대한민국을 여는
정부 3.0

Vaccination for tomorrow
건강한 내일을 여는 예방접종

www.cdc.go.kr



2016-2017절기 인플루엔자관리지침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인플루엔자 관리지침 발간 목적

- 인플루엔자 관리 기본 방침과 목표를 제시하여 인플루엔자 관리체계를 구체화하고 관련 정책의 지향점을 명확히 하기 위함
- 인플루엔자 관리를 위해 필요한 예방접종과 감시(임상감시, 실험실감시) 관련 필수 지식과 행정관리사항을 제공하여 관련 업무수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첫 발간	2002. 9.
1차 개정	2003. 8.
2차 개정	2004. 8.
3차 개정	2005. 9.
4차 개정	2006. 8.
5차 개정	2007. 8.
6차 개정	2008. 9.
7차 개정	2010. 8.
8차 개정	2011. 9.
9차 개정	2012. 9.
10차 개정	2013. 9.
11차 개정	2014. 9.
12차 개정	2015. 8.
13차 개정	2016. 6.

13차 개정판의 변경 사항

- '16~'17절기 인플루엔자 유행기준
- '16~'17절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실시기준(8세 이하 접종 기준)
- 절기별 WHO의 권장 백신주
- '16~'17절기 노인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16~'17절기 인플루엔자 관리 정책 개요

구 분	개 요
예방접종	<p>예방접종권장시기</p> <p>10~12월 ※ 인플루엔자 유행시기(12월~익년 4월), 백신공급시기, 예방접종 효과 지속기간(약6개월(3~12개월))을 고려하여 결정</p>
	<p>우선접종권장대상</p> <p>『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80호)</p> <p>① 만성폐질환자, 만성심장질환자 ② 만성질환으로 사회복지시설 등 집단시설에서 치료, 요양, 수용 중인 사람 ③ 만성간질환자, 만성신질환자, 신경-근육 질환, 혈액-종양 질환, 당뇨병자, 면역저하자(면역억제제 복용자), 아스피린 복용 중인 6개월~18세 소아 ④ 65세 이상의 노인 ⑤ 의료인 ⑥ 만성질환자, 임신부, 65세 이상 노인과 함께 거주하는 자 ⑦ 6개월 미만의 영아를 돌보는 자 ⑧ 임신부 ⑨ 50~64세 인구 ⑩ 생후 6개월~59개월 인구</p> <p>『조류인플루엔자 대응정책』</p> <p>⑪ 조류인플루엔자 대응 기관 종사자 : 시·도 보건위생과 및 축산과, 보건소, 검역소,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보건환경연구원, 축산위생연구소, 국립환경과학원, 출입국관리사무소, 세관, 질병관리본부, 식품의약품안전처 ⑫ 닭·오리·돼지농장 및 관련업계 종사자</p>
	<p>노인 접종 지원</p> <p>○ 대상 : 65세 이상(195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시기 : 10월 4일~11월 15일 ○ 접종기관 : 전국 보건소(지소) 및 민간위탁기관 ※ 예방접종비용 국가에서 지원</p>
임상표본감시	<p>표본 의료기관수</p> <p>○ 전국 200개 의원 ※ 200개 임상감시기관 중 36개소에서 실험실감시 참여</p>
	<p>보고주기</p> <p>○ 주간감시 : 1주(5월~11월) ○ 일일감시 : 1일(12월~익년 4월 운영)</p>
	<p>분석주기</p> <p>○ 1주, 1일(12월~익년 4월)</p>
	<p>분석기준</p> <p>○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Influenza-like Illness, ILI) :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수/총 진료환자 수×1,000(%)</p>
	<p>의사환자</p> <p>○ 38℃ 이상의 갑작스러운 발열과 더불어 기침 또는 인후통을 보이는 환자</p>
	<p>보고방식</p> <p>○ Web 또는 FAX를 통한 직접 보고</p>
<p>실험실 표본감시</p> <p>○ 참여기관 : 민간기관 36개소,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17개소, 검체 수송기관 ○ 사업내용 :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유전자 검사 및 바이러스 분리 유행주 아형 및 항원형 분석, 항바이러스 내성주 감시</p>	
<p>유행예측</p> <p>○ 사인함수 분석, 과거 3년간 동기간 누계 평균을 활용한 분석 ○ 분리된 바이러스 아형에 따른 유행 예측</p>	

I. 인플루엔자 발생 현황 및 관리 정책	1
1. 인플루엔자 개요	1
2. 인플루엔자 발생 현황	7
3. 인플루엔자 관리 정책	9
4. '16~'17절기 인플루엔자 관리 방향	12
II. 인플루엔자 임상표본감시	16
1. 임상표본감시 목적	16
2. 임상표본감시기관 지정	16
3. 신고를 위한 환례정의 및 유행기준	6
4. 기관별 역할 및 보고 체계	17
III. 인플루엔자 실험실표본감시	19
1. 실험실표본감시 목적	19
2. 실험실표본감시 기관	19
3. 기관별 역할 및 의뢰 체계	19
4. 검체 채취 및 의뢰 방법	23
5. 검사 방법	25
IV.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27
1.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의 특성 및 일반사항	2
2. 예방접종 효과	29
3. 국내 인플루엔자 백신 수급 및 접종 현황	3
4. 예방접종 실시 기준	31
5. 예방접종 안전관리	34

C/O/N/T/E/N/T/S

V. 노인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㉔
1. 사업 개요	37
가. 추진배경 및 목적	37
나. 사업 목표 및 전략	37
다. 법적 근거	38
라. 사업 내용	39
2. 세부 사업 내용	40
가. 목표 접종량	40
나. 사업 추진체계	40
3. 사업용 백신 공급 및 관리	42
가. 백신 구매 및 분배 개요	42
나. 백신 관리 원칙	43
다. 백신 수요 확정 및 분배 절차	44
라. 잔여백신 관리	45
마. 백신비 비용 지급	46
4.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업무	46
가. 예방접종업무 위탁 계약	47
나. 백신 수요 제출 및 공급	55
다. 백신 인수 및 관리	55
라. 예방접종 일반원칙	56
마.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	57
바. 예방접종기록 등록 및 비용 지급	58
5. 거동불편 사업대상자 예방접종	60
가. 거동불편 사업대상자 범위	61
나. 요양병원 및 노인의료복지시설별 사업 방식	16
다. 예방접종기록 전산등록 및 비용상환	㉔

6. 사업 예산관리	62
가. 지자체 예산 처리 절차	62
7. 사업 모니터링	64
가. 예방접종 실시 현황	64
나. 이상반응 신고 현황	64

별첨서식 목차

1. 인플루엔자 임상표본감시 신고양식	7
2. 인플루엔자 및 급성호흡기감염증 실험실검사 의뢰서 및 동의서	8 6
3. 예방접종 예진표	69
4.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역학조사서	70
5. 노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사전 자율점검표	2 7
6. 노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사전 방문점검표	4 7
7.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	76
8.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지정서	8
9.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계약 해지 신청서	97
10.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계약 관리대장	98
11.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기본교육 수료증	18
12.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보수교육 수료증	28

C/O/N/T/E/N/T/S

부록 목차

1. '16~'17절기 인플루엔자 우선접종 권장 대상 추계	5
2. '16~'17절기 조류인플루엔자 대응기관 접종인원 추계	68
3. 절기별 WHO의 권장 백신주	87
4. '16~'17절기 국내 유통예정인 인플루엔자 백신 종류	88
5. '15~'16절기 노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주별 접종 실적	98
6. 최근 3년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신고 및 피해보상 신청현황	99
7. 아나필락시스 대응 매뉴얼	91
8. (의료기관)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사용권한 신청 매뉴얼	99
9. (의료기관)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예방접종업무권한 신청 매뉴얼	201
10. (의료기관) 노인인플루엔자 시스템 매뉴얼	10
(의료기관) 예방접종관리업무 계약 신청	10
(의료기관) 백신관리	114
(의료기관) 접종관리	116
(의료기관) 비용상환관리	119
(의료기관) 점검관리	124
(의료기관) 이상반응 전산관리	126
11. (보건소) 노인인플루엔자 시스템 매뉴얼	13
(보건소) 예방접종관리업무 계약관리	13
(보건소) 백신관리	134
(보건소) 접종관리	139
(보건소) 비용상환관리	141
(보건소) 점검관리	155
(보건소) 이상반응 전산관리	160
12. 계절 인플루엔자 관련 FAQ	164
13. 노인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련 FAQ	16



참고자료 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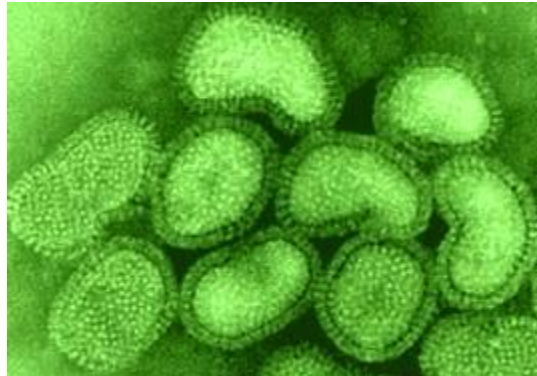
1. 항바이러스제 요양급여 기준	181
2. 관련부서 역할 및 연락처	183
3.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연락처	184

I. 인플루엔자 발생 현황 및 관리 정책

1 인플루엔자 개요

가. 병원체

-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orthomyxoviridae과에 속하는 단쇄, 나선형 RNA 바이러스로, 핵산의 구성에 따라 A, B, C형으로 분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 바이러스 형
 - A형 인플루엔자
 - A형은 표면 항원인 hemagglutinin(HA)과 neuraminidase(NA)에 의해서 아형(subtype)이 결정
 - HA는 바이러스가 체세포에 부착하는 역할, 18가지 아형(H1-H18) 존재
 - NA는 바이러스가 감염된 세포로부터 방출되어 새로운 호흡기 세포로 전파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함, 11가지 아형(N1-N11) 존재
 - 감염 시 중등도 내지 중증 경과를 보이고 모든 연령에서 발생하며, 사람뿐만 아니라 돼지 및 조류도 감염 가능
 - B형 인플루엔자
 - A형보다 경한 증상을 나타내며, 주로 소아에서 발생
 - B형 인플루엔자는 A형보다 항원변화가 적으며, 면역학적으로 안정적임



- 사람만 감염되며, 수두 바이러스와 함께 아스피린을 복용 중인 소아에서 라이 증후군(Reye syndrome) 발생과 관련 있을 것으로 의심됨

- C형 인플루엔자

- 대부분 무증상
- 인플루엔자 유행과 연관 없음

- 항원변이

- 크고 작은 항원변이는 거의 매년 일어나며 이러한 항원변이를 통하여 계속적으로 인플루엔자의 유행이 초래됨

- 항원 대변이

- HA 또는 NA의 변화에 의해 항원이 기존의 것과 전혀 다른 새로운 아형의 HA나 NA로 변화
- 항원 대변이는 인플루엔자 대유행(pandemic)과 관련이 있으며 A형 인플루엔자에서 주로 발생
- 동물에서 유행하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직접 사람에서 감염을 일으키거나, 서로 다른 형의 바이러스가 한 개체 내에서 중복감염이 일어난 후 유전자 재편성을 일으켜 새로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생기는 것으로 알려짐

- 항원 소변이

- A형 및 B형 인플루엔자에서 발생
- HA나 NA를 유전자 수준에서 점상 돌연변이(point mutation)가 축적되어 소수의 아미노산 변화로 나타남
- 이러한 항원 소변이는 거의 매년 일어나게 되며, 계절 인플루엔자 유행(epidemic)의 원인임

나. 역학

- 전파

- 인플루엔자 환자가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분비되는 호흡기 비말을 통해서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파
- 폐쇄 공간 내의 밀집된 집단에서 공기 감염도 가능하며, 건조한 점액에서도 몇 시간 동안 생존할 수 있기 때문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오염된 물건이나 환경을 만지고 나서 눈이나, 코, 입 등을 만지는 경우 접촉감염 발생 가능

- 동물에서 사람으로의 감염은 흔하지 않으나, 감염된 동물의 분비물에 직접 닿거나 간접적으로 사람이 접촉했을 때 감염 가능
- 주로 겨울철에 발생하며 우리나라를 포함한 북반구에서는 주로 10월부터 4월 사이에 유행

● 잠복기 및 전염력

- 잠복기는 1~4일 정도이며 평균 2일
- 대체로 증상발현 1일 전부터 발병 후 약 5일 정도까지 전염력이 있음
 - 소아에서는 전염가능 기간이 더 길어 증상 시작 후 10일 이상까지도 전염력이 있을 수 있음

다. 증상 및 징후

● 전신증상 및 호흡기 증상이 갑자기 시작됨

- 발열, 두통, 근육통, 피로감 등의 전신 증상과 인후통, 기침, 객담, 비염 등의 호흡기 증상을 보임

● 콧물, 코막힘, 흉통, 안구통, 복통, 구토 등의 증상이 동반되기도 함

● 복통, 구토, 경련 등이 드물게 발생함

● 가장 흔한 합병증은 폐렴이며, 노년층이나 만성질환자 등에서 발생 시 기저질환이 악화되거나 합병증으로 사망도 가능함.

라. 진단

● 임상적 진단

- 인플루엔자의 임상적 진단은 지역사회에 인플루엔자가 유행하는 동안 내원한 환자가 특징적인 임상소견을 나타내는 경우 의심할 수가 있음
- 일반적으로 감염된 사람들의 약 50%만이 인플루엔자의 전형적인 증상들을 나타냄

● 실험실 진단

- 바이러스 분리
 - 바이러스는 발병 3일 이내에 인후 및 비인두 도찰물이나 흡인물로부터 분리함



- 배양은 바이러스 증식이 용이한 MDCK(Madin-Darby Canine Kidney)와 같은 세포주나 계태양막 또는 요막강(amniotic or allantoic sac)에 접종하여 시행
- 신속 바이러스 항원 검출(Rapid Antigen Test, RAT)
 - RAT는 진료실에서 환자로부터 검체를 직접 채취하여 10~20분 만에 결과를 알 수 있는 등 사용하기 간편하고 신속한 장점이 있음
 - 배양 또는 중합효소 연쇄반응검사(Polymerase Chain Reaction PCR)
- 바이러스 핵산 검출
 -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특이 oligonucleotide primer를 이용하여 PCR 검사법에 의해 바이러스 유전물질을 검출함
 - PCR은 민감도가 매우 높은 검사법이나 실험실내에서 검체간 교차 오염을 주의하여야 함
- 혈청학적 검사
 - 급성기와 회복기 혈청 간 인플루엔자 특이 항체를 hemagglutination inhibition(HI), EIA, complement fixation 또는 neutralization 검사 방법으로 측정하여 4배 이상 증가하면 인플루엔자 감염으로 진단 가능
 - 인플루엔자의 혈청역학적 연구, 백신의 면역원성 연구에 유용함
 - ※ 혈청학적 인플루엔자 항체가 검사를 위해서는 발병 1주일 내 급성기 혈청과, 2-4주 후 회복기 혈청이 확보되어야 함

마. 대증치료

- 인플루엔자는 다른 바이러스 질환과 같은 대증치료가 주된 치료법이며, 주로 호흡기 증상과 전신 증상에 대한 대증치료를 실시하고 합병증 발생 여부에 따라 추가적인 관리와 치료를 하게 됨
- 안정을 취하면서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해열진통제, 진해거담제 등의 복용으로 증상을 경감시킴
- 중이염, 폐렴과 같은 합병증이나 2차 감염 발생 시 항생제 투여
- 합병증이 없는 인플루엔자의 경우 항생제 치료는 효과가 없음
- 증상이 아주 심한 경우나 심각한 합병증이 우려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플루엔자에 사용가능한 항바이러스 제제를 사용할 수 있지만 부작용도 있으므로 신중하게 투여되어야 함

바. 항바이러스제 치료

● 항바이러스제의 종류

- M2 inhibitor(Amantadine, Rimantadine)
- Neuraminidase inhibitor(Oseltamivir, Zanamivir, Peramivir)

● 항바이러스제의 적응증 및 투여법

- M2 inhibitor(Amantadine, Rimantadine)

- B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는 효과가 없으며 A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만 효과가 있음
- 증상 시작 48시간 이내에 투약 시 A형 인플루엔자에 의한 발열 및 기타 전신증상의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음
- 2005-2006절기 미국 CDC의 보고에 따르면 92%의 A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Amantadine에 내성을 보였으며, 최근 국내 분리 A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대부분도 Amantadine에 내성을 나타냄
- Amantadine에 내성을 보이는 경우 Rimantadine에도 내성을 보이므로 최근 A형 인플루엔자에 대한 M2 inhibitor에 대한 사용은 권고되지 않음

- Neuraminidase inhibitor(Oseltamivir, Zanamivir, Peramivir)

- A형 및 B형 인플루엔자에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음
- 증상 시작 48시간 이내에 투약 시 인플루엔자 A형 및 B형에 의한 발열 및 기타 전신증상의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음

- 투여방법으로 Amantadine, Rimantadine, Oseltamivir는 알약이나 시럽제제로 경구 투여하며, Zanamivir는 건조분말제제로 경구 흡입하고 Peramivir는 정맥 주사함

- Oseltamivir는 1세 이상, Zanamivir는 7세 이상에서 증상 시작 48시간 이내의 인플루엔자 치료에 사용이 승인되었으며, Peramivir를 제외한 항바이러스제의 사용기간은 평균 5일을 기준으로 함

● 항바이러스제의 예방적 투여는 Oseltamivir는 1세 이상, Zanamivir는 5세 이상에서 사용이 승인되어 있으나, 인플루엔자 예방에 항바이러스제는 백신을 대체할 수 없으며 보조적으로 사용되어야 함



사. 환자 및 접촉자 관리

● 환자 관리

- 격리는 대유행 초기와 같이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전파 차단에 효과적인 방법은 아님
- 가족 내 노약자 등 고위험군과 접촉을 피하도록 함

● 접촉자 관리

- 고위험군 등에 필요한 경우 의사 상담 후 항바이러스제 투여 가능

아. 예방접종

● 우선 접종 대상

-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80호)
 - ① 만성폐질환자, 만성심장질환자
 - ② 만성질환으로 사회복지시설 등 집단시설에서 치료, 요양, 수용 중인 사람
 - ③ 만성간질환자, 만성신질환자, 신경-근육 질환, 혈액-종양 질환, 당뇨병자, 면역저하자(면역억제제 복용자), 아스피린 복용 중인 6개월~18세 소아('10년 확대)
 - ④ 65세 이상의 노인
 - ⑤ 의료인
 - ⑥ 만성질환자, 임신부, 65세 이상 노인과 함께 거주하는 자('10년 확대)
 - ⑦ 6개월 미만의 영아를 돌보는 자('10년 추가)
 - ⑧ 임신부('03년 추가)
 - ⑨ 50~64세 인구('03년 추가)
 - ⑩ 생후 6개월~59개월 인구('04년 추가, '10년 확대)
- 조류인플루엔자 대응 정책
 - ⑪ 조류인플루엔자 대응기관 종사자('04년 추가)
 - ⑫ 닭·오리·돼지농장 및 관련업계 종사자 ('04년 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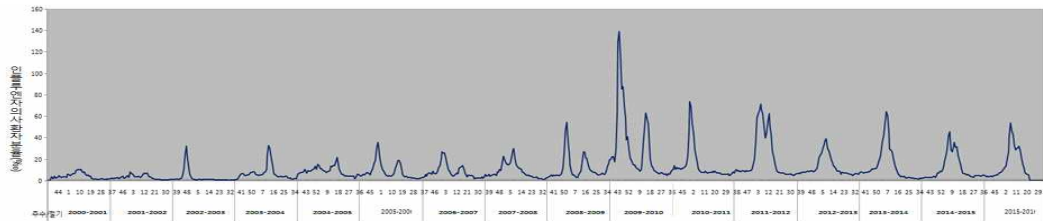
2

인플루엔자 발생 현황

가. 절기별 인플루엔자 발생 현황

- '00~'01절기 : '01년 2월 중순부터 3월 하순 사이에 6주간 유행
- '01~'02절기 : 유행 주의보 발령 없었음
- '02~'03절기 : '02년 11월 중순부터 12월 하순 사이에 5주간 유행
- '03~'04절기 : '04년 3월 초순부터 4월 중순 사이에 5주간 유행
- '04~'05절기 : 유행 주의보 발령 없었음
- '05~'06절기 : '05년 12월에 3주간 유행
- '06~'07절기 : '07년 1월에 3주간 유행
- '07~'08절기 : '07년 12월 초순부터 '08년 4월 중순까지 19주간 유행
- '08~'09절기 : '08년 11월 하순부터 '09년 1월 하순까지 10주간, '09년 2월 하순부터 5월 하순까지 14주간 유행
- '09~'10절기 : '09년 5월 국내 신종인플루엔자 A(H1N1) 환자 발생 이후 '09년 36주부터 '10년 23주까지 40주간 유행
- '10~'11절기 : '10년 37주부터 '11년 8주까지 25주간 유행
- '11~'12절기 : '11년 53주부터 '12년 18주까지 19주간 유행
- '12~'13절기 : '13년 2주부터 '13년 16주까지 15주간 유행
- '13~'14절기 : '13년 52주부터 '14년 14주까지 15주간 유행
- '14~'15절기 : '15년 3주부터 '15년 17주까지 15주간 유행
- '15~'16절기 : '16년 2주부터 '16년 18주까지 17주간 유행

<'00-'01절기~'15-'16절기 인플루엔자 주간 표본감시결과>



- ※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 : 기간 내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수/기간 내 총진료환자 수×1,000
- ※ '15-'16절기는 2015년 36주부터 2016년 35주까지임(22주까지 자료임)
- ※ 2013년 39주 이전자료는 개편 후 기준으로 환산하여 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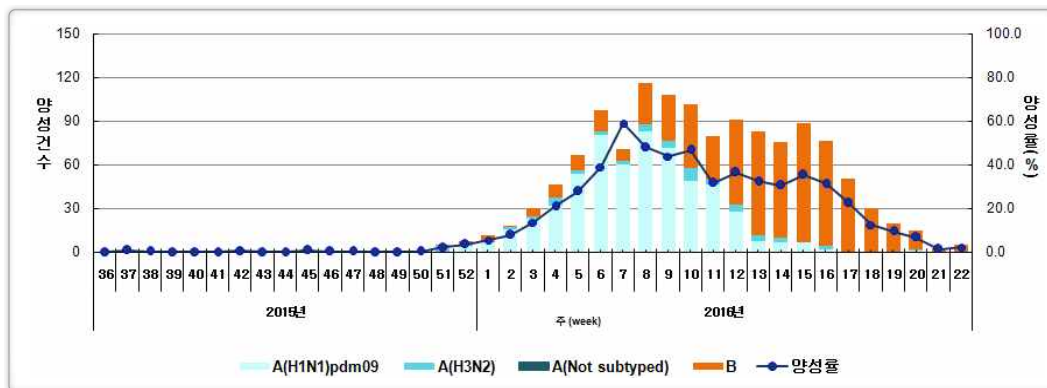
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현황

<절기별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현황>

(단위 : 주)

연도 \ 바이러스형	계	A				B	첫 검출일
		(H1N1)	(H1N1) pdm09	(H3N2)	(Not Subtyped)		
'00~'01 절기	145	11	-	134	-	-	'00년 51주
'01~'02 절기	215	105	-	8	-	102	'01년 47주
'02~'03 절기	622	-	-	622	-	-	'02년 44주
'03~'04 절기	1,312	1	-	746	-	565	'03년 48주
'04~'05 절기	999	31	-	777	-	191	'04년 44주
'05~'06 절기	1,437	734	-	304	-	399	'05년 45주
'06~'07 절기	3,242	497	-	2,488	-	257	'06년 47주
'07~'08 절기	4,641	730	-	935	-	2,976	'07년 43주
'08~'09 절기	5,048	3,214	33	1,739	-	62	'08년 37주
'09~'10 절기	6,466	-	4,748	8	-	1,710	'09년 36주
'10~'11 절기	1,976	-	1,651	308	-	17	'10년 36주
'11~'12 절기	3,785	-	1	1,950	-	1,834	'11년 36주
'12~'13 절기	1,704	-	332	1,276	-	96	'12년 36주
'13~'14 절기	2,094	-	346	640	-	1,108	'13년 42주
'14~'15 절기	1,593	-	175	827	-	591	'14년 44주
'15~'16 절기	1,311	-	582	61	1	667	'15년 37주

<'15~'16절기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현황 및 양성률>



※ 양성률(%) : 주별 양성건수/주별 검사의뢰건수×100

※ '15~'16절기는 2015년 36주부터 2016년 35주 까지임 ('15~'16절기 22주까지 자료임)

3

인플루엔자 관리 정책

가. 추진 목적

- 인플루엔자로 인한 질병 부담 감소로 국민 보건 향상

나. 추진 목표

- 인플루엔자 감시를 통한 유행조기 파악
 - 표본감시 기관 대상 임상/실험실 감시 실시
 - 실험실 감시를 통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변이 및 항바이러스제 내성 확인
- 고위험군 우선 예방접종으로 질병 부담 최소화
 - 치명률 높은 집단에 대한 지원 강화
 - 고위험군에 대한 예방접종 홍보 강화
- 대유행 대비·대응 체계 구축
 - 대유행 조기 예측을 위한 감시체계 구축
 - 필요 물자 비축 및 대유행 시 사용 계획 마련
 - 대유행 대비 예방접종 실시 계획 마련

다. 세부 추진 내용

-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임상표본감시 효율화
 - 임상표본감시 의료기관의 보고 정확성 및 보고율 제고
 - 2016-2017절기 유행판단 기준(주의보 기준) 설정
 - 임상감시와 실험실감시 통합 운영
 - 연령군별(0~6세, 7~18세, 19~49세, 50~64세, 65세 이상) ILI 산출
-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실험실표본감시 효율화
 - 바이러스 유전자 검사 및 분리 능력 향상



- 항바이러스제 내성 및 변이주 출현 감시
- 바이러스 조기 검출 및 신속보고 체계 유지
-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안정적 수행
 - 백신 수급 안정화
 - 고위험군 접종률 향상
 - 치명률이 높은 65세 이상 노인 대상 ‘노인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시행(보건소, 보건지소 및 사업 참여 의료기관 무료 접종)
 -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한 교육 및 홍보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감시 활동 강화
- 대유행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대비·대응 계획 마련
 - 조기 백신확보 계획 수립
 - 병원체 특성별 예방접종 시나리오 마련
 - 대유행시 신속한 의사결정 및 risk communication
 - 민간의료기관 협력을 통한 신속한 예방접종 완료
- 분과위원회 운영과 대국민 및 의료기관 홍보 강화

● 기관별 역할

구성체계	예방접종	임상 표본감시	실험실 표본감시
질병 관리본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백신 수급 지원 ○ 예방접종 등록관리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역학조사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보상 심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플루엔자 유행기준 설정 및 유행시 주의보 발령 ○ 표본감시기관 지정, 운영 ○ 인플루엔자 표본감시 웹 신고시스템 운영 ○ 자료 분석 및 환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리주 확보 및 항원형 분석 ○ 내성 변이 분석 ○ 분리주 자료 취합·분석·환류 ○ 실험실 웹 사이트 운영 ○ 보건환경연구원 및 국립검역소 정도관리 수행 ○ 전 세계 감시사업 참여
시·도 보건위생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백신수급 계획 수립 ○ 시·군·구 예방접종 실적관리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역학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시·도 인플루엔자 유행 모니터링 ○ 질병관리본부, 시·군·구 보건소와의 정보 공유 ○ 분석자료 공유 및 환류 	-
시·도 보건환경 연구원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기관 관리 ○ 바이러스 유전자 검사 및 분리 ○ 검체 송부 ○ 검사실적 웹사이트에 보고
시·군·구 보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백신수요 조사 및 보고 ○ 예방접종 계획 수립 및 시행 ○ 예방접종 등록 및 실적보고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보고 및 피해보상 신청접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염예방활동 ○ 감시자료 의료기관 등 환류 	-
표본감시 의료기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신고 ○ 정보공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플루엔자의사환자 검체 채취 ○ 임상정보기록 동의서작성 ○ 검체 수송기관을 통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체 의뢰



4 '16-'17절기 인플루엔자 관리 방향

가. 예방접종 관리

● 백신 수급

- 국내 공급 예상량 : 약 2,129만 도스
 - * 식약처 국가검정계획량으로 일부 수량 변동
- 중앙 조달 요청량 : 총 671만 도스
 - * 9월 중 보건소 및 의료기관 공급 완료 예정
- 접종 권장 시기 : 10~12월
- 권장 시기 이후에도 우선접종 권장대상자가 미접종 시 접종 권장

● 접종 권장 대상

- 지난 절기 접종 권장 대상자와 동일(우선접종 권장대상 참조. p. 27)

● 사업 대상

- 인플루엔자 우선접종 권장대상자 중 아래의 우선순위를 참고하여 선정
 - 1순위 : 65세 이상 인구, 사회취약계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중 우선접종 권장대상자
 - 2순위 : 사회복지시설 수용자(약 8만 명, 사회복지수용시설 수용자 : 아동복지 수용시설, 노인복지수용시설, 장애인복지수용시설, 여성복지수용시설, 정신 질환자 요양수용시설, 부랑인수용시설, 결핵 및 한센장애 수용시설 등)

● 예방접종 기준 준수

- 백신 보관 시 cold chain 유지 및 정기적인 점검 실시
- 예진표 작성<별첨서식 3>, 의사 예진 등 안전수칙 준수
- 예진표, 접종 기록 등 관련 기록 보관/등록
- 출장 예방접종 제한

나. 임상표본감시 운영

- 연중 인플루엔자 표본감시체계를 통해 유행기뿐만 아니라 비유행기에도 인플루엔자 대유행에 대비
- 매년 12월~다음해 4월 인플루엔자 일일보고체계 운영으로 인플루엔자 유행 조기인지
- 인터넷 신고망(<http://is.cdc.go.kr>)을 통한 직접신고체계 이용 확대
- 인플루엔자 발생정보의 신속한 환류로 의료기관 참여율 향상
- 주간감시 결과 인플루엔자 발생분율이 전국 유행기준 이상일 경우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전국 유행주의보를 발령

다. 실험실표본감시 운영

- 인플루엔자 실험실 감시(Korea Influenza & Respiratory Viruses Surveillance System, KINRESS)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질적 향상 도모
- 인터넷 기반 보고를 통한 전국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의 신속한 인플루엔자 실험실 감시 보고 및 결과 환류
- 검체수송 전문기관을 통한 호흡기 검체 송부
 - 실험실표본감시 참여 민간의료기관에서 검체 송부 시 검체수송 전문기관을 통해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송부
- 유전자 검사
 - 대상 바이러스 : 인플루엔자 A(H3N2), A(H1N1)pdm09, A(H5N1), B
 - ※ 국내 AI 의심환자 발생시, A(H7N9) 및 A(H5N8)에 대한 검사 실시
 - ※ 별도제공 키트를 사용하여 B (Victoria, Yamagata) 계열 구분
 - ※ 대상 바이러스는 필요시 변경 가능
- 세포배양에 의한 바이러스 분리 체계 유지
 - 세포배양에 의한 바이러스 분리
 - 바이러스 분리 대상 : ‘인플루엔자 양성검체 전수 배양’시 유전자검사 결과 양성인 검체를 대상으로 무작위추출법에 의해 선별한 약10%에 대해 질병관리본부에서 분리배양 실시



- 검체 송부 대상 및 시기 조정
 -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바이러스 유전자 검사 후, 세포배양을 위한 검체는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인플루엔자바이러스과로 월 1회 검체수송기관을 통해 송부(인플루엔자 유행시기에는 월 2회 송부, 별도 통지)
 - * 원 검체는 검체수송기관을 통해 질병관리본부로 월 1회 송부
- 변이주 검출을 위한 유전자 분석
 - 지역 내 항원 및 치료제 내성 변이주 검출을 위한 유전자 분석은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인플루엔자바이러스과에서 실시
- 인플루엔자 실험실 표본감시사업 보고서 제출
 -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16~'17절기 종료('16. 9. 1~'17. 8. 31) 후 30일 이내 ('16. 9. 30)에 질병관리본부로 사업결과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지역 내 유행양상 파악 및 관리 자료로 활용
 - ※ 주요내용 : 지역별, 주별, 연령별 바이러스 유행양상 및 백신접종력에 따른 유행양상 등

라. 조류인플루엔자 유행 대비 인플루엔자 관리 강화 방안<부록 2>

- 추진배경
 - 조류인플루엔자 유행 시 인체감염과 일반 인플루엔자의 중복감염으로 유전자 재조합에 의한 신종 인플루엔자가 출현할 가능성에 대비해서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발생 가능성이 높은 조류인플루엔자 대응요원과 닭·오리·돼지 농장 및 관련 업계 종사자에게 접종 권장
- 추진 전략
 - 예방접종 관리 강화
 - 조류인플루엔자 대응기관 종사자와 닭·오리·돼지 농장 및 관련 업계 종사자 등에게 접종 권장
 - 가금류에서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 해당 지역 감시 강화

● 세부 추진내용

- 조류인플루엔자 대응 기관 종사자(34,500명)대상 예방접종 시행
 - 대응요원 중 직접적 폭로가 예상되는 현장 중심의 인원을 파악하여 대상자 선정 기준 조정
 - 보건소는 인플루엔자 접종기간에 조류인플루엔자 대응요원 접종 시행
 - 접종장소 및 관련 기관
 - ① 관할 보건소 : 시·도 보건위생과 및 축산과, 보건소, 농림수산 검역검사본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보건환경연구원, 축산위생연구소, 국립 환경과학원, 질병관리본부, 식품의약품안전처
 - ② 관할 검역소 : 검역소 및 검역관련 기관
 - ※ 예진 의사가 없는 검역소는 근거리에 위치한 관할 보건소에서 접종
- 조류인플루엔자 유행 시 일반 인플루엔자와의 중복감염 방지와 유전자 변형 방지를 위해 닭·오리·돼지 농장 및 관련 업계 종사자에게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권장
 - 필요 시 보건소를 통해 예방접종 실시



II. 인플루엔자 임상표본감시



1 임상표본감시 목적

- 주간감시
 - 인플루엔자 의사환자(Influenza-like Illness, ILI) 발생 경향을 지속적으로 감시하여 유행을 조기에 파악
 - 국가 인플루엔자 관리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 일일감시
 - 인플루엔자 유행 상황 모니터링 강화
 - 2004년 9월 6일(37주)부터 일일감시체계 도입
 - 2013년부터 총 5개월(12월~익년 4월) 운영

2 임상표본감시기관 지정

- 의사회의 추천을 받아 참여의사 있는 표본감시기관 선정
 - 성인(내과 70개, 가정의학과 30개) 100개소, 소아(소아청소년과) 100개소

3 신고를 위한 환례정의 및 유행기준

- 인플루엔자 의사환자(Influenza-like Illness, ILI) 환례정의
 - 38℃ 이상의 갑작스러운 발열과 더불어 기침 또는 인후통을 보이는 환자
- 인플루엔자 유행기준
 - '16~'17절기 인플루엔자 유행기준 『000/1,000명』*
 - * 유행기준 일반공식('07.7. 인플루엔자 분과위원회) = 과거 3년간 비유행기간 평균 + 2 × 표준편차]
 - * 유행주의보는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이 유행기준을 초과한 경우 자문회의를 거쳐 발령하고,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이 3주 연속 유행기준 이하일 경우 자문회의를 거쳐 유행을 해제함

4 기관별 역할 및 보고 체계

가. 표본감시기관

●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신고(Influenza-like Illness, ILI) 신고

<주간감시(4월~11월)>

- 인플루엔자 연령군별 의사환자수 및 각 연령별 총 진료환자수를 수집 신고
- 매주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진료한 환자 중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현황을 신고 서식<별첨서식 1>에 기입하여, 다음 주 화요일까지(주 1회) 신고

<일일감시(12월~익년4월)>

- 매일 진료 마감 후, 연령군별 인플루엔자 의사환자수 및 각 연령별 총 진료환자수를 수집 신고

● 신고방법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is.cdc.go.kr>)을 통해 직접 신고하거나 <별첨서식 1>을 기입하여 질병관리본부로 팩스 전송(Fax. 043-719-7188, 7189)
- 인터넷을 이용할 경우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is.cdc.go.kr>)에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표본감시감염병웹신고 - 인플루엔자 (성인) 신고관리 또는 인플루엔자 (소아)/수족구신고관리」 항목을 선택하여, 주간 또는 일일 진료한 환자 중 연령군별 인플루엔자 의사환자수와 각 연령별 총 진료환자 수를 입력

나. 보건소

● 인플루엔자 현황자료 이용

- 주 1회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에 대한 분석자료를 관내 의료기관, 관련기관에 환류



다. 시·도

● 표본감시 자료 환류

- 인터넷(<http://is.cdc.go.kr>)을 통해 확인
- 자료 환류
 - 주기 : 주 1회
 - 대상 : 시·군·구 보건소 및 의사회, 교육청 등 관련기관

라. 질병관리본부

● 표본감시 자료 분석, 분석자료 배포

● 표본감시기관 신고 지도·감독

- 매주 화요일 이후 해당 주 미신고일 경우 의료기관에 신고 독려
- 표본감시기관에서 총 진료환자수와 인플루엔자 의사환자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동일하게 입력하는 경우 수정신고 지시

● 표본감시기관 지정, 변경 및 취소 등 정비

● 시·도 및 시·군·구 표본감시 웹보고 전담요원 교육

<기관별 역할(임상표본감시)>

관련 기관	역 할
표본감시의료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신고
시·군·구 보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플루엔자 관련 분석자료 환류
시·도 보건(위생)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플루엔자 유행상황 확인 및 유행상황에 대비 ■ 환류자료 배포
질병관리본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료의 취합 및 분석, 환류자료 작성/배포 ■ 감염병 통계 작성 및 제공 ■ 전국 유행기준 설정 ■ 유행주의보 발령 및 해제 ■ 표본감시의료기관 지정, 변경 및 취소 등 정비

Ⅲ. 인플루엔자 실험실표본감시



1 실험실표본감시 목적

- 유행 중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분리하여 유행 양상을 파악하고, 새로운 형의 바이러스 출현 감시
- 항바이러스제 내성 바이러스 출현 감시를 통한 치료 지침 자료 제공
- WHO 등 국내외 협력을 통한 백신주 선정 기초 자료 제공

2 실험실표본감시 기관

- 참여의사가 있는 민간 36개 의료기관
- 17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 검체수송기관
-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인플루엔자바이러스과

3 기관별 역할 및 의뢰 체계

가. 실험실표본감시 참여 민간의료기관

- 당일 내원한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및 호흡기 환자 중 발병 후 3일 이내의 전형적인 증상을 나타내는 환자의 검체 채취(월, 화요일에 채취, 주 8건 내외)
-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바이러스 확인 검사 의뢰(인플루엔자 및 급성호흡기감염증 실험실검사 의뢰서 및 동의서 <별첨서식 2> 동봉)
- 검사 의뢰 기간 : 연중



● 검체 의뢰 : 검체수송전문기관을 통해 매주 1회 의뢰

검체보관 및 수송시 유의사항

- 검체 수송 시에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제정한 “감염성물질 안전 수송 지침” 내용을 준수하여 진행한다.
- 아이스박스에 얼음 또는 냉매를 넣어 4℃ 정도로 내부가 유지되도록 한다.
- 반드시 실험실 감사의뢰서 및 동의서를 같이 송부하여야 한다.
- 검체 채취 후 보건환경연구원으로 바로 수송할 수 없을 때는 4℃ 냉장고에 보관하였다가 가능한 48~72시간 이내에 송부하도록 한다.
- ※ 주의 : 72시간 이내 송부가 어려운 경우 -70℃에서 보관하도록 한다.

나.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 유전자 검출 및 바이러스 분리

- 실험실 감시 의료기관에서 의뢰받은 검체를 계절인플루엔자[A(H1N1)pdm09, A/H3, B] 및 조류인플루엔자 A/H5N1을 감별 진단할 수 있는 유전자 검출법 (Multiplex Real-time Reverse Transcription-Polymerase Chain Reaction, rRT-PCR)에 의해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is.cdc.go.kr>)에 입력
- 실험 후 원 검체(original specimen) 잔여액은 -70℃에 보관
- 유전자 검사 후 세포배양을 위한 검체는 검체수송기관을 통해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인플루엔자바이러스과로 송부
 - ※ 아형별 해당절기 지역 최초로 분리된 바이러스는 즉시 송부하고, 이후 월 1회 송부 (인플루엔자 유행 시기에는 월 2회 송부, 별도 통지)
 - ※ 미확인 검체 (rRT-PCR 결과 A형 양성이나 아형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는 즉시 보고 및 원 검체를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인플루엔자바이러스과로 즉시 송부
 - ※ 원 검체는 검체수송기관을 통해 질병관리본부로 월 1회 송부
- 정도관리 참여 (해당기관)

● 검사 결과 : 인터넷(<http://is.cdc.go.kr>)을 통해 보고

● 검사결과 확인 및 환류 : 참여 민간의료기관에 검사결과 환류

● 인플루엔자 표본감시사업 보고서 제출

- 절기 종료('15.9.1~'16.8.31) 후 30일 이내('16.9.30)에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인플루엔자바이러스과로 사업 결과보고서 제출

다. 검체 수송 기관

- 검체 채취 관련 물품 [바이러스수송배지(Virus Transport Medium, VTM)]의료기관에 배부
- 실험실검사 의뢰서 및 동의서를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공받아 참여 의료기관에 배부
- 매주 화요일 검체를 실험실표본감시 참여 의료기관으로부터 회수하여 냉장(4~8°C) 상태를 유지한 후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운송
- 의료기관으로부터 수령한 ‘실험실검사 의뢰서 및 동의서’의 기본사항(환자 인적사항, 임상증상, RAT 결과 등)을 실험실 웹보고 시스템(<http://is.cdc.go.kr>)에 입력 <별첨서식 2>
- 의료기관에 실험결과지 송부
- 월 1회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검체 및 바이러스 배양액을 회수하여 질병관리 본부로 운송(인플루엔자 유행주의 시기에는 월 2회, 별도통지)

라.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인플루엔자바이러스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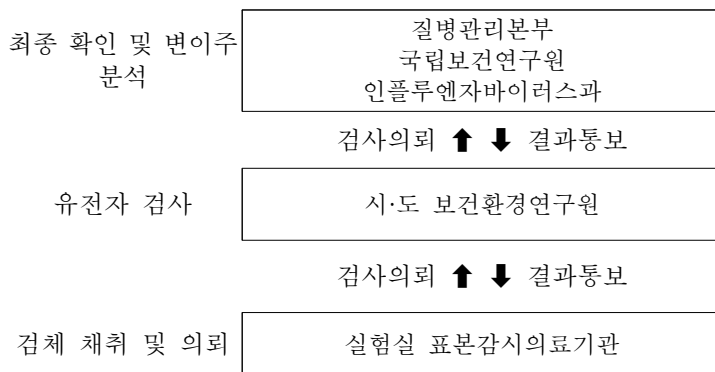
- 미확인 송부 검체 최종 동정·확인
- 유전자 검출 및 세포배양에 의해 분리된 바이러스주 동정·확인 및 바이러스 확보·증식
- 변이주 검출을 위한 유전자 분석
- 혈구응집억제시험법에 의해 분리주의 항원형 분석
 - 혈구응집억제시험(HI)을 이용한 아형 및 항원형 분석
- 낮은 HI 역가를 갖는 분리주는 염기서열 분석으로 아형 및 유전형 분석
- 항바이러스제 내성주 변이 검사
- 분리주 관련 자료 취합, 분석 및 환류
- 전 세계적인 인플루엔자 감시 참여(WHO 인플루엔자협력센터에 분리주 송부 및 Flu-Net 자료 입력)
- 기술 지원
-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및 국립검역소 대상 정도관리 실시
- 실험실 감시 워크숍 개최



<인플루엔자 및 호흡기바이러스 실험실 감시 관련 기관별 역할>

관련 기관	역 할
민간의료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검체 채취 ○ 임상정보기록동의서 작성 ○ RAT 검사 (필요시) ○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 검체 수송기관을 통한 검체 의뢰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기관 관리 ○ 유전자 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체의뢰기관으로부터 의뢰받은 검체에 대해 Realtime RT-PCR 실시 ○ 미확인검체 및 세포배양을 위한 검체를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인플루엔자바이러스과로 즉시 송부 ○ 검사 결과 환류 ○ 사업결과보고서 제출
검체 수송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 의료기관에 검체채취 관련 물품 배부 ○ 매주 1회 실험실 표본감시 참여의료기관으로부터 검체를 회수하여 냉장 (4~8℃) 상태를 유지한 후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운송 ○ 실험실검사 의뢰서 및 동의서 기본사항 인터넷 보고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확인 검체 확인 ○ 바이러스 동정 및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혈구응집억제시험, 유전자 분석법에 의해 분리주의 아형 및 항원형 분석 ○ 변이주 검출을 위한 유전자 분석 ○ 항바이러스제 내성 분석 ○ 전 세계적인 인플루엔자 감시 참여(WHO 인플루엔자 협력 센터에 분리주 송부 및 Flu-Net 감시 참여) ○ 기술지원 ○ 보건환경연구원 및 국립검역소 대상 정도관리 실시 ○ 실험실 감시 워크샵 개최

<인플루엔자 및 호흡기바이러스 실험실감시 의뢰 체계>



4

검체 채취 및 의뢰 방법

가. 검체 채취 대상

- 당일 내원한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및 호흡기바이러스 유증상자 중 발병 후 3일 이내의 전형적인 증상을 나타내는 환자 중 주 8명 내외

나. 검체 채취 방법

- 검체의 종류 : 인후 및 비인두 도찰물
 - 검체 용기에 환자의 성별, 연령, 채취일 등을 정확히 기재

다. 검체 의뢰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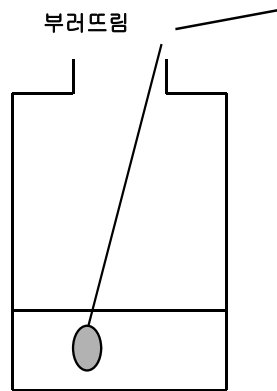
- 검사 의뢰 기간 : 연중
- 검체의 보관 및 수송 방법
 - 채취한 검체는 4℃ 냉장보관하며, ‘인플루엔자 및 급성호흡기감염증 실험실검사 의뢰서 및 동의서’ <별첨서식 2>를 작성한 후 검체수송기관을 통해 해당 지역 시·도 보건 환경연구원으로 검사 의뢰 <참고자료 3>



검체 채취 시 유의사항

● 인후 및 비인두 도찰물 채취방법

- 바이러스수송배지 (Virus Transport Medium, VTM) 키트 안에 동봉된 면봉을 이용, 환자 인후 또는 비인두 부위를 도찰한다.
- 수송배지가 담긴 병에 도달한 봉을 담그고 병마개 부위에서 봉을 부러뜨린 후 뚜껑을 꼭 잠그도록 한다.
- 부러뜨릴 때 안쪽에 손이 닿아 오염되지 않게 주의한다.
- 검체가 담긴 병은 즉시 냉장고(4℃)에 보관한다.



- 검체채취 후 반드시 채취용기에 환자의 인적사항(성명, 나이) 및 채취일을 기입한다.
- '검사의뢰서 및 동의서'를 작성하여 검체와 함께 의뢰한다(4℃ 유지).

가. 유전자 검출

- 검체로부터 핵산 (RNA)을 추출한 후 Multiplex Realtime RT-PCR 방법으로 형(type) 및 아형(subtype)을 분석
- 대상 바이러스
 - 인플루엔자 A 및 B형
 - 인플루엔자 A(H1N1)pdm09
 - 인플루엔자 A(H3N2)
 - 조류인플루엔자 A(H5N1)
 - 내위표준물질 (Human GAPDH)
 - ※ 별도제공 키트를 사용하여 B(Victoria, Yamagata) 계열 구분
- 대상 유전자
 - 인플루엔자바이러스 특이 유전자[(matrix (M), hemagglutinin(HA), nucleoprotein (NP)]
- 판정
 - 인플루엔자 A(H1N1)pdm09 및 A(H3N2) 양성
 - A형 공통 유전자인 matrix 및 각 아형에 특이적인 유전자 검출 시
 - 조류인플루엔자 A(H5N1) 양성
 - A형 공통 유전자인 matrix 및 H5 특이 유전자 검출 시
 - 인플루엔자 A형
 - A형 공통 유전자인 matrix만 검출 시
 - 인플루엔자 B형
 - B형 nucleoprotein(NP) 유전자만 검출 시
 - * 양성대조군 및 내위표준물질이 음성으로 나왔을 경우, 음성대조군이 양성으로 나왔을 경우 재시험 실시
 - * 해석이 불가능한 결과가 나왔을 시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인플루엔자바이러스과에 문의



나. 세포배양법에 의한 바이러스 분리

- 대상 : 유전자 검사결과 양성 검체 (10%)에 대하여 바이러스 분리 실시
- 세포주에 접종하여 CO₂ 배양기에서 배양(5% CO₂, 35°C)하면서 세포병변효과 (cytopathic effect, CPE)를 관찰한 후 세포 배양 상층액에서 바이러스의 존재 유무를 파악

다. 항원형 분석

- 세포배양액으로부터 인플루엔자바이러스 유무를 확인하고 형(type)·아형 (subtype) 및 항원형 분석을 위해, HA(Hemagglutination assay) 및 HI(Hemagglutination inhibition assay)를 실시

라. 염기서열 분석

- 세포배양 결과 HI를 실시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바이러스가 확보되지 못할 경우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분리주의 HA 또는 NA 유전자에 대한 염기서열을 분석하여 백신주 및 외국 분리주와 유전형 비교 분석 및 항바이러스 내성주 탐색
 - 대상 : 유전자 검사 결과 양성검체의 약 10%
 - 바이러스 배양액으로부터 유전자(RNA) 추출하고 cDNA 합성 후 PCR 및 염기서열 반응과정을 거쳐 염기서열 분석(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인플루엔자바이러스과)

IV.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1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의 특성 및 일반사항

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의 특성

- 권장 백신주(유행 예측주)가 절기별로 달라 매년 새로운 백신 생산 필요
- 인플루엔자 유행 시기 이전 및 초반 약 3개월 동안 수요가 집중적으로 발생하여 수요와 공급 불균형 발생
- 노인, 만성질환자 등 고위험군이 우선접종 권장대상자로 건강한 집단에 비해 이상반응 관리 강화 필요

나. 권장 백신주

-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거의 매년 항원 소변이가 일어나기 때문에 세계적인 바이러스 유행정보를 종합하여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매년 2월 무렵 당해 절기 백신 권장주를 결정함
- 2016-17절기 WHO에서 권장한 백신주

절 기	권장 백신주
2016-17	A/California/7/2009(H1N1)pdm09-like virus ¹⁾ A/Hong Kong/4801/2014(H3N2)-like virus ²⁾ B/Brisbane/60/2008-like virus ³⁾

- 1) 인플루엔자 A(H1N1)pdm09 바이러스는 A/California/7/2009(H1N1)pdm09-like 바이러스와 항원성이 유사
 - 2) 최근 분리된 대부분의 A(H3N2)형 바이러스가 A/Hong Kong/4801/2014-like 바이러스와 항원성이 유사하여 '16-'17절기 권장주에 포함
 - 3) B형 바이러스는 B/Brisbane/60/2008(B/Victoria/2/87 lineage) 바이러스와 항원성이 유사하여 '16-'17절기 권장주에 포함
- ※ 4가 백신은 2개의 인플루엔자 B형 바이러스를 포함하고 있으며, 3가 백신 포함 권장주 외 B형 바이러스인 B/Yamagata/16/88 lineage 계의 B/Phuket/3073/2013-like 바이러스를 포함할 것을 권장.

<부록 3. 절기별 WHO의 권장 백신주 참고>



다. 인플루엔자 백신 종류 및 관련 약어

● 인플루엔자 백신 종류

- 불활성화(Inactivated) 백신과 약독화 생백신(Live-attenuated)이 있음
 - 불활성화 백신은 전바이러스(Whole virus), 분할(split) 및 아단위(subunit) 백신이 있는데 현재 사용되는 백신의 대부분은 분할백신임
- 일반적으로 A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중 두 가지 아형(H1, H3) 및 B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한 가지에 대한 항원이 포함되어 3가(Trivalent)로 만들어짐

* 최근 B형을 1개 더 추가한 4가(Quadrivalent) 백신 허가, 유통

● 인플루엔자 백신 약어 변경(ACIP 권고 : '13.4.18.)

- 기존에는 약독화 생백신(LAIV : Live-attenuated Influenza Vaccine)과 불활성화 백신(TIV : Trivalent Inactivated Influenza Vaccine)으로 구분
- 불활성화 백신 생산 방법이 다양해졌고, 항원 수도 두 종류(3가, 4가)가 있는 것을 고려하여 백신 제조방법과 포함 항원수 확인 가능하도록 약어 변경
- 인플루엔자 백신 약어

IIV3	Inactivated Influenza Vaccines, Trivalent
IIV4	Inactivated Influenza Vaccines, Quadrivalent
ccIIV3	cell culture-based Inactivated Influenza Vaccines, Trivalent
RIV3	Recombinant hemagglutinin Influenza Vaccine, Trivalent
LAIV4	Live-attenuated Influenza Vaccine, Quadrivalent

* 균주당 항원량이 15 μ g인 경우 standard dose, 15 μ g 이상인 경우 High dose로 표기

2

예방접종 효과

- 인플루엔자 백신의 효과는 피접종자의 연령, 기저질환 및 백신주와 유행주의 항원성 일치도 등에 따라서 달라짐
- 불활성화 백신
 - 건강한 성인이 불활성화 백신을 접종 받은 후 백신주와 유행주의 항원성이 맞을 때 예방 효과는 70~90%임
 - 노인에서 백신의 예방효과는 건강한 성인에 비해 낮지만, 인플루엔자로 인한 입원을 예방하는 데 50~60% 효과가 있고, 인플루엔자로 인한 사망을 예방하는 데 80% 정도 효과가 있음
 - 백신 접종 후 항체 지속효과는 1년 미만이며, 항원 소변이에 의해 매년 유행하는 바이러스주가 달라지기 때문에 예방접종 권장대상자는 매년 인플루엔자 백신을 접종 받아야 함
- 약독화 생백신
 - 생후 60~84개월 건강한 소아 대상 연구결과 백신 효능은 87%였으며, 열성 중이염 발생을 27% 감소시킴
 - 18~49세 건강한 성인 대상 연구 결과 열성질환 20%, 열성 상기도 감염 24%, 열성질환으로 인한 의료기관 방문일을 18~37% 감소시킴
 - 소아 대상 연구에서는 불활성화 백신에 비해 생백신이 더 나은 효능을 보여주었으나 성인 대상 연구에서는 불활성화 백신에 비해 생백신이 더 나은 결과는 나타내지 못 함



3

국내 인플루엔자 백신 수급 및 접종 현황

가. 절기별 인플루엔자 백신 수급 현황

● '16~'17절기 국내 백신 공급량

- 약 2,129만 도스의 백신이 공급될 것으로 전망

<절기별 인플루엔자 백신 국내 공급 현황>

(단위 : 만 도스)

생산규격 \ 절기	'08-'09	'09-'10	'10-'11	'11-'12	'12-'13	'13-'14	'14-'15	'15-'16	'16-'17
총 계	1,552	1,136	1,685	2,040	2,213	1,744	1,863	2,101	2,129
국내원액생산제조	-	344	833	1,032	1,267	886	991	1,483	1,579
수입원액제조	1,143	349	446	466	571	533	473	199	142
완제수입	409	443	406	542	375	325	329	419	408

* 자료원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백신검정과의 국가출하승인 현황

* '16~'17절기 현황은 제조사 계획량으로 일부 수량 변동가능

나. 절기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실적

● 연간 1,400만~1,600만 명 수준으로 추산1)

- 이 중 보건소에서는 390만~560만 명 접종

<절기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실적>

(단위 : 천명)

절기	'08-'09	'09-'10	'10-'11	'11-'12	'12-'13	'13-'14	'14-'15	'15-'16
계	6,386	5,245	7,308	8,401	9,567	9,398	10,245	11,248
보건소	5,488 (3,011)	3,958 (2,946)	4,552 (3,234)	5,162 (3,523)	5,304 (3,629)	4,934 (3,747)	5,168 (3,818)	2,399 (1,126)
병·의원	898	1,287	2,756	3,239	4,263	4,464	5,077	8,850

* 자료원 :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건수

* () : 보건소 무료 예방접종 실적

1) 절기 기준 국가검정신청량에서 제조사별 반품·폐기량을 제외하여 국내 사용량 추정

4 예방접종 실시 기준

가. 우선접종 권장대상

●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80호

- ① 만성폐질환자, 만성심장질환자
- ② 만성질환으로 사회복지시설 등 집단시설에서 치료, 요양, 수용 중인 사람
- ③ 만성간질환자, 만성신질환자, 신경-근육질환, 혈액-종양질환, 당뇨병자, 면역저하자(면역억제제 복용자), 아스피린 복용 중인 6개월~18세 소아
- ④ 65세 이상의 노인
- ⑤ 의료인
- ⑥ 만성질환자, 임신부, 65세 이상 노인과 함께 거주하는 자
- ⑦ 6개월 미만의 영아를 돌보는 자
- ⑧ 임신부
- ⑨ 50세~64세 인구
- ⑩ 생후 6개월~59개월 인구

● 사스 및 조류인플루엔자 대응 정책에 따라 대응기관 종사자 및 관련 업계 종사자도 인플루엔자 백신 우선접종 권장

나. 예방접종 권장 시기 및 방법

● 권장시기 : 10~12월

- 인플루엔자 유행시기(12월~익년 4월), 백신 공급시기, 예방접종 효과 지속기간(평균 6개월(3~12개월))을 고려하여 10~12월로 접종 권장

- 권장시기(10~12월) 이후에도 우선접종 권장대상자가 미접종 시 접종 권장

● 접종 횟수 및 용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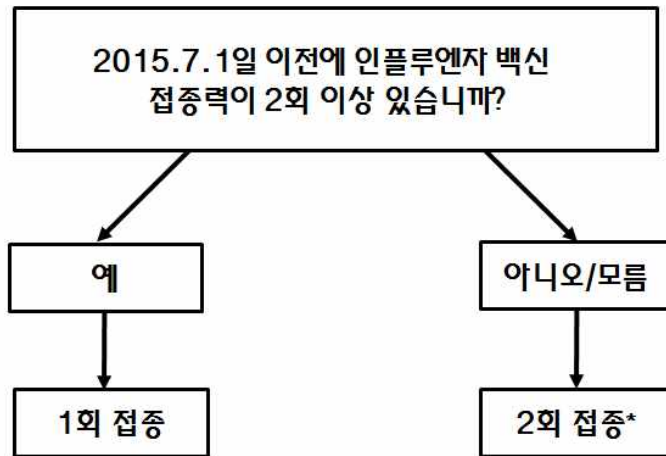
- 만 9세 이상 소아 및 성인 : 과거 접종력과 상관없이 1회 접종

백신 종류	접종용량	접종방법	비고
인플루엔자 불활성화 백신 (Inactivated Influenza Vaccine, IIV)	0.5ml	1회 근육주사	-
인플루엔자 약독화 생백신* (Live Attenuated Influenza Vaccine, LAIV)	0.2ml	1회 비강 내 분무	생후 24개월~ 만 49세 연령에서만 사용

* '16-'17절기에는 인플루엔자 약독화 생백신에 대한 국내 유통 계획 없음



- 생후 6개월 이상~만 8세 소아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처음 받는 경우 4주 간격으로 2회 접종
 - 2015.7.1일 이전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력이 2회 이상 있는 경우 1회 접종(접종력이 없거나 모를 경우 2회 접종)



* 4주 간격으로 2회 접종

• 접종용량

백신 종류	접종연령	접종용량
인플루엔자 불활성화 백신	생후 6개월~35개월	0.25 ml
	생후 36개월~만 8세	0.5 ml
인플루엔자 약독화 생백신	생후 24개월~만 8세	0.2 ml

다. 예방접종 금기 및 주의사항

● 각 인플루엔자 백신의 금기 및 주의사항

인플루엔자 불활성화 백신	인플루엔자 약독화 생백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플루엔자 백신접종 후 심한 과민반응을 보인 자 ○ 계란에 심한 과민반응을 보인 자 ○ 백신접종 후 6주 이내에 길랭-바레 증후군이나 다른 신경 이상이 생긴 자 ○ 발열이 있는 사람은 열이 내리기 전까지는 접종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열이 없는 상기도 감염은 접종 금기가 아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플루엔자 불활성화 백신 금기자 ○ 생후 24개월 미만 영아 또는 50세 이상 성인 ○ 천식이 있거나 지난 1년 이내에 한번 이상 천명이 있었던 5세 이하의 소아 ○ 만성질환자 ○ 호흡곤란이나 연하곤란을 일으킬 수 있는 근육 또는 신경질환자 ○ 면역저하자 ○ 임신부 ○ 장기적으로 아스피린 투여중인 소아 및 청소년

● 계란 알레르기

- 백신제조 시 남아 있을 수 있는 계란 단백질에 의해 알레르기 반응 가능성이 있어 닭이나 계란에 심한 아나필락시스성 반응을 보이는 사람은 접종 금지
- 계란에 알레르기가 있는 환자의 백신접종은 의사와 상담 후 결정

● 길랭-바레 증후군(Guillain-Barré syndrome)

- 1976년에 사용되었던 swine influenza vaccine과 달리 1977년 이후의 인플루엔자 백신에서는 접종 후 길랭-바레 증후군 발생 빈도가 높지 않음
- 그러나 접종 후 6주내에 길랭-바레 증후군을 보였던 환자는 이후 접종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 인플루엔자 항바이러스제 투여 시 주의사항

- 인플루엔자 치료나 화학적 예방(chemoprophylaxis)을 위해 항바이러스제를 투여 받는 경우에는 인플루엔자 불활성화 백신(IIV)으로 접종
- 인플루엔자 약독화 생백신(LAIV)은 항바이러스제 치료 중지 후 48시간까지 접종해서는 안됨
- 항바이러스제를 인플루엔자 약독화 생백신(LAIV) 접종 후 2주 이내에 투여한 경우 마지막 항바이러스제 투여 후 48시간이상 경과 후에 백신 재접종



5

예방접종 안전관리

가. 예방접종 주의사항

- 예방접종에 사용되는 백신의 보관상태 및 유효기간을 매일 점검
- 예진 시 예방접종 대상자의 건강상태와 과거 병력 확인
- 올바른 백신의 정확한 용량을 정확한 부위에 접종
- 예방접종 후 발생할 수 있는 이상반응을 피접종자에게 숙지시키고 접종 후 보건소에서 약 30분 정도 머물 수 있도록 함
- 백신 제품별로 허가된 용법·용량을 준수하여 접종

나. 출장예방접종 제한

- 의료법 제33조 제1항의 근거에 따라 예방접종(의료행위)은 의료기관 내에서 시행하여야 함
 - 단,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안전한 예방접종 환경을 확보한 후 출장 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으나, 의료법을 준수하기 위한 노력이 우선되어야 함

■ 보건소에서 거동이 불편한 사회복지시설 생활자를 대상으로 무료 단체 예방접종을 실시할 경우
 ※ 안전한 접종 환경 : 백신 콜드체인 유지, 접종 후 대기 장소 확보, 응급처치세트 및 앰블런스 등의 안전장비 구비

다.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종류
 - 불활성화 백신(IIV)
 - 국소반응 : 접종부위 통증, 발적(접종자의 15~20%에서 발생)
 - 전신반응 : 발열, 무력감, 근육통, 두통 등(접종자의 1% 미만에서 발생)
 - 계란 단백질에 의한 알레르기 반응

- 약독화 생백신(LAIV)

- 소아 : 콧물, 코막힘, 발열, 두통, 근육통, 천명, 복통, 구토, 설사
- 성인 : 콧물, 코막힘, 인후통, 기침, 오한, 피로감, 두통
-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은 매우 드뭄

라.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감시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is.cdc.go.kr>) → 예방접종관리 → 예방접종안전관리
→ 이상반응 → 병원/보건소 신고관리
<부록 10. 이상반응관리, 부록 11. 이상반응관리>

마.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보상 신청 대상

- 예방접종의 실시 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80호)에 명시된 백신 및 접종 대상자

바.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역학조사 및 피해조사

1) 역학조사

- 조사대상 : 예방접종 후 중증이상반응 발생사례
- 사례 발생 시 기관별 조치사항
 - 보건소 이상반응 담당자는 중증이상반응 발생사례에 대한 인터넷 신고
 -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is.cdc.go.kr>) → 예방접종관리 → 예방접종안전관리 → 이상반응 → 중증이상반응 신고관리
 - 시·도 역학조사반은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역학조사 실시 및 분석<별첨서식 4>
 - 해당 백신과 피해발생 경과 등 피해사례에 대한 확인
 - 질병 과거력, 이상반응 가족력 등 인적 특성 조사
 - 이상반응 발생 후 임상검사 자료 및 임상 경과자료 수집
 - 백신 보관상태, 접종과정, 기록 관리 상태 등 조사
 - 동일 제조번호 백신 접종자 이상반응 유무 확인



- 사망 사례는 부검 결과 수집
- 주치의, 예방접종 관련자 등 면담
- 필요시 접종 백신에 대한 재검정 실시(식품의약품안전처)
- 과거 유사사례 여부에 대한 문헌 고찰
-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은 이상반응과 백신과의 관련성 규명
 - * 법적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2) 피해조사

- 조사대상 : 예방접종피해 보상 신청 건
- 시도 역학조사반은 보상신청 사례에 대한 기초피해조사 실시
-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은 피해조사 결과 검토 및 필요시 정밀피해조사 실시
 - * 법적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V. 노인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1 사업 개요

가. 추진 배경 및 목적

- 노인 대상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은 보건소에서만 무료로 실시되어 장시간 대기의 불편함,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었음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의 접근성, 편의성 및 안전성 향상을 위해 무료접종을 민간 의료기관까지 확대해 달라는 요구가 지속되어 2015년 10월부터 ‘노인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을 위탁의료기관까지 확대 실시함
- 노인 대상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고령자의 인플루엔자 접종률 향상과 질병부담을 감소시키는 것임
- 2016년 사업의 목적은 안정적인 백신 공급을 통한 사업 안정화 및 분산접종을 통한 안전한 예방접종 시행

나. 사업 목표 및 전략

- (목표) '16년 65세 이상 인구 인플루엔자 접종률 82% 달성
 - * '16년 1월 말 기준 접종률 81.0%를 근거로 산출(잠정적 통계로 변경 가능)
- (전략 1) 사업 대상자의 편의성, 안전성 증대
 - 보다 많은 민간의료기관의 참여 유도
 - 사업용 인플루엔자 백신의 안정적 공급
 - 연령구간 별 분산 접종을 통한 안전한 예방접종 실시
 - 전산시스템을 통한 노인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민간 의료기관(이하 위탁의료기관) 실시간 확인서비스 제공



- (전략 2) 사업 참여자/관리자를 위한 효율적 관리 시스템 운영<부록 10, 11>
 - 2009년부터 예방접종업무 위탁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어린이 국가예방 접종사업 운영방식 적용(위탁 계약, 교육, 비용 상환 등)
 - 보건소 및 위탁의료기관의 업무 효율화를 위한 시스템 구조 개선
 -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사업과 노인 예방접종 사업 시스템 분리

다. 법적 근거

- 국가예방접종사업 대상 감염병, 예방접종 실시기준 관련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정기예방접종)제1항제14호*, 제32조(예방접종의 실시주간 및 실시기준 등)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
 -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감염병
 - 「정기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지정 등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6-79호)
 -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6-80호)
- 국가예방접종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관련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4조(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가 부담할 경비)제2호, 제66조(시·도가 보조할 경비) 및 제68조(국가가 보조할 경비)
-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예방접종업무의 위탁)
 -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16-81호)
 - ※ 「의료법」 제2조(의료인)제2항제1호에 따른 의료인으로 하여금 예방접종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 예방접종 기록 보고 관련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의 작성 및 보고)
- 민감정보 처리 관련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의 처리)

라. 사업 내용

● 사업 대상

- '16년도 기준 만 65세 이상 노인(195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 사업 대상은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적용
 - * 외국인의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31조(외국인등록)에 따른 외국인 등록을 한 자(주한외국 공관과 국제기구의 직원 등 외국인등록 면제자 포함)는 사업 대상에 포함
 - *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국내거소신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자의 경우 사업대상에 포함

● 사업 시기

- 위탁의료기관 : '16. 10. 4. ~ 11. 15.
 - * 사업시기가 종료되었더라도 위탁의료기관의 인플루엔자 백신과 관할 지자체의 시행비 예산이 남은 경우 11월내에서 연장 가능
- 보건소 : '16. 10. 4. ~ 인플루엔자 백신 소진 시까지 지속
- 연령 구간별 사업 시기
 - 연령구간 : 75세 이상 / 65세 이상의 2개 구간으로 구분, 일주일 간격으로 사업 진행
 - 75세 이상 : 2016. 10. 4.(화) ~
 - 65세 이상 : 2016. 10. 10.(월) ~

● 접종기관 : 전국 보건소(지소) 및 위탁의료기관

-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보건소(지소) 및 위탁의료기관에서 무료 접종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탁한 기관을 공고
 - * 접종 가능한 위탁의료기관 정보는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 홈페이지, 전국 보건소 홈페이지 및 예방접종도우미(<https://nip.cdc.go.kr>)에서 확인 가능
- 거동불편 사업대상자(노인의료복지시설 생활자)는 보건소가 접종 관리



2

세부 사업내용

가. 목표 접종량

- '16년도 65세 이상 인구 인플루엔자 접종률 82% 달성
- 산출 근거<부록 1>
 - '16년 1월 말 기준 접종률 81.0%를 근거로 산출(잠정적 통계로 변경 가능)
 - 피접종자 주소지 제한이 폐지되고, 전국적으로 홍보가 활성화되어 추가적으로 접종률 향상이 있을 것으로 기대
- '15~'16절기 노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현황
 - '15. 10월~'16. 1월 중 65세 인구 약 545만 명(81.0%) 접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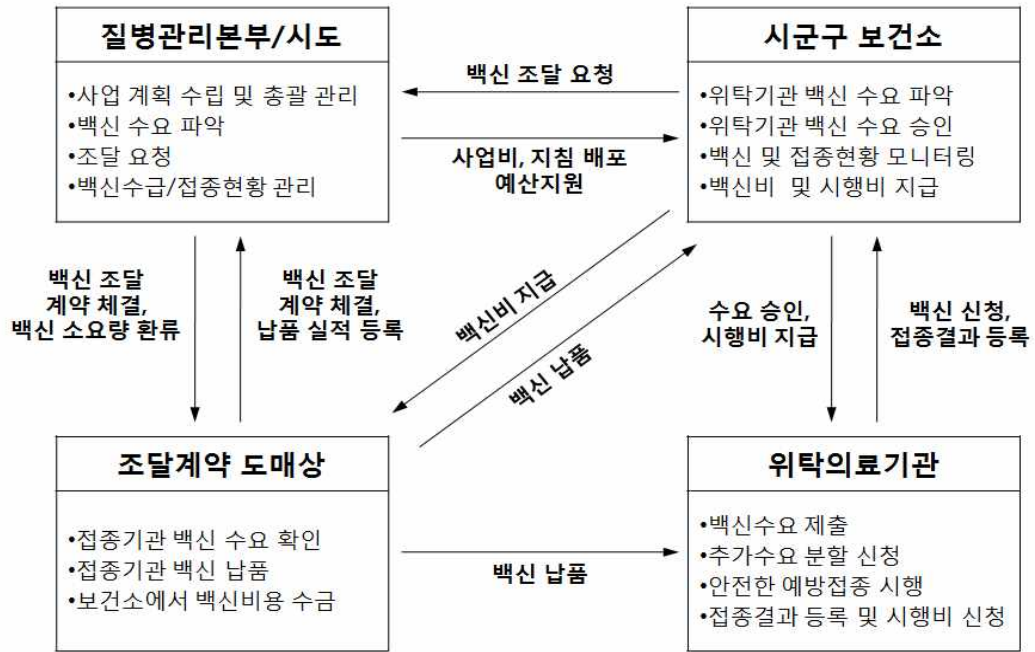
구 분	'15~'16절기			'14~'15절기		
	인구수(명)	예방접종 실적(건)		인구수(명)	예방접종 실적(건)	
		보건소	민간 의료기관		보건소	민간 의료기관
계	6,462,428	1,134,800 (17.6%)	4,320,364 (66.9%)	6,721,014	3,818,102 (56.8%)	900,550 (13.4%)
65~74세	3,864,959	638,726	2,592,425	3,964,211	2,280,778	554,981
75~84세	2,080,100	398,621	1,439,886	2,196,024	1,302,386	290,071
85세 이상	517,369	97,453	288,053	560,779	234,938	55,498

* 자료원 :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 전산등록자료

나. 사업 추진 체계

1) 추진 체계

- ▶ 질병관리본부/시·도는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용 전체 백신 일괄 조달
- ▶ 보건소는 지자체 사업 목표량 설정, 백신 분배 관리, 백신비(조달계약 도매상) 및 시행비(위탁의료기관) 지급
- ▶ 참여하고자 하는 민간의료기관은 위탁계약 체결과 함께 백신 신청
- ▶ 위탁의료기관은 안전한 예방접종 실시, 접종력 등록 및 비용상환 신청
- ▶ 조달계약 도매상은 분배 기준에 따라 백신 납품 및 백신비 수금



<노인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추진체계>

2) 기관별 역할

● 질병관리본부 및 시·도

- 사업 계획 수립 및 총괄 관리
- 백신 수요 파악 후 조달청에 백신 조달 요청 및 계약체결(질병관리본부)
- 사업용 예방접종등록관리정보시스템(이하 전산시스템) 구축(질병관리본부)
- 백신수급/접종현황 관리

● 시·군·구 보건소

- 1차 의료기관 중심으로 사업 수행할 수 있도록 계획 수립
- 위탁계약 체결 및 위탁의료기관 백신 수요 파악
- 위탁의료기관 백신 수요 승인 및 접종 현황 모니터링
- 예방접종비용 지급(백신비는 도매상에 지급하고, 예방접종 시행비는 위탁의료기관에 지급)



- 위탁의료기관
 - 위탁계약 체결 이후 백신 수요 제출
 - 안전한 예방접종 시행
 - 예방접종 시행 후 접종내역 전산등록 및 비용상환 신청
- 조달계약 도매상
 - 접종기관(보건소 + 위탁의료기관) 백신 수요 확인 후 백신 납품
 - 피접종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보건소에서 지급한 백신비 지급 내역 확인

3

사업용 백신 공급 및 관리

가. 백신 구매 및 분배 개요

- 원활한 백신 수급을 위해 공공기관에서 노인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 사업에 사용되는 백신을 조달청을 통해 일괄 구매함
- 이후 분배기준에 따라 조달계약 도매상을 통해 위탁의료기관에 납품됨



<노인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백신 공급 흐름>

나. 백신 관리 원칙

백신 관리 원칙

1. 보건소는 지자체 사업 목표 계획량 수립
2. 보건소 및 위탁의료기관에서 사용될 백신은 중앙 조달을 통해 일괄구매
3. 위탁의료기관은 위탁계약 체결 시 '예상수요' 제출하고, 보건소는 사업 목표 계획량 및 지난 절기 접종 실적을 고려하여 '백신 배정량' 확정
4. 전산시스템을 통해 백신 수요 신청, 공급량 확정 관리
5. 보건소 및 위탁의료기관은 사용 가능한 백신 물량을 신청하고, 백신 잔량을 남기지 않도록 사업 수행
6. 분배된 백신은 사업 대상에게만 사용
7. 백신 인수 후 파손, 타 대상자(중복접종 포함)에게 접종한 물량은 기관 자체 보유량으로 보존
8. 위탁의료기관은 사업 종료시점에 백신이 남아있는 경우, 전량 사용을 위해 관할 보건소와 협의하여 11월내에서 사업기간 연장 가능
9. 위탁의료기관은 보건소의 전배 요청에 적극 협조

● 보건소에서의 백신관리

- 지자체별 인구수, 지난 절기 접종 실적, 사업 목표 및 예산 등을 고려하여 사업 목표량 설정
- 보건소 및 위탁의료기관의 백신 수요량 취합 및 사업량 확정
- 위탁의료기관 백신 분배 관리 및 모니터링
- 조달계약 도매상에 백신비 지급
- 위탁의료기관 사업종료 후 잔여 백신 관리

● 위탁의료기관에서의 백신관리

- 평상시 내원환자 수, 진료과목, 지난 절기 백신공급량 및 사용량을 참고하여 백신 예상소요 제출
 - * 수요조사 기간 내 전산시스템에 예상소요 등록
- 사용 가능한 백신 물량을 신청하고, 백신 잔량을 남기지 않도록 사업 수행
- 사업용 백신 인수, 의료기관에 분배된 백신은 사업 대상자에게만 사용
- 사업 종료시점에 백신이 남아있는 경우, 전량 사용을 위해 관할보건소와 협의하여 11월내에서 사업 연장



- 원활한 백신 분배 및 사업 종료 후 잔량 최소화를 위해 보건소의 전배 요청에 협조
 - * 사업 종료 시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백신에 대해 보건소의 전배 요청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차년도 위탁계약 및 백신공급에 불이익 발생할 수 있음
- 의료기관 폐업 시 관할 보건소에 백신 반납
- 백신 인수 및 관리에 대한 세부 내용은 '4.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업무'의 '다. 백신 인수 및 관리' 부분(p. 50) 참조

● 백신 전배 관리

- 의료기관 별 백신 소진 시기가 달라 백신의 과부족 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사업 종료 시 폐기되는 백신의 양을 최소화하는 목적으로 보건소가 백신 전배 등 사전 조치
- 1차 공급 외 위탁의료기관의 추가 공급은 백신 전배로 실시
- 보건소-의료기관 간 백신전배 가능, 의료기관-의료기관 간 직접 전배는 백신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으나, 보건소 관리* 하에서 실시
 - * 반드시 보건소 담당자가 백신이 남아 있는 의료기관에서 부족한 의료기관으로 cold chain 유지하여 백신 운송
- 전배 대상 백신이 적절한 조건에서 보관되었다는 확인·기록이 있고, 용기 및 개별 포장에 파손되지 않는 등 백신의 품질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에만 전배 가능
- 보건소-보건소 백신 전배가 시·도 단위로 이루어질 경우 중앙에서 관리
- 보건소의 백신 전배 협조 요청에 비협조적인 위탁의료기관의 경우 패널티 적용*
 - * 협조하지 않을 시 위탁계약 조건(예방접종기록 등록, 비용상환 신청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지침'을 준수한다) 위반에 해당하므로 계약 해지 가능

다. 백신 수요 확정 및 분배 절차

백신 수요 확정 및 분배 절차

1. 시도/보건소 사업 목표량 결정 → 2. 의료기관 예상 수요 등록 → 3. 보건소/질병관리본부 백신 배정량 확정 → 4. 도매상 백신 공급 → 5. 보건소/의료기관 백신 인수 → 6. 보건소/의료기관 예방접종 실시 → 7. 의료기관 추가 수요 요청 → 8. 보건소 추가 수요량 검토, 추가공급 및 전배

● 지자체별 사업 목표량 설정 시 참고사항

- 사업 목표 : 65세 이상 인구수 대비 82%
- 지자체별 '예상수요' 취합결과, 과거 접종실적, '16년도 사업 계획
 - * 지자체 사업 목표가 82%를 초과하는 경우 산출근거와 예산 검토, 집행 방안에 대해 질병관리본부 승인 후 시행

● 백신 분배 관련 세부 사항

① 예상 수요 : 위탁의료기관에서 전산시스템에 신청한 백신 수요량

- * 상한 조건 : 예방접종 시행의사 1인당 1일 100명
- * 위탁의료기관의 예상 소요량 최소 신청량 및 공급단위 : 20 도즈

② 백신배정량

- 위탁의료기관에서 신청한 백신 수요량을 관할 보건소에서 지역내 인구수, 지난절기 공급량, 사용량, 회수량, 지역적 특성 등을 참고하여 백신 배정량 확정
- 보건소 수요량(국가 및 지자체 사업분)은 전량 공급, 위탁의료기관은 보건소에서 확정한 백신 배정량의 80~90% 공급, 그 외 10~20%는 보건소로 공급되어 관리하며 의료기관 요청 시 추가 공급
 - * 9월 중 보건소 및 위탁의료기관 백신 공급완료 예정

③ 추가 수요 : 위탁의료기관에서 사업 기간 중 추가로 필요한 백신을 보건소로 요청

④ 추가 수요량 검토 및 공급 : 위탁의료기관에서 신청한 추가 수요량에 대해 보건소에서 검토·승인, 추가 공급 및 전배 실시

라. 잔여백신 관리

● 보건소 : 백신 소진 시까지 관내 65세 이상 노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시행

● 위탁의료기관

- 위탁의료기관별 백신 잔량에 차이가 있는 경우, 보건소가 전배를 통해 잔여 백신을 소진할 수 있도록 관리
- 사업기간은 '16. 10. 4. ~ 11. 15.이며, 사업종료 후 잔여백신이 있는 경우 관할 보건소와 협의하여 11월내에서 사업기간 연장하여 접종 가능



마. 백신비 비용 지급

- 백신 공급 완료 후 위탁의료기관의 관할 보건소에서 조달계약이 체결된 도매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아 대금 지급
 - * 세금계산서 발급 후 2주 이내 지급 처리 완료
- 위탁의료기관 사업 종료 후 위탁의료기관에서 시행한 접종에 대해 피접종자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따라 재산정하여 환수 및 추가 지급
 - * 보건소에서 시행한 접종은 피접종자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따른 재정산을 실시하지 않음
- 보건소의 국가 및 지자체사업을 위해 공급되는 백신은 조달단가를 기준으로 하며, 그 외 위탁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백신은 조달단가에 유통비를 추가한 금액으로 지급
- 보건소와 조달계약 도매상은 전산시스템을 통해 지급결과 확인

4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업무

관리 원칙

1. 전산시스템을 통한 위탁계약 체결(필요시 서면 계약 가능)
2. 노인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참여의료기관은 위탁계약 시 '사전자율점검표' 제출(단,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사업 위탁의료기관의 경우 생략)
3. 접종 전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기록된 서류로 대상자 확인
4. 접종 전 전산시스템을 통해 인플루엔자 기접종 여부를 확인하여 중복접종 방지
5. 예방접종에 대한 동의 및 예진 후 예방접종 실시
6.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의 위탁의료기관 및 보건소에서 무료 접종 가능
 - *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자(면제자 포함)의 경우도 위탁의료기관에서 무료접종 가능
 - * 외국국적동포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 신고를 한 경우도 위탁의료기관에서 무료접종 가능
7. 당일 시행한 접종기록은 접종 후 바로 전산시스템에 등록
 - * 예방접종 등록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시설의 경우 실시한 접종력은 보건소나 위탁의료기관을 통하여 당일 입력
8. 중복접종 백신은 기관에 등록된 사업용 백신량에서 차감하지 않음
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설명 및 접종기관에서 최소 20~30분 대기하도록 안내

가. 예방접종업무 위탁 계약

1) 위탁계약 체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해당 의료기관의 예방접종업무 수행 능력을 고려하여 위탁계약 체결
 - 2016년 위탁계약 체결기간 : 2016. 7. 1.(금) ~ 7. 29.(금) 1달간
 - 사업기간 내에 폐업이 예정되어 있거나, 명시된 계약기간 내 계약체결이 불가능한 경우 원만한 백신 수급 등을 위하여 계약 지양
- 계약 전 참여 희망 의료기관에 사업 안내
 - 위탁계약 체결 전 사업취지, 사업지침, 위탁계약조건, 의료기관 준수사항 등 세부 사업내용에 대해 의료기관에 설명
 - 예방접종 실시기준 및 방법, 관련 시스템 사용법 등을 숙지하도록 충분히 안내

2) 위탁계약 시 필요한 서류

① 기본교육 수료증<별첨서식 11>

- 노인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교육과정 이수 시 수료증 발급
 - *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의 의료인(예방접종 시행의사)은 질병관리본부 교육시스템 (<http://edu.cdc.go.kr>)에서 교육 이수 후 '수강과정(또는 '수료증 출력') → 수강종료과정' 메뉴에서 기본교육 수료증 출력 가능
- 교육과정

과정명	교육대상	차시
1기 [기본교육]노인플루 예방접종사업 위탁의료기관 교육(2016)	2015년 노인플루 예방접종사업 미참여 의료기관 (어린이 NIP사업 참여의료기관*)	4차시
2기 [기본교육]노인플루 예방접종사업 위탁의료기관 교육(2016)	노인플루 예방접종사업만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 (어린이 NIP사업 미참여 의료기관)	8차시

* 1기 과정(4차시)은 최근 3년 이내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교육과정(기본 또는 보수교육)을 수료한 자가 대상이며, 마지막으로 이수한 과정이 2014년도 이전 과정인 경우 '어린이 NIP 위탁의료기관 교육(기본 또는 보수교육)' 과정을 이수 후 1기 과정을 이수하도록 함

※ 2015년도 노인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사업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노인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에 참여하였던 의료기관은 2017년까지 이러닝 교육 대상에서 제외되며, 재계약시(3년마다)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됨. 단,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또는 별도의 공지를 통한 사업 변경사항은 반드시 숙지하여야 함



- 노인 인플루엔자 및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사업에 모두 신규로 참여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인 경우 중복 수장을 피하기 위해 다음의 교육과정을 순차적으로 수강하도록 권함
 - : 1기[기본교육]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위탁의료기관 교육(2016) → 1기[기본교육] 노인플루 예방접종사업 위탁의료기관 교육(2016)
- 전자계약 체결 시 계약신청 화면의 '교육수료정보'에서 기관에 소속된 예진의사 기본교육 수료여부 확인 가능함. 단, 교육수료 정보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 교육시스템에서 기본교육 수료증을 다운로드하여 문서 상단의 수료번호를 확인 후 해당 예진의사의 수료번호란에 입력하고 수료확인란의 버튼을 클릭하여 수료여부를 확인. 수료번호가 입력/확인되면 "저장"버튼 클릭.

- 위탁계약기간(3년) 만료 후 재계약하고자 할 경우 '보수교육 수료증 필요<별첨 서식 12>

② 통장사본

- 노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용을 지급받기 위한 통장사본으로 예방접종 비용상환용 별도 계정의 통장 개설 권고
 - * 노인 인플루엔자 및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사업 모두 참여하는 위탁 의료기관의 경우 동일 통장 사용 가능.
 - * 전자계약의 경우 통장사본을 이미지파일로 변환(스캔 등) 후 업로드

③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사전 자율점검(전자문서 가능)

- 노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사전 자율점검표 서식<별첨서식 5>.

- 의료기관은 예방접종업무 위탁 계약 체결 전 점검항목에 대해 자율적으로 점검 실시
 - * 자율점검표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예방접종업무 위탁 해지 등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의료기관에 있으므로, 점검항목에 따른 내용을 정확하게 작성함

<사전 자율점검 항목>

- 일반사항 : 인터넷접속 가능 컴퓨터 보유, 예방접종 예진표<별첨서식 3> 및 예방접종 안내문 (VIS) 비치 등
- 사업이해 : 사업대상자(만 65세 이상), 백신 조달 및 납품방법 등
- 실시기준 : 대상자 확인, 예진표 작성, 과거접종력 확인, 예방접종 전후 주의사항 및 이상반응 설명, 예방접종 실시기준 및 방법 준수, 접종 후 20~30분간 이상반응 관찰, 예방접종안내문 제공, 이상반응 신고제도 설명 등
- 기록보존 : 예진표 보관기간(5년), 접종기록 전산 등록 등
- 비용상환 : 중복접종 발생 시 먼저 전산등록한 의료기관에 비용상환 등
- 백신관리 : 백신관리 담당자 지정, 백신전용 냉장고에 백신만 보관, 백신 보관 온도 2~8℃유지, 주기적 온도 점검(1일 2회), 백신 유효기간 주기적 점검, 유효기간경과 백신 폐기처리 등

- * 위탁 의료기관은 계약체결 후 계약기간(3년) 동안 매년 8월말까지 사전 자율점검표를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여야 함
- * 전산시스템에서 사전 자율점검표 작성 및 제출 가능
- 어린이 예방접종업무와 노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업무를 모두 위탁받은 의료기관의 경우, ‘노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사전 자율점검표’ 제출 생략

3) 계약 방식

- 서면계약 : 의료기관과 보건소가 서면으로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 체결
 - 서면 계약서 작성 시 예진의사 수는 자율점검표 상의 의사수와 일치해야 하며, 의료기관 기관정보를 반드시 등록
- 전자계약 : 「전자서명법」 제3조에 따라 의료기관과 보건소가 전산시스템에서 전자문서 방식으로 계약 체결
 - * 전자계약 방식의 위탁계약을 하고자 할 경우 계약 양 기관(위탁의료기관 및 지자체)의 기관 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함
 - 전자서류 제출 : ‘전산시스템’에서 위탁계약 시 필요한 서류(기본교육 수료증, 통장사본, 사전 자율점검표) 확인 후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를 제출<별첨서식 7>
 - 계약체결 : 의료기관에서 위탁계약서 제출(전자계약 요청) 후 보건소에서 등록된 문서의 유효 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하면 계약체결 성립



4) 계약 기간

● 계약기간 : 3년

- 계약기간 만료 후 보수교육 이수 여부 확인하여 재계약(갱신) 가능

5) 위탁의료기관 지정서 교부 및 비치

● 보건소는 위탁의료기관에 위탁의료기관 지정서(전자 또는 서면) 교부 <별첨서식 8>

-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관리대장<별첨서식 10>을 작성한 후 발급번호 부여 후 지정서 교부

* 전자계약의 경우 발급번호가 자동으로 부여되나, 서면계약인 경우에는 전산시스템에 발급번호 등록 필요

● 위탁의료기관은 발급받은 '위탁의료기관 지정서'를 잘 보이는 곳에 비치

* 전자계약의 경우 전산시스템 화면에서 직접 '위탁의료기관 지정서' 출력 가능

6) 위탁의료기관 준수사항(①~⑥항은 위탁계약조건임)

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고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의 예방접종업무 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③ 위탁의료기관의 의료인(의사)은 사업 실시 이전에 예방접종업무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 예방접종등록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과거 예방접종력을 조회하고 접종기록을 등록하며 비용상환을 신청한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예방접종 기록의 보존 및 보고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의 작성 및 보고)에 따라 예방접종기록을 등록한다.

⑤ 예방접종기록 등록, 비용상환 신청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지침'을 준수한다.

⑥ 개인의 과거 접종력 조회와 정보 활용 시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진료 이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 ⑦ 노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어린이 예방접종업무를 같이 위탁한 의료기관은 제외한다)은 매년 8월말까지 관할 보건소에 ‘예방 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사전 자율점검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계약 체결년도에는 계약 전 자율점검 실시 후 자율점검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⑧ 중복접종이 발생한 경우, 접종기록을 먼저 전산 등록한 위탁의료기관이 예방접종비용을 상환 받을 수 있다.
- ⑨ 접종 전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기록된 서류로 대상자를 확인하고, 중복접종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산시스템을 통해 인플루엔자 기접종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7) 위탁의료기관 계약 해지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과 같은 위탁계약서에 명시된 계약해지 사유가 있는 경우 위탁의료기관에 사전 통지 없이 해지 가능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한 때
 - 위탁의료기관이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항에 따른 위탁계약 조건을 어겼을 때
 - 기타 위탁계약에 규정된 사항을 어겼을 때
- 위탁의료기관이 계약 해지를 할 경우는 계약해지 신청서<별첨서식 9>를 관할 보건소로 제출
 - 계약 해지일 전 비용상환 신청한 접종내역은 심사 후 지급
- 위탁의료기관이 계약 해지 절차 없이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 신고를 위탁계약 해지로 같음
- 위탁의료기관이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해지한 경우, 계약을 해지한 당해 연도에는 재계약**을 할 수 없음
 - * 의료기관의 이전, 폐업 등 ** 재계약은 계약기간 내에만 가능



<노인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사업 개시 전 접종 등에 대한 조치사항

사업시행 전 접종	조치사항
1회	- 사업시행 전 접종사실이 확인된 즉시 계약 해지 및 백신 회수* - 1년간 노인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사업 참여 제한(당해년도) * 사용한 백신은 기관 자체 백신으로 반납, 예방접종 시행비 상환 불가
2회 이상	- 사업시행 전 접종사실이 확인된 즉시 계약 해지 및 백신 회수* - 3년간 노인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사업 참여 제한 * 사용한 백신은 기관 자체 백신으로 반납, 예방접종 시행비 상환 불가

※ 사업 시행 전 실시한 예방접종으로 이상반응이 발생할 경우 국가예방접종 피해보상기준 적용에서 제외됨

8)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공고(보건소)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의거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탁의료기관 공고
 - 공고방법 : 보건소 및 시·군·구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가능한 방법 (반상회보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들에게 공지
 - *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시에는 연 1회(매년 9월 둘째 주) 공고함을 원칙으로 하며, 변동 사항은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 '의료기관 찾기' 등을 통하여 확인 가능함을 공지
 - 공고 내용 : 위탁의료기관명, 위탁기간 등
- 전산시스템에서 '위탁사업 참여' 의료기관으로 등록하면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 (<https://nip.cdc.go.kr>) > 의료기관 찾기 > 노인 인플루엔자 지정의료기관 또는 모바일 예방접종도우미 앱을 통해서 위탁의료기관 현황을 실시간 검색 가능

9) 위탁의료기관 관리(보건소)

- 위탁 계약을 체결한 후 보건소가 '전산시스템'의 '기관정보' 메뉴에서 위탁사업정보 등록
 - * 전자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관정보'에 자동 등록
-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관리대장'에 위탁의료기관 계약내용 등 기록 관리

- 의료기관명, 요양기관번호, 지정서 발급번호, 계약일 및 변경사항 기록 (전산시스템에서 전자문서 기록 관리 가능)<별첨서식 10>

● 사전 방문점검 실시

- 지자체 특성에 따라 사업 시행 전(9월까지) 자율적으로 실시하되, 신규 위탁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계약기간 중 1회 이상 실시하고,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 보고를 사후 점검으로 같음
 - * 사전자율점검 내용이 허위인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 2항에 따라 계약해지 가능
 - * 어린이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의 경우 연1회 방문점검으로 같음
 - *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사전 방문점검표 서식<별첨서식 6>

● 방문점검내용

- 사업 수행 가능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일반현황, 노인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이해도, 접종 전·후 예방접종 실시기준 준수사항, 예방접종 기록관리 및 백신관련 준수사항에 대하여 점검 실시

- 일반사항 : 인터넷접속 가능 컴퓨터 보유, 예방접종예진표 및 예방접종안내문(VIS) 비치* 등
 - * 질병관리본부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서 다운로드 가능
- 사업이해 : 사업대상자(만 65세 이상), 백신 조달 및 납품방법 등
- 실시기준 : 대상자 확인, 예진표 작성, 과거접종력 확인, 예방접종 전·후 주의사항 및 이상반응 설명, 예방접종 실시기준 및 방법 준수, 접종 후 20~30분간 이상반응 관찰, 예방접종안내문 제공, 이상반응 신고제도 설명 등
- 기록보존 : 예진표 보관기간(5년), 접종기록 전산 등록 등
- 비용상환 : 중복접종 발생 시 먼저 전산등록한 의료기관에 비용상환 등
- 백신관리 : 백신관리 담당자 지정, 백신전용 냉장고에 백신만 보관, 백신 보관 온도 2~8℃유지, 주기적 온도 점검(1일 2회), 백신 유효기간 주기적 점검, 유효기간경과 백신 폐기처리 등



10) 예방접종기록의 개인정보 관리

- 예방접종 기록은 피접종자의 중복접종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종기관 간 공유
- 접종기관 간 공유되는 개인정보는 예방접종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지 않도록 하며, 위탁의료기관에서는 개인정보 관리 철저
- * 개인의 과거 접종력 조회 등 정보 활용 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진료 이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위탁의료기관 계약 해지

11) 위탁의료기관 교육

-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 시행 의사는 모두 사업 참여 전에 질병관리본부 교육시스템(<http://edu.cdc.go.kr>)에서 교육을 이수하여 예방접종이 안전하게 시행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별첨서식 11>
- 위탁계약기간(3년)이 만료된 후 재계약 하고자 할 경우 보수교육 이수 <별첨서식 12>
- 위탁계약 체결 전 기본교육
 - 노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의료기관을 대표하는 예방접종 시행의사가 해당 교육을 이수한 후 계약 체결(7월 1일~7월 29일)이 가능하며, 접종을 위해서는 모든 예방접종 시행의사가 사업 시행일 전까지 해당교육을 이수해야 함
 - 교육과정명 : 「노인플루 예방접종사업 위탁의료기관 교육(2016)」
 - 신청 기간 : 2016년 6월 16일 ~ 7월 28일(※ 사업 계약 체결 전까지 신청 가능)
 - 학습 기간 : 2016년 6월 16일 ~ 9월 30일(※ 사업 시행 전까지 학습 가능)
 - 대상별 교육과정

구분	교육대상	교육내용
1기	어린이 NIP 사업 참여 의료기관	노인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개요, 고령자에서의 예방접종, 계절인플루엔자의 이해, 노인 인플루엔자 등록시스템 사용법 (총 4차시)
2기	어린이 NIP 사업 미참여 의료기관	1기 내용 외 예방접종의 원칙, 국가예방접종 이상반응 관리, 예방접종 후 아나필락시스 대응법, 백신의 보관과 취급 (총 8차시)

나. 백신 수요 제출 및 공급

- 노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시기(16.10.4~11.15.)에 접종할 수 있는 예상 수요량을 파악하여 전산시스템을 통해 제출
 - 예상수요량 제출시기 : 지난 절기에 계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은 2016.7.1.(금) ~ 2016.8.12.(금), 신규 계약하는 의료기관은 계약 완료(보건소 승인)~2016.8.12.(금)
- 예상수요량 고려조건 : 해당 의료기관의 지난절기 백신공급량, 접종건 및 잔여량 등
 - * 기관별 신청 상한조건 : 예방접종 시행의사 1인당 100명/1일
 - * 사업기간 내 의료기관별 최소 신청량 및 공급단위 : 20 도즈
- 예상 수요량은 관할 보건소에서 검토하여 각 의료기관별 백신 배정량 확정 후 배정량의 80~90%를 사업시작 전 일괄 공급
- 사업 기간 중 추가로 필요한 백신은 시스템을 통해 보건소로 요청

다. 백신 인수 및 관리

- 인수 시 주문백신의 수량과 백신의 손상여부 확인
 - 주문한 수량과 인수받는 백신의 수량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백신을 인수받는 담당자가 인수증에 서명하기 전에 수량 변경 요청 가능, 인수증에 서명한 후 백신을 적게 받은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추가 요청 불가
- 백신의 상표가 훼손되었거나 백신 바이알, 프리필드시린지에 금이 간 경우 백신을 공급한 도매상에 교환 요청
- 백신 수령 시 생물학적 제제 출하증명서 원본을 제출받아 2년간 보관
- 백신 보관 전용 냉장고 사용 권장
 - * 음식물이나 다른 약품을 함께 보관하지 않도록 주의
- 백신보관을 위한 냉장고의 온도는 2~8℃가 되도록 유지함
 - 냉장고 플러그가 전원에 꽂혀 있는지 확인
- 냉장고의 중앙에 온도계를 비치하고, 하루 2회(일과 시작/마친 후) 온도를 점검하여 온도 기록지를 작성함



- 작성된 온도 기록지는 월별로 백신관리 담당자(예방접종 시행의사, 병원장 등)가 확인하고 2년간 보관
- 문을 자주 열지 않도록 하고 문이 제대로 닫혔는지 항상 확인
- 백신 인수 후 파손, 타 대상자(중복접종 포함)에게 접종한 물량은 기관 자체 보유량으로 보존
- 포장을 개봉한 상태로 백신 냉장고에 보관할 경우 오염의 가능성이 높으므로 반드시 사용 직전에 포장을 개봉하여 접종
 - 포장을 개봉한 상태로 보관된 백신 예시



라. 예방접종 일반원칙

- 접종 전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기록된 서류로 사업 대상자를 확인
 - * '16년 노인 인플루엔자 사업대상자: 만 65세 이상 노인(1951. 12. 31. 이전 출생자)
 - *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 등록자(면제자 포함)는 사업 대상에 포함. 단, 관련법에 따른 외국인등록 면제자는 보건소에서 관리번호 발급 필요
- 노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실시기준 및 방법
 - 접종용량 및 횟수 : 불활성화 백신 0.5ml 1회
 - * 이전 절기 접종력과 상관없이 1회 접종
 - 접종 부위 및 방법 : 삼각근에 근육주사

- 금기 및 주의사항

- (금기) 이전 인플루엔자 백신접종 후 심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 경우
- (금기) 계란에 심한 과민반응을 보인 경우
 - * 단, 계란을 먹고 심한 과민반응이 없었다면 금기대상이 아님
- (금기) 이전 백신 접종 후 6주 이내에 길랭-바레 증후군이나 다른 신경 이상을 보인 경우
- (주의) 열성질환 또는 급성 감염 환자(접종을 연기해야 함)인 경우
 - * 감기와 같은 경한 질환은 금기사항이 아님

- 동시접종 : 다른 백신과 동시접종 가능

● 예방접종 전·후 주의사항

- 예방접종 후 발생할 수 있는 이상반응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사전 예진 철저
- 접종 후 접종기관에 약 20~30분간 대기하며 급성 이상반응 발생 여부 관찰
- 접종부위는 청결하게 유지하도록 안내
- 접종 당일 음주나 지나친 운동, 샤워는 피하고, 만나질 이상 안정을 취하도록 안내

마.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

● 인플루엔자 불활성화 백신 이상반응

- 국소반응 : 접종부위의 통증과 발적(주로 경증, 일시적)
- 전신반응 : 발열, 무력감, 근육통, 두통 등
- 계란 단백질에 의한 알레르기 반응

● 예방접종 후 아나필락시스 예방 및 발생 시 대응법

- 예방접종 전·후 주의사항 안내
- 예방접종 후 접종기관에 20~30분간 머물러 이상반응 관찰 후 귀가
- 접종 후 아나필락시스 발생에 대비한 응급처치 장비 구비 및 후속 조치 체계 마련
- 신속대응을 위한 담당자별 역할 숙지(예진 의사, 간호사, 보조원 등)
 - * 기타 세부사항은 <부록 7> 아나필락시스 대응 매뉴얼 참조

● 이상반응 신고 방법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is.cdc.go.kr>) → 예방접종관리 → 예방접종안전관리
 - 이상반응 → 병의원/보건소 신고관리
- <부록 10. 이상반응관리, 부록 11. 이상반응관리 참조>



바. 예방접종기록 등록 및 비용 지급

1) 예방접종기록 전산등록

- 중복접종 방지 등을 위하여 가급적 접종 당일에 접종기록을 전산등록함
- 예방접종기록 전산등록방법은 시스템 사용 매뉴얼* 참조
 - * 시스템 사용 매뉴얼은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예방접종관리→자료실→매뉴얼 다운로드 가능

2) 예방접종비용 지급

- 예방접종비용 지급 기준
 - 65세 이상 사업대상자에게 예방접종 실시기준 및 방법에 따라 시행한 접종에 대해 비용지급

- 상환결정 : 예방접종 실시기준 및 방법에 적합한 접종 시 '상환결정'
- 상환불가 : 사업대상자 이외 접종, 중복접종
 - * 중복접종 시 전산등록일이 빠른 접종에 대해 비용을 지급하고, 전산등록일이 늦은 접종은 상환불가

- 예방접종비용 상환 신청
 - 위탁의료기관이 사업대상자에게 접종 후 전산시스템을 통해 비용상환 신청
 - * 예방접종내역 등록 시 '예방접종 등록' 화면에서 '비용상환 신청비용'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므로 비용 확인 후 접종내역 등록(등록과 동시에 자동으로 비용상환 신청됨)
- 예방접종비용 상환 심사
 - 지자체장은 예방접종비용 상환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청구 내역이 적합한지 심사하고, 심사기준 공개
 - (일반심사) 피접종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보건소에서 비용상환 적합 여부를 심사하여 '상환결정', '상환불가', '예외인정'으로 판정하고, 판단이 어려울 경우 질병관리본부로 '전문심사 의뢰'
 - * 비용상환 심사 시 등록자료 만으로 심사가 곤란한 경우 보완자료 요청 가능
 - 피접종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잘못된 경우에는 해당의료기관에서 수정 전까지 심사불가

- (이의심사) 일반심사 결과 '상환불가' 판정된 내역에 대해 위탁 의료기관에서 '이의신청' 한 경우 보건소에서 재심사하여 상환여부 재결정
- 예방접종비용 심사결과 통보
 - 지자체장은 비용상환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위탁의료기관에 비용상환 인정여부 통지
 - 지자체장은 비용 상환액을 지급하기 전 지급불능사항이 발생한 경우 위탁의료기관에 그 사유를 통보
 - 예방접종 비용상환 심사를 위한 자료보완을 요청받은 위탁의료기관이 보완한 자료를 제출할 때까지 소요된 기간은 심사결과 인정여부 통지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 예방접종비용 지급
 - 비용상환 심사결과 예방접종비용 상환 인정사실을 통보한 후 상환결정 내역에 따라 위탁의료기관에 예방접종비용 지급
 - * 노인 인플루엔자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용 : 1회당 12,150원
 - 중복접종 발생 시 먼저 전산등록한 위탁의료기관에 예방접종비용 지급
 - 단, 백신비의 경우 위탁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 실시기준 및 방법에 적합하지 않은 접종(중복접종 등)을 시행한 경우 기관 자체 백신 물량을 사업물량으로 대체하여 사용
- 예방접종비용 이의신청
 - 위탁의료기관이 비용상환 불가 통지를 받을 경우, 비용상환 불가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 비용상환 이의신청을 하면, 해당 보건소는 이의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사를 실시함
 - *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비용상환 이의신청)
- 예방접종비용 환수
 - 예방접종 비용 지급 후 예방접종 실시기준 및 방법에 적합하지 않은 접종으로 확인된 경우 비용 환수
 - * 사업기간 종료 후 예방접종 실시기준 및 방법에 적합하지 않은 접종 확인 시 백신비도 현금 환수



3) 예방접종 비용상환시 주의사항

- 외국인에 대한 예방접종 시행비 상환 심사 및 지급
 - 외국인 등록증, 여권 등을 통한 본인 확인 후 사업대상자(65세 이상 노인)에 대해 실시한 접종에 대해 관할 보건소에서 비용상환 심사 및 예방접종 시행비 지급
 - * 단, 「출입국 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 등록 면제자인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발급한 관리번호를 전산등록시스템의 주민등록번호 입력란에 기입 후 비용상환 신청
 - * 재외교포의 경우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대신 국내거소신고번호 기입 후 비용상환 신청
- 예방접종 당일 별도 진료행위가 없는 경우 건강보험 진료비 청구 제한
 - 위탁의료기관에서 사업대상자에게 예방접종을 시행한 당일 별도 진료행위가 없는 경우 건강보험 진료비를 청구하지 않도록 함

5

거동불편 사업대상자 예방접종

관리 원칙

1. 거동불편자 : 의료법에 따른 요양병원 또는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생활자 중 독립적으로 의료기관 왕래가 불가능한 자
2. 보건소는 거동불편자가 생활하는 기관에서 요청 시 다음과 같이 접종 시행
 - ①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장기요양 중인 고령 환자의 경우 환자 상태를 잘 아는 주치의 또는 촉탁의에게 접종받을 수 있도록 권고
 - ② 요양병원은 위탁계약 체결 후 기관 내에서 자체 접종 후 비용상환 신청
 - ③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촉탁의가 의료기관 소속인 경우 소속기관에서 위탁계약 체결 후 해당 기관에 의료진이 공급받은 백신을 이용하여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접종
 - ④ 노인의료복지시설 촉탁의가 개인자격인 경우와 촉탁의가 없는 경우 보건소가 접종관리
 - * 개인 자격 촉탁의가 보건소 사업에 무료로 협조할 경우 촉탁의를 통한 접종이 가능하며, 예방접종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은 보건소가 관리하도록 함
 - ⑤ 노인의료복지시설 촉탁의는 소속 위탁의료기관의 관할 보건소에 해당하는 지역에서만 접종 가능

가. 거동불편 사업대상자 범위

- 거동불편 사업대상자란 「의료법」에 따른 요양병원 또는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 의료복지시설 생활자 중 독립적으로 의료기관 왕래가 불가능한 자임
- 요양병원 및 노인의료복지시설 정의
 - 요양병원 : 의사나 한의사가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 요양환자 3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주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입원환자에게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개설하는 의료기관(의료법 제3조의2)
 - 노인요양시설 :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노인복지법 제34조)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노인복지법 제34조)
- * 노인의료복지시설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 가정

나. 요양병원 및 노인의료복지시설별 사업 방식

구분	촉탁의 유무	촉탁의 소속	사업 방식
요양 병원	-	-	· 노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업무 위탁 계약 체결 후 위탁의료 기관으로 사업 참여
노인 의료 복지 시설	촉탁의 있음	의료 기관 소속	· 촉탁의 소속기관이 위탁의료기관으로 사업 참여 - 소속기관에서 신청한 사업용 백신 사용 - 촉탁의가 주도하여 예진, 접종, 등록 실시 - 예방접종 시행비는 촉탁의 소속기관에 상환 · 촉탁의 소속 의료기관과 노인의료복지시설의 관할보건소가 상이한 경우, 두 기관 간의 거리·생활권 등을 고려하여 노인 의료복지시설의 관할보건소가 접종 시행 여부를 판단하도록 함
		개인 자격	· 신청기관에 한하여 보건소가 접종관리 * 촉탁의 협조가 있을 경우 촉탁의의 예진/접종이 가능하나, 시행비 청구는 불가하고, 백신 제공과 예방접종에 대한 관리는 보건소가 담당
	촉탁의 없음	-	· 신청기관에 한하여 보건소가 접종관리*

* 보건소 접종관리: ① 촉탁의가 없는 경우, 보건소는 위탁의료기관과 노인의료복지시설이 단기적으로 촉탁의 계약을 체결하여 접종하도록 안내, ② 보건소가 보건소 백신으로 직접 접종, ③ ①의 촉탁의 계약이 없을 시, 보건소 관리 하에 인근 위탁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접종하고 시행비 상환



다. 예방접종기록 전산등록 및 비용상환

● 요양병원

- 노인 인플루엔자 사업대상자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한 후 바로 전산시스템에 등록
 - * 예방접종 등록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시설의 경우 실시한 접종력은 보건소나 위탁의료기관을 통하여 당일 입력
- 예방접종비용 상환방식은 일반 위탁의료기관 상환방식과 동일하며, 요양병원에서 시행한 예방접종에 대해 전산시스템을 통해 예방접종 시행비 상환 신청시 피접종자 관할 보건소에서 비용지급

● 노인의료복지시설

- 축탁의가 의료기관 소속인 경우 일반 위탁의료기관 및 요양병원과 동일한 방식으로 예방접종기록을 전산등록하고, 예방접종 시행비 상환 신청 시 피접종자 관할 보건소에서 비용지급
- 축탁의가 개인자격이거나, 축탁의가 없는 경우 보건소가 접종관리 후 접종기록 전산등록

6

사업 예산관리

관리 원칙

1. 노인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비 집행·정산 등 처리절차 및 방법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2016년도 국가예방접종사업 국고보조금 운영지침'에 따름
2.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한 건에 대해 백신비와 시행비는 피접종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보건소에서 지급

가. 지자체 예산 처리 절차

- 노인 인플루엔자 사업비 교부시기 : 3분기(국비 559억원)

● 예산집행

- 비용상환 심사결과 예방접종비용 상환 인정사실을 통보한 후 상환결정 내역에 따라 위탁의료기관에 예방접종비용 지급
- 공급이 완료된 백신에 대한 대금은 보건소에서 조달계약이 체결된 도매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아 대금 지급하며, 세금계산서 발급 후 14일 이내 지급 처리 완료
 - * 보건소에 국가 및 지자체사업을 위해 공급되는 백신은 조달단가를 기준으로 하며, 그 외 위탁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백신은 조달단가에 유통비가 추가된 단가로 지급
- 시행비는 예방접종 실시기준 및 방법에 적합한지 여부를 지급심사하여 14일 이내 지급 결정 통지
 - * 보건소와 조달계약 도매상은 전산시스템을 통해 지급내역 확인 가능
 - * 노인 인플루엔자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용 : 1회당 12,150원
- 중복접종 발생 시 먼저 전산등록한 위탁의료기관에 예방접종비용 지급
- 지급절차
 - 예방접종 시행비의 경우 위탁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등록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한 비용상환 신청
 - e호조시스템을 통한 비용지급
 - * 2015년 9월 예방접종등록관리정보시스템 및 e호조시스템 간 연계 완료

● 위탁의료기관 백신비 재산정

- 위탁의료기관 사업 종료 후 위탁의료기관에서 시행한 접종에 대해 피접종자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따라 재산정하여 환수 및 추가 지급
 - * 보건소에서 시행한 접종은 피접종자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따른 재산정을 하지 않음

● 정산보고

- 지자체는 노인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비(백신비, 시행비)에 대해 다른 사업비와 별도 구분하여 정산
 - * 정산보고 양식은 '2016년도 국가예방접종사업 국고보조금 운영지침' 참조
 - * 기타 사항 : <부록 13> 노인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FAQ 참조



7

사업 모니터링

가. 예방접종 실시 현황

● 지역별/연령별 예방접종 실시 현황

- 제출시기 : 사업 시작 후 매주 월요일

구 분	참여 기관수	사업 계획량	누계 (10.1이후)	40주(10/1~10/3)		41주(10/4~10/10)	
				65~74세	75세 이상	65~74세	75세 이상
시·도 합계							
...시							
...구							
...구							

나. 이상반응 신고 현황

구 분		누계	40주	41주	42주	43주
계						
경미						
중증	아나필락시스					
	입원					
	사망					

별첨서식

1. 인플루엔자 임상표본감시 신고양식
2. 인플루엔자 및 급성호흡기감염증 실험실검사 의뢰서 및 동의서
3. 예방접종 예진표
4.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역학조사서
5. 노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사전 자율점검표
6. 노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사전 방문점검표
7.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
8.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지정서
9.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계약 해지 신청서
10.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계약 관리대장
11.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기본교육 수료증
12.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보수교육 수료증

별첨서식 1 인플루엔자 임상표본감시 신고양식

인플루엔자(성인) 신고서

수 신 : 질병관리본부장

표본감시기간 : ___주(___년 ___월 ___일 ~ ___년 ___월 ___일)

	19~49세	50~64세	65세 이상
총 진료환자수 ¹⁾	명	명	명
인플루엔자 의사환자수 ²⁾	명	명	명

신고일 : 년 월 일

표본감시기관명 :

요양기관번호 :

인플루엔자(소아), 수족구병 신고서

수 신 : 질병관리본부장

표본감시기간 : ___주(___년 ___월 ___일 ~ ___년 ___월 ___일)

	0~6세	7~18세
총 진료환자수 ¹⁾	명	명
인플루엔자 의사환자수 ²⁾	명	명
수족구병	명	명

신고일 : 년 월 일

표본감시기관명 :

요양기관번호 :

- 1) 총 진료환자수 : 인플루엔자의사환자를 포함하여 초진, 재진 구분없이 모든 환자수를 기재
(예방접종예진, 진단서작성, 성매개감염병 검진 등 진료 이외의 목적으로 내원한 경우는 제외)
- 2) 의사환자수 : 38℃의 이상의 갑작스런 발열과 더불어 기침 또는 인후통을 동반하는 경우



별첨서식 2 인플루엔자 및 급성호흡기감염증 실험실검사 의뢰서 및 동의서

인플루엔자 및 급성호흡기감염증 실험실검사 의뢰서 및 동의서

[인플루엔자 및 급성호흡기감염증 감시사업 연구참여 동의서]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에서는 법정 지정감염병인 급성호흡기감염증 환자로부터 호흡기검체를 채취한 후, 8종 호흡기바이러스*에 대한 유전자검사를 통해 병원체를 확인하고, 성별, 연령, 그리고 의료인이 기록한 임상적 특징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자 합니다. 수집된 검체와 자료는 국내 급성호흡기감염증의 원인을 규명하고 병원체의 유행양상을 파악할 뿐 아니라, 바이러스 특성분석 연구를 통하여 향후 관리정책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호흡기검체인 인후도찰물을 채취 할 때는 구역질 등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집된 자료는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게 될 것입니다. 추후 본 동의내용은 본인이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

제공한 검체가 추후 질병관리본부에서 호흡기바이러스에 대한 연구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예 () 아니오 ()

환자명 : (서명인)
 대리인 : (서명인) 환자와의 관계:
 상담자 : (서명인)

* 8종 호흡기바이러스: 인플루엔자바이러스, 아데노바이러스,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파라인플루엔자바이러스, 사람코로나바이러스, 사람리노바이러스, 사람보카바이러스, 사람메타뉴모바이러스

일련번호부착		생년월/성별	년 월 (남, 여)
검체 채취일	년 월 일	발병일	년 월 일
임상증상	<input type="checkbox"/> 발열(38℃이상) <input type="checkbox"/> 기침(2~3일 지속) <input type="checkbox"/> 인후통 <input type="checkbox"/> 두통 <input type="checkbox"/> 콧물 <input type="checkbox"/> 코막힘 <input type="checkbox"/> 쉼목소리 <input type="checkbox"/> 가래 <input type="checkbox"/> 청명음 <input type="checkbox"/> 구토 <input type="checkbox"/> 오한 <input type="checkbox"/> 근육통 <input type="checkbox"/> 식욕감퇴 <input type="checkbox"/> 기타 ()		
추정진단	<input type="checkbox"/> 인플루엔자(Influenza like illness, ILI) 38℃이상의 갑작스러운 발열과 더불어 기침 또는 인후통을 보이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인플루엔자(ILI) 아닌 급성호흡기 질환		
과거력 또는 기저질환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천식 <input type="checkbox"/> 만성폐질환 <input type="checkbox"/> 고혈압 <input type="checkbox"/> 당뇨 <input type="checkbox"/> 장기이식 <input type="checkbox"/> 암 <input type="checkbox"/> 결핵 <input type="checkbox"/> 기타 ()		
인플루엔자 관련 사항	인플루엔자 백신접종력 (당해년도 9월 이후)	<input type="checkbox"/> 접종 <input type="checkbox"/> 미접종	
	항바이러스제처방	<input type="checkbox"/> 처방(기간:) <input type="checkbox"/> 처방안함 <input type="checkbox"/> Tamiflu <input type="checkbox"/> Relenza <input type="checkbox"/> Amantadine <input type="checkbox"/> 기타 ()	

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첨서식 3 예방접종 예진표

예방접종 예진표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하여 아래의 질문사항을 잘 읽어보시고, 본인(법정대리인, 보호자) 확인란에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 명		주민등록번호	-	(□남 □여)
전화번호	(집)	(휴대전화)	체 중	kg
주 소				

예방접종 업무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 등에 대한 동의사항	본인(법정대리인, 보호자) 동의 <input checked="" type="checkbox"/>
예방접종 예진표 작성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예방접종을 하기 전에 피접종자의 예방접종 내역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어린이) 정기예방접종의 다음접종 및 완료 여부에 관한 정보를 휴대전화로 문자 수신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접종 대상자에 대한 확인 사항	본인(법정대리인, 보호자) 확인 <input checked="" type="checkbox"/>
오늘 아픈 곳이 있습니까? 아픈 증상을 적어주십시오. ()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약이나 음식물(계란 포함) 혹은 백신접종으로 두드러기 또는 발진 등의 알레르기 증상을 보인 적이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과거에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생긴 일이 있습니까? 있다면 예방접종명을 적어주십시오. (예방접종명:)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선천성 기형, 천식 및 폐질환, 심장질환, 신장질환, 간질환, 당뇨 및 내분비 질환, 혈액 질환으로 진찰 받거나 치료 받은 일이 있습니까? 있다면 병명을 적어주십시오. ()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경련을 한적이 있거나 기타 뇌신경계 질환(길랭-바레 증후군 포함)이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암, 백혈병 혹은 면역계 질환이 있습니까? 있다면 병명을 적어주십시오. (병명:)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최근 3개월 이내에 스테로이드제, 항암제, 방사선 치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최근 1년 동안 수혈을 받았거나 면역글로불린을 투여받은 적이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최근 1개월 이내에 예방접종을 한 일이 있습니까? 있다면 예방접종명을 적어 주십시오. (예방접종명:)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여성) 현재 임신 중이거나 또는 다음 한 달 동안 임신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의사의 진찰결과와 이상반응에 대한 설명을 듣고 예방접종을 하겠습니다.	
본인(법정대리인, 보호자) 성명 : (서명) 접종대상자와의 관계 :	
* 피접종자가 출생신고 이전의 신생아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	
_____년 _____월 _____일	

의사 예진 결과 (의사 기록란)	확인 <input checked="" type="checkbox"/>
체온 : °C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해 설명하였음 <input type="checkbox"/>
	'이상반응 관찰을 위해 접종 후 20~30분간 접종기관에 머물러야 함'을 설명하였음 <input type="checkbox"/>
문진결과 :	
이상의 문진 및 진찰 결과 예방접종이 가능합니다. 의사성명 : (서명)	



별첨서식 4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역학조사서

■ 역학조사반 운영 등에 관한 예규[별지 제43호 서식]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역학조사서

1. 조사경위											
1.1 조사반		00시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역학조사반 - 000역학조사관 - 자문위원 : 000, 000, 000, 000									
1.2 조사일시											
2. 조사내용											
2.1 예방접종 내역		예방접종종류		제품명		제조회사		제조번호		유효기간	
				○○○○		○○제약		○○○○		0000. 0. 0	
2.2 예방접종 예진 및 접종자		예방접종부위 : 예방접종방법 : 경구 <input type="checkbox"/> 피하 <input type="checkbox"/> 피내 <input type="checkbox"/> 근육 <input type="checkbox"/> 정주 <input type="checkbox"/> 예방접종용량 : 1 ml 1회용 주사기 사용 : 유 <input type="checkbox"/> 무 <input type="checkbox"/> 접종 후 관찰 : 유 <input type="checkbox"/> 무 <input type="checkbox"/> 접종 후 주의사항 교육 : 유 <input type="checkbox"/> 무 <input type="checkbox"/> 접종 후 과격한 운동 : 유 <input type="checkbox"/> 무 <input type="checkbox"/> 예방접종 후 목욕 : 유 <input type="checkbox"/> 무 <input type="checkbox"/>									
		·접종책임의사 : ○○ (의사면허번호 : ○○) ·접종자 : ○○ (간호사면허번호 : ○○)									
2.3 피해신청내용 (피해조사일 경우)		이름 총진료비		보호자신청보상금액(1)			피해조사금액(2)				
				진료비 A	간병비 B	계 A+B	본인부담금 C	정액간병비 D	제외부분 포함 이상반응외 진료비		상급병실 사용료
		○○○									
		※ 피해조사금액 = 본인부담금 + 정액간병비 - 제외부분 ※ 총진료비 : 환자부담총액 + 보험자부담금 (보호자신청보상금액(1) 이나 피해조사금액(2)과는 별도)									
2.4 피해발생경위											

<p>2.5 피해자의 과거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생력 : - 과거력 : - 가족력 : - 발육상태 : - 과거 예방접종 이상반응 : - 예방접종력 :
<p>2.6 주요 검사 소견</p>	
<p>2.7 관련자 면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진의 : - 접종자 : - 보호자 면담 : - 담당의사 :
<p>2.8 동일 제조번호 백신 접종자의 이상유무</p>	
<p>2.9 백신관리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백신보관 상태 : - 정전여부 : - 백신 구입량 : - 백신 사용량 : - 생물학적제제출하증명서 : 유 <input type="checkbox"/> 무 <input type="checkbox"/> - 냉장보관 : 유 <input type="checkbox"/> 무 <input type="checkbox"/> - 냉장고 온도 : (예방접종약품 보관냉장고 점검표) - 온도측정방법 : 외부측정장치 유 <input type="checkbox"/> 무 <input type="checkbox"/> 자동온도기록장치 : 유 <input type="checkbox"/> 무 <input type="checkbox"/> - 평상시 온도기록 : 유 <input type="checkbox"/> 무 <input type="checkbox"/> 자가발전기 : 유 <input type="checkbox"/> 무 <input type="checkbox"/>
<p>2.10 관련 문헌 검토 사항</p>	
<p>2.11 참고문헌</p>	
<p>2.12 시도 역학조사반 자문위원 회의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및 장소 : 0000년 0월 0일, 00회의실 - 참석자 : - 안건 : - 자문회의 결과 요약
<p>2.13 잠정결론</p>	



별첨서식 5 노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사전 자율점검표

**노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사 전자 율 점 검 표**
(보건소 제출용)

※ 의료기관 대표자께서 점검하시고 점검결과 란에 직접 기재하여 주십시오.

등 록 사 항				
기 관 명		요양기관번호		
요양기관종별		전 문 과 목 (표 시 과 목)		
주 소(소재지)				
대 표 자		전 화 번 호		
F A X 번 호		이 메 일 주 소		
예 방 접 종 업 무 담 당 인 력	총인원 : 명	<input type="checkbox"/> 의 사 : 명 <input type="checkbox"/> 간 호 사 : 명 <input type="checkbox"/> 행 정 요 원 : 명	<input type="checkbox"/> 간 호 조 무 사 : 명 <input type="checkbox"/> 전 산 요 원 : 명	
일반사항 및 접종관련 점검사항			점검결과	
			예	아니오
1. 일반사항				
1)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다.				
2) 예방접종 예진표를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				
3) 예방접종 안내문(VIS; Vaccine Information Statements)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				
2. 노인 인플루엔자 사업 이해도				
1) '16년 사업대상자가 만65세 이상 인구(195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라는 것을 알고 있다.				
2) 백신은 중앙에서 일괄 조달하며 보건소에서 분배를 조정, 조달계약 도매상을 통해 납품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3. 접종 전				
1) 건강보험증, 주민등록증 등으로 접종 대상자 본인 확인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2) 피접종자(또는 보호자)에게 예진표를 작성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3) 피접종자(또는 보호자)가 작성한 예진표를 확인하면서 접종대상자를 예진하고 진찰소견 등을 기록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4) 예방접종 실시 전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반드시 피접종자의 과거접종력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5) 피접종자(또는 보호자)에게 예방접종 전후의 주의사항 및 발생할 수 있는 이상응에 대하여 설명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6) 피접종자(또는 보호자)에게 피접종자에게 '예방접종 안내문(VIS; Vaccine Information Statements)'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4. 접종실시		
1) 준비된 백신의 유효기간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2) 백신을 접종하기 전 손을 비누로 씻거나 소독제로 소독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3) 정확한 접종부위, 접종용량, 접종방법에 따라 접종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4) 주사 후 마른 솜이나 거즈로 접종부위를 가볍게 수 초간 눌러준다는 것을 알고 있다.		
5. 접종 후		
1) 피접종자(또는 보호자)에게 접종 후 20~30분 정도 접종의료기관에 머물도록 하여 이상반응을 관찰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2) 피접종자(또는 보호자)에게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제도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6. 기록보존		
1) 예진표를 정해진 기간(5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2) 예방접종 시 접종대상자의 인적사항과 접종내역을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7. 비용상환		
1) 전산등록이 지연되어 중복접종이 발생한 경우 먼저 전산등록한 의료기관에 비용상환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백신관련 점검사항	점검결과	
	예	아니오
8. 백신관리		
1) 백신관리 전담자 및 대체요원을 지정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2) 백신 입고 시 생물학적제제 출하증명서를 수령하고 관련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3) 성애가 끼지 않는 전용 냉장고에 백신만 보관(음식물과 함께 보관하면 안됨)하며, 「백신전용 냉장고」 및 「백신의 보관관리」 표시를 냉장고 외부의 눈에 띄기 쉬운 곳에 부착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4) 냉동고의 문이 따로 있는 냉장고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5) 백신은 동결되지 않도록 보관온도를 2~8℃로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6) 냉장고 내부에 온도계를 부착하여 1일 2회 이상 온도를 점검, 기록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7) 주기적으로 백신 유효기간을 확인하며, 유효기간이 가까운 백신을 냉장고 앞쪽에 위치하도록 하고 백신의 유효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8)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은 관리방침에 따라 폐기처리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p>상기 자율점검 내용은 사실과 틀림없습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 . . .</p> <p style="text-align: right;">위 점검자(대표자) (서명)</p>		



별첨서식 6 노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사전 방문점검표

노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사 전 방 문 점 검 표

등록 사항					
기 관 명		기 관 전 화 번 호			
요 양 기 관 번 호		사 업 참 여 일			
전 문 과 목 (원 장)		전 문 과 목 (기 관 표 시)			
점검사항	점검결과				비고
	매우 잘함	잘함	미비함	매우 미비함	
1. 일반사항					
1)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다.					
2) 「예방접종업무 위탁 의료기관 지정서」를 방문자가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고 있다.					
3) 예방접종 예진표를 충분히 비치하고 있다					
4) 예방접종 안내문(VIS:Vaccine Information Statements)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					
2. 노인 인플루엔자 사업 이해도					
1) '16년 사업대상자가 만 65세 이상 인구 (195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라는 것을 알고 있다.					
2) 백신은 중앙에서 일괄 조달하며 보건소에서 분배를 조정, 조달계약 도매상을 통해 납품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3. 예방접종실시 관련					
1) 건강보험증, 주민등록증 등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2) 피접종자(또는 보호자)에게 예진표를 작성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3) 예방접종 실시 전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과거 접종력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4) 예방접종 전후의 주의사항 및 이상반응에 대하여 설명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5) 예방접종 실시기준 및 방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6) 피접종자(또는 보호자)를 접종 후 20~30분간 접종의료 기관에 머무르게 하여 이상반응을 관찰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7) 피접종자(또는 보호자)에게 '예방접종 안내문 (VIS: Vaccine Information Statements)'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8) 피접종자(또는 보호자)에게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제도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4. 기록보존					
1) 예진표를 정해진 기간(5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2) 예방접종의 기록을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5. 비용상환					
1) 전산등록이 지연되어 중복접종이 발생한 경우 먼저 전산등록 한 의료기관에 비용상환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백신관련 점검사항	점검결과				비고
	매우 잘함	잘함	미비함	매우 미비함	
1) 백신관리 전담자 및 대체요원이 지정 되어있다.					
2) 백신 입고 시 생물학적제제 출하증명서를 수령 하고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					
3) 백신전용 냉장고는 냉동고의 문이 따로 있는 냉장고를 사용하고 있다.					
4) 성애가 끼지 않는 전용 냉장고에 백신만 보관하고 있다 (음식물 보관여부 확인).					
5) 「백신전용 냉장고», 「백신의 보관관리」 표시를 냉장고 외부의 눈에 띄기 쉬운 곳에 부착하고 있다.					
6) 백신 전용 냉장고는 백신보관 온도 2~8℃를 유지하고 있다.					
7) 냉장고 내부 안쪽에 온도계가 부착되어 있다.					
8) 1일 2회 이상 백신전용 냉장고의 온도를 점검하고 기록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9) 유효기간이 가까운 백신을 냉장고 앞쪽에 배치하고 있다.					
10)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이 보관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11)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은 관리방침에 따라 폐기 처리한다 (폐기 대장 등).					
종합 의견					
점검일 20 . . . 점검자 (서명)					



별첨서식 7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

(앞쪽)

제1조	계약목적	을은 갑으로부터 위탁받은 예방접종업무에 대하여 정기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실시한다.
-----	------	---

제2조	“을”	의 료 기 관 명	요 양 기 관 호
		요 양 기 관 종 별	표 시 과 목
		주 소 (소 재 지)	
		전 화	전 자 우 편 소
		대 표 자	생 년 월 일
		면 허 종 별	면 허 번 호
		의 료 정 보 시 스템	<input type="checkbox"/> 사 용 ※ 사용 시 업체명 : _____ <input type="checkbox"/> 미사용

제3조	위탁계약 조건	별지 뒷면 참조
-----	---------	----------

제4조	위탁계약 범위	<input type="checkbox"/> 만 12세 이하 아동 대상 예방접종업무 <input type="checkbox"/> 만 65세 이상 노인 대상 예방접종업무
-----	---------	---

제5조	신의성실 및 위탁계약의 해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갑과 을은 본 계약서에 의거 위탁 예방접종업무의 효율적인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여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갑은 ①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의 사유가 있는 경우 ②을이 제2조의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③과실로 인해 예방접종업무가 이행될 수 없을 경우 사전통지 없이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	---

제6조	계약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 위탁계약서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간 유효한 것으로 한다. 단,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3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필요시에는 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	------	---

갑과 을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제2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정기 및 임시 예방접종업무를 위탁수행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본 위탁계약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는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기관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을> 의료기관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첨부서류	접종비용 상환용 통장사본 1부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보존용지 70g/m²]

(뒤쪽)

< 위탁 계약조건 >

을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고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 ② 시장·군수·구청장의 예방접종업무 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 ③ 위탁 의료기관의 의료인(의사)은 사업 실시 이전에 예방접종업무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 ④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과거 예방접종력을 조회하고 접종기록을 등록하며 비용상환을 신청한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예방접종 기록의 보존 및 보고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의 작성 및 보고)에 따라 예방접종기록을 등록한다.
- ⑤ 예방접종기록 등록 및 비용상환 신청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지침’을 준수한다.
- ⑥ 개인의 과거접종력 조회와 정보 활용 시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진료 이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별첨서식 8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지정서

특별자치시·도 또는 시·군·구-00(전자 또는 서면)-00-000호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지정서

- 1. 의료기관명 :
- 2. 대 표 자 :
- 3. 소 재 지 :
- 4. 예방접종업무 위탁범위:

귀 기관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및 제2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한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210mm×297mm[보존용지 120g/m²]

별첨서식 9 ▶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계약 해지 신청서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계약 해지 신청서				
의료기관	기 관 명		요양기관번호	
	요양기관종별		표 시 과 목	
	대 표 자		연 락 처	
	해지사유 및 요청사항			
<p style="text-align: center;">본 의료기관은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지정 해지를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 년 월 일</p> <p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해지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p>				



별첨서식 10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계약 관리대장

No	계약 방식	의료 기관명	요양 기관 번호	요양 기관 종별	표시 과목	위탁 계약 범위	위탁 계약일	재계약일 (갱신일)	참여 백신 종류 등록일	통장 사본 등록일	대표 자	면허 번호	전화 번호	지정서 발급 여부	지정서 발급 번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별첨서식 11 >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기본교육 수료증

제 1610300001 호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교육 수료증

소 속 :

직 군 : (면허번호:)

성 명 :

소재지 :

귀하는 질병관리본부 온라인 교육시스템에서 기본교육 (「노인플루 예방접종사업 위탁의료기관 교육(2016)」)과정을 수료하였음을 증명합니다.

질병관리본부장 직인생략



별첨서식 12 >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보수교육 수료증

제 1610400001 호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교육 수료증

소 속 :

직 군 : (면허번호:)

성 명 :

소 재 지 :

귀하는 질병관리본부 온라인 교육시스템에서 보수교육 (「노인플루 예방접종사업 위탁의료기관 교육(2016)」)과정을 수료하였음을 증명합니다.

질병관리본부장 직인생략

부 록

1. '16~'17절기 인플루엔자 우선접종 권장 대상 추계
2. '16~'17절기 조류인플루엔자 대응기관 접종인원 추계
3. 절기별 WHO의 권장 백신주
4. '16~'17절기 국내 유통예정인 인플루엔자 백신 종류
5. '15~'16절기 노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주별 접종 실적
6. 최근 3년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 및 피해보상 신청현황
7. 아나필락시스 대응 매뉴얼
8. (의료기관)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사용권한 신청 매뉴얼
9. (의료기관)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예방접종업무권한 신청 매뉴얼
10. (의료기관) 노인 인플루엔자 시스템 매뉴얼
11. (보건소) 노인 인플루엔자 시스템 매뉴얼
12. 계절 인플루엔자 관련 FAQ
13. 노인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련 FAQ

부 록 1 '16~'17절기 인플루엔자 우선접종 권장 대상 추계

구 분		대상인구(명)	수요추계(명) ¹⁾	비고
총 계		25,100,583	16,087,560	
소 계		25,036,175	16,023,152	
생후 6~59개월 영유아		1,835,462	1,174,696	
50~64세 성인		10,507,234	6,724,630	
65세 이상 노인		6,412,464	4,103,977	
6개월 미만 영아를 돌보는 자		458,808	293,637	
의 료 인		534,857	342,308	예방접종의 실시 기준 및 방법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16-80호)
임 신 부		455,129	291,283	
만 성 질 환 자	소 계	4,832,221	3,092,621	
	폐질환자	1,055,676	675,632	
	심장질환자	97,758	62,565	
	간질환자	716,895	458,813	
	신장질환자	586,551	375,392	
	혈액-종양질환자	20,984	13,430	
	기타암 당뇨	643,584 1,710,773	411,894 1,094,895	
소 계		64,408	64,408	조류인플루엔자 대응 정책
조류인플루엔자 대응기관 종사자		34,300	34,300	
닭·오리·돼지 농장 및 관련 업체 종사자		30,108	30,108	

* 대상인구 자료원 : 통계청, 2015년 보건복지통계연보, 2014년 국민건강통계, 국민건강영양조사 등
1) 수요추계 : 2006년 학술연구용역 보고서(고려대 산학협력단) 결과에 따라 우선접종 권장대상자의 접종률(64%) 적용

※ 인플루엔자 우선접종 권장대상 인구 자료원

구 분	자료원	
생후 6~ 59개월 영유아	2015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자료	
50~64세 성인		
65세 이상 노인		
6개월 미만 영아를 돌보는 자		
임 신 부		
의 료 인	2015년 보건복지통계연보(병의원 종사자)	
만성질환자	혈액-종양질환자	2014년 국민건강통계, 2012년 국민건강영양조사 - 5년 유병자 수, 통계청 (만성질환자 중 50세 이상 인구 제외)
	기타암	
조류인플루엔자 대응기관 종사자	'15~'16절기 조류인플루엔자 대응기관 인플루엔자 접종 계획	
닭·오리·돼지 농장 및 관련업체 종사자	통계청 축종업 가구 수 및 가구당 인원 추계	

* 추계인구 산출이 어려운 아스피린 복용 중인 6개월~18세 소아, 만성질환자·임신부·65세 이상 노인과 함께 거주하는 자, 만성질환자 중 근육-신경질환자, 면역저하자 제외



부 록 2 '16~'17절기 조류인플루엔자 대응기관 집중인원 추계

대상 기관	집중 대상 선정 기준	추정인원(명)
계	-	34,300
질병관리본부	중양 AI 인체감염 대책반 대응부서	180
농림축산검역본부	질병관리과, 역학조사과 및 실험실	880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현장방역부서	750
시·도	다발생 지역 시·도, 시·군·구 직원 (보건, 가축위생 포함)	29,930
시·군·구		
보건환경연구원		
축산위생연구소		
국립환경과학원	현장조사부서	50
검역소	전부서	360
관세청(세관)	대민업무부서	1,450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대민업무부서	700

부 록 3 절기별 WHO의 권장 백신주

절기	권장 백신주
2016-2017년 [#]	A/California/7/2009(H1N1)pdm09-like virus A/Hong Kong/4801/2014(H3N2)-like virus B/Brisbane/60/2008-like virus
2015-2016년	A/California/7/2009(H1N1)pdm09-like virus A/Switzerland/9715293/2013(H3N2)-like virus B/Phuket/3073/2013-like virus ¹⁰⁾
2014-2015년	A/California/7/2009(H1N1)pdm09-like virus A/Texas/50/2012(H3N2)-like virus ⁹⁾ B/Massachusetts/2/2012-like virus
2013-2014년	A/California/7/2009(H1N1)pdm09-like virus A/Victoria/361/2011(H3N2)-like virus B/Massachusetts/2/2012-like virus ⁸⁾
2012-2013년	A/California/7/2009(H1N1)pdm09-like virus A/Victoria/361/2011(H3N2)-like virus B/Wisconsin/1/2010-like virus
2011-2012년	A/California/7/2009(H1N1)-like virus A/Perth/16/2009(H3N2)-like virus ⁷⁾ B/Brisbane/60/2008-like virus
2010-2011년	A/California/7/2009(H1N1)-like virus A/Perth/16/2009(H3N2)-like virus ⁷⁾ B/Brisbane/60/2008-like virus
2009-2010년	A/Brisbane/59/2007(H1N1)-like virus A/Brisbane/10/2007(H3N2)-like virus B/Brisbane/60/2008-like virus
2008-2009년	A/Brisbane/59/2007(H1N1)-like virus A/Brisbane/10/2007(H3N2)-like virus ⁶⁾ B/Florida/4/2006-like virus ⁵⁾
2007-2008년	A/Solomon Islands/3/2006 (H1N1)-like virus A/Wisconsin/67/2005 (H3N2)-like virus ⁴⁾ B/Malaysia/2506/2004-like virus
2006-2007년	A/New Caledonia/20/99 (H1N1)-like virus A/Wisconsin/67/2005 (H3N2)-like virus B/Malaysia/2506/2004-like virus
2005-2006년	A/New Caledonia/20/99(H1N1)-like virus A/California/411/2002(H3N2)-like virus ³⁾ B/Shanghai/361/2002-like virus ²⁾
2004-2005년	A/New Caledonia/20/99(H1N1)-like virus A/Fujian/411/2002(H3N2)-like virus ¹⁾ B/Shanghai/361/2002-like virus ³⁾

'16~17절기 권장주3/2013-like virus 2015년 남반구 백신주는 '15~16절기 권장주에서 A형(H3N2) 및 B형 변경
 최근 분리된 주요 바이러스 중 A(H3N2)형의 대부분은 A/Hong Kong/4801/2014과 항원성이 유사하고, B형 바이러스는 B/Brisbane/60/2008-like 바이러스(B/Victoria/2/87 lineage)와 항원성이 유사하여 이번 절기 권장백신주로 지정되었음

- 1) A/Wyoming/3/2003, A/Kumamoto/102/2002와 항원성이 동일
- 2) B/Jilin/20/2003, B/Jiangsu/10/2003와 항원성이 동일
- 3) A/New York/55/2004와 항원성이 동일
- 4) A/Hiroshima/52/2005와 항원성이 동일
- 5) B/Florida/4/2006 and B/Brisbane/3/2007(a B/Florida/4/2006-like virus) 2007년 남반구 백신주
- 6) A/Brisbane/10/2007 2007년 남반구 백신주
- 7) A/Wisconsin/15/2009 2010년 남반구 백신주
- 8) B/Massachusetts/2/2012-like virus 남반구 백신주
- 9) A/Texas/50/2012 2012년 북반구 백신주
- 10) B/Phuket/307



부 록 4 '16~'17절기 국내 유통예정인 인플루엔자 백신 종류

제조사명	제품명	제조방법	원료		ml/PFS		비고
			제조사	생산국	0.25	0.5	
동아제약(주)	백시플루주사액프리필드시린지	원액수입	사노피 파스퇴르	프랑스		○	
SK케미칼(주)	스카이셀플루프리필드시린지	국내제조	SK케미칼	한국	○	○	
	스카이셀플루4가프리필드시린지	국내제조	SK케미칼	한국		○	4가
한국노바티스(주)	아그리팔S1프리필드시린지	완제수입	시큐러스	이태리		○	
	소아용아그리팔프리필드시린지	완제수입	시큐러스	이태리	○		
	플루아드	완제수입	시큐러스	이태리		○	
(주)녹십자	지씨플루프리필드시린지주	국내제조	녹십자	한국	○	○	
	지씨플루쿼드리밸런트 프리필드시린지주	국내제조	녹십자	한국		○	4가
(주)보령 바이오파마	보령플루백신V주	국내제조	녹십자	한국		○	
	보령플루백신VIII주-TF주	원액수입	사노피 파스퇴르	프랑스	○	○	
(주)LG생명과학	플루플러스티에프주	국내제조	녹십자	한국		○	
(주)한국백신	코박스플루PF주	국내제조	녹십자	한국		○	
	코박스인플루PF주	국내제조	일양약품	한국		○	
	플루HA코박스PF주	원액수입	비켄	일본		○	
	인플루엔자에취에이백신코박스	원액수입	비켄	일본			1.0ml/vial
사노피파스퇴르 (주)	박씨그리프주	완제수입	사노피 파스퇴르	프랑스	○	○	
글락소스미스 클라인(주)	플루아릭스테트라프리필드시린지	완제수입	GSK	독일		○	4가
일양약품(주)	일양플루백신프리필드시린지주	국내제조	일양약품	한국		○	
	테라텍트프리필드시린지	국내제조	일양약품	한국		○	4가 (16년허기예정)

부 록 5 15~16절기 노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주별 접종 실적(16.1.31. 기준)

날짜	예방접종실적				백신수급	
	주간 접종자(명)	누적접종실적				
		누적 접종자(명)	목표대비 접종률(%)	인구수대비 접종률(%)	공급총량 (도즈)	잔량 (도즈)
10월 1주	1,678,373	1,678,373	31.1	24.9	3,949,550	2,271,177
10월 2주	2,033,398	3,711,771	68.9	55.1	4,665,558	953,787
10월 3주	969,266	4,681,037	86.9	69.5	5,112,813	431,776
10월 4주	393,480	5,074,517	94.2	75.3	5,330,121	255,604
10월 5주	174,260	5,248,777	97.4	77.9	5,391,311	142,534
11월 1주	93,327	5,342,104	99.1	79.3	5,449,314	107,210
11월 2주	52,085	5,394,189	100.1	80.1	5,473,051	78,862
11월 3주	15,421	5,409,610	100.4	80.3	5,481,718	72,108
11월 4주	9,074	5,418,684	100.6	80.4	5,481,718	63,034
12월 1주	7,899	5,426,583	100.7	80.6	5,481,718	55,135
12월 2주	5,010	5,431,593	100.8	80.6	5,505,957	74,364
12월 3주	4,598	5,436,191	100.9	80.7	5,580,713	144,522
12월 4주	3,656	5,439,847	100.9	80.8	5,580,713	140,866
12월 5주	2,759	5,442,606	101.0	80.8	5,580,713	138,107
1월 1주	2,345	5,444,951	101.0	80.8	5,580,713	135,762
1월 2주	3,344	5,448,295	101.1	80.9	5,580,713	132,418
1월 3주	2,728	5,451,023	101.2	80.9	5,580,713	129,690
1월 4주	4,689	5,452,984	101.2	81.0	5,580,713	127,729

* 사업목표인구: 행정자치부 기준 2015년도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6,736,072명)의 80%(5,388,858명)



부 록 6 > 최근 3년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 및 피해보상 신청 현황

연도	이상반응 신고(건)		피해보상 신청(건)	
	전체	인플루엔자 백신	전체	인플루엔자 백신
2013	345	38	81	12
2014	289	44	121	19
2015	271	55	99	17

부 록 7 > 아나필락시스 대응 매뉴얼

예방접종 후 아나필락시스 대응 매뉴얼

I. 아나필락시스 정의

1. 개요

- 아나필락시스는 원인 알레르겐에 노출된 후 급성으로 발생하는 심한 전신적 알레르기 반응을 말하며 여러 가지 신체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 피부 증상으로는 발진, 가려움증, 입술과 입안 부종, 호흡기계 증상은 호흡곤란, 가슴 답답함, 심혈관계 증상은 저혈압, 실신, 가슴통증, 빠른 맥박, 그리고 소화기계 증상으로 복통, 구토, 설사, 메스꺼움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특히 호흡곤란, 저혈압, 아나필락시스성 쇼크 등으로 인해 사망까지 이를 수 있다[그림 1].
- 아나필락시스는 우선 원인 물질 또는 특정 자극에 노출된 후 즉시 또는 수십 분내에 1) 피부 반응과 호흡기 또는 심혈관계 반응이 나타난 경우, 2) 피부, 호흡기, 심혈관계, 소화기계 증상 중 2개 기관 이상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 진단이 가능하다[1].
- 예방접종 후 아나필락시스 발생에 대한 자료는 제한적이나 일부 연구에서는 예방접종 100만건 당 0.65건의 아나필락시스가 발생한다고 보고하였다[2]. 예방접종 후 드물게 발생하지만 예방접종 후 수 분내 발생하고, 급격히 진행되는 응급상황이기 때문에 신속하고 체계적인 초기대응이 중요시 된다. 특히, 예방접종은 주로 1차 의료기관, 보건소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체계적인 대응을 위한 사전 준비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알레르기 원인물질 또는 특정 자극에 노출된 후 즉시 또는 수십 분 내에 아래의 증상들이 나타나면
아나필락시스를 의심해야 합니다.

>> 호흡기



삼키거나 말하기 힘들
호흡곤란
숨소리

>> 심장혈관계



실신
요실금
혈압저하

>> 피부



입속, 귀속이 따끔거림
입술, 구강 부종
가려움
홍반
두드러기

>> 소화기



구역
설사
복통
구토

>> 전신 및 신경



죽을 것 같은 느낌
의식소실
금속 맛
부종
불안감

[그림 1] 아나필락시스 주요 증상

II. 아나필락시스 대응법

1. 신속대응

- 예방접종 후 아나필락시스 발생 초기 대응은 상황평가, 도움요청, 응급처치, 응급의료기관 후송으로 구성되어 있다[그림 2].

1) 상황 평가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증후를 조기에 인지하고 아나필락시스 가능성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예방접종 담당의료인은 예방접종 후 20~30분간 대기하는 시간 중에 백신 접종부위에 부종, 발적 등이 발생하면 전신 과민반응으로 진행되는지 여부를 관찰 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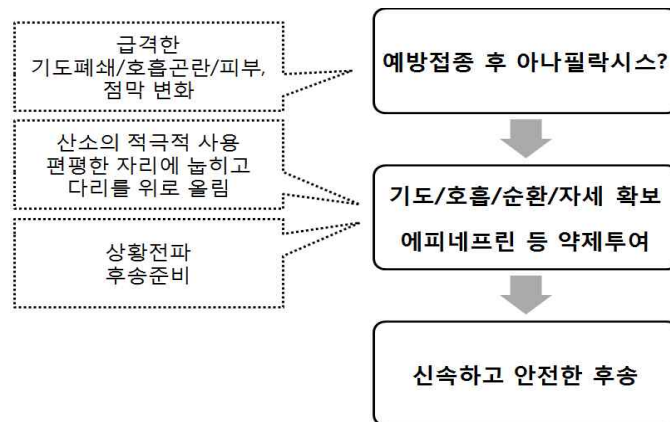
2) 도움요청 : 전신 과민반응이 발생하면 우선 관련 상황을 의료기관내 신속히 전파하여 도움을 요청하고 담당의사를 호출한다.

3) 응급처치 : 담당의사는 환자를 평평한 곳에 눕히고, 의식과 맥박, 호흡을 확인한 뒤 간호사의 보조를 받으면서 기도확보, 산소공급, 에피네프린, 항히스타민 투여 등 필요한 응급조치를 시행한다.

※ 에피네프린은 아나필락시스 응급처치에 필요한 1차 약제이고 호흡곤란을 완화시켜주며, 적절한 심박출량을 유지시킴

※ 에피네프린 투여 후에도 증상 및 혈압 조절이 안되는 경우 10~20분 간격으로 3회까지 투여가 가능하며, 항히스타민은 발진 등의 증상을 완화시켜주어 2차 약제로 사용 가능

4) 응급의료기관 후송 : 응급처치는 구급차가 도착할 때 까지 담당의사 주도하에 진행하고 구급차가 도착하면 가장 가까운 응급의료센터에 후송한다.



[그림 2] 아나필락시스 대응 흐름도



2. 사전 준비 사항

- 장비 구비 및 후송체계 마련, 응급상황 발생 시 담당자별 역할 마련이 필요하다.
 - 1) 응급처치 장비: 가) 산소공급을 위한 산소탱크, 산소마스크, 앰부백, 에어웨이
나) 약제로는 에피네프린과 항히스타민 다) 산소공급 장비는 소아용 / 성인용으로 구분하여 준비하고, 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담당자를 지정하여 관리되어야 한다[표 1].
 - ※ 약물은 환자의 연령, 체중에 맞는 용량이 투여 될 수 있도록 관련 자료 비치[참고]
 - 2) 후송체계 마련 : 접촉기관과 가까운 응급의료센터를 2개 이상 지정하고 전화번호, 위치, 후송거리 등을 파악해 두어야 한다.
 - 3) 담당자별 역할 마련 : 기본적으로 의사, 간호사, 보조원으로 구성될 수 있으며, 의사는 환자 상태 평가 및 응급처치 지휘, 간호사는 응급처치 보조, 보조원은 응급 상황 및 후송 준비 상황 전파 역할을 담당할 필요가 있다[표 2].

[표 1] 응급처치 장비 구비 및 점검 사항

장비	점검 사항
포터블 산소탱크	• 산소 충전 상태
산소 마스크	• 소아용 / 성인용 구비
앰부백	
에어웨이	
에피네프린	• 약제 유효기간(백신과 별도 보관)
항히스타민	• 소아용 / 성인용 접종 용량 준비

[표 2] 담당자별 역할

연령	역할
예진 의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자 상태 평가 • 기도, 호흡 확보·유지, 순환기 및 의식상태 파악 • 약제 투여 필요성 판단 및 지시 • 심폐소생술 시행 필요성 판단 및 시행 • 응급의료센터(응급실) 후송 시 동행
간호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황 전파 및 도움 요청 • 심폐소생술 시행 필요성 판단 및 시행 • 응급간호관리 • 약제 준비 및 투여 • 후송 시 동행(필요시)
보조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기관 내 상황 전파 • 응급의료센터(응급실) 상황 알림, 후송 보조 • 119신고 및 구급차 호출
보건소 구급차 운전기사	• 환자 후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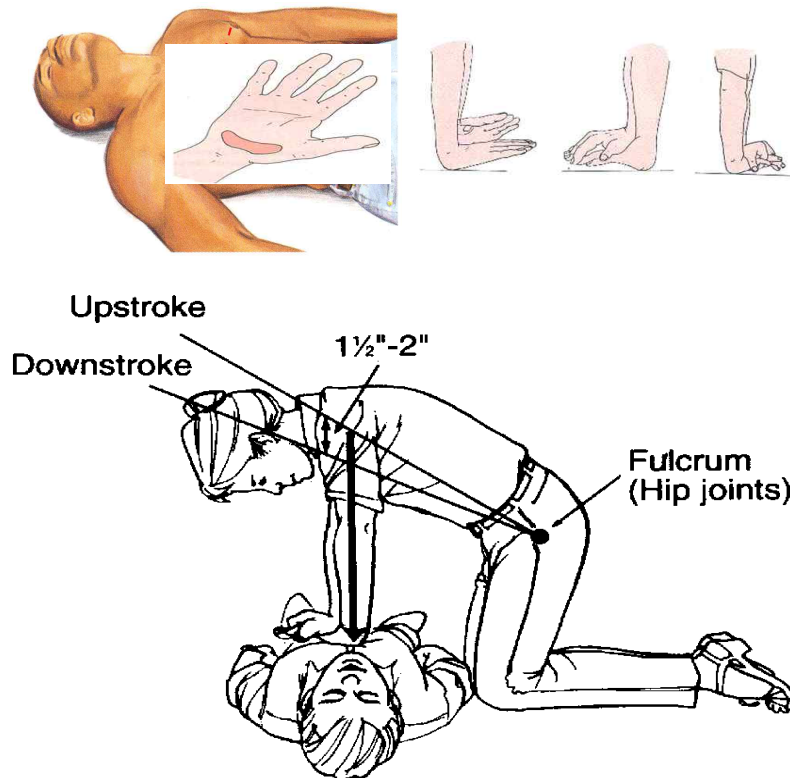
3. 심폐소생술(필요시)

- 환자가 갑자기 심정지를 일으킨 경우 심폐소생술을 실시한다.

※ 의료인의 경우 맥박 확인(10초 이내) : 성인 및 소아는 경동맥 또는 대퇴동맥으로 확인하고 영아(12개월 미만)의 경우 목이 짧고 굵으므로 위팔 동맥에서 확인

- 성인 심폐소생술 순서(C-A-B)

- 1) 흉부압박(Compressions) : 손을 흉부압박 위치(양쪽 젖꼭지 연결선과 가운데 흉골이 만나는 지점)에 놓고, 30회 흉부압박을 시행(분당 100회 속도, 4-5cm 깊이)[그림 3]
- 2) 기도열기(Airway) : “머리기울임(head tilt)-턱들어 올리기(chin lift)”
- 3) 2회 인공호흡(Breathing)
- 4) 구급차가 올 때까지 계속하여 반복



[그림 3] 흉부압박법



● 소아 및 영아/신생아 심폐소생술 순서(C-A-B)

1) 흉부압박(Compressions): 손을 흉부압박 위치(양쪽 젖꼭지를 연결하는 가운데 흉골이 만나는 지점)의 아래를 압박 위치에 놓고, 30회 흉부압박 시행(분당 100회 속도, 4cm 깊이)

I) 소아 : 한 손을 사용하여 손바닥 끝부분으로 압박[그림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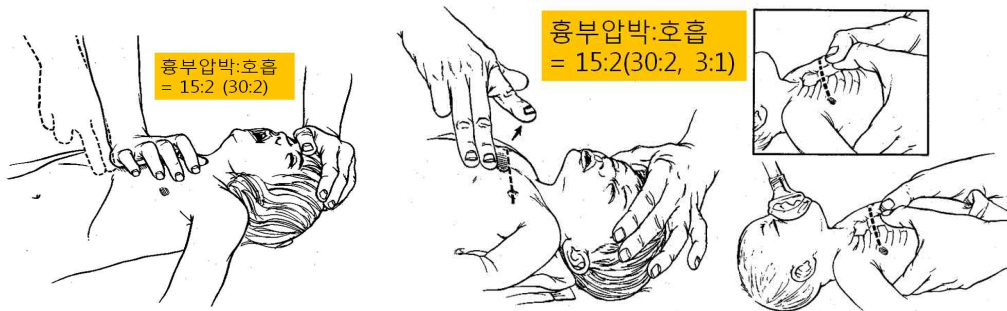
II) 영아/신생아 : 한 손을 사용하여 두 손가락으로 압박 또는 두 손을 사용하여 엄지손가락으로 압박 [그림 5]

2) 기도열기(Airway) : “머리기울임(head tilt)-턱들어 올리기(chin lift)”

* 영아/신생아의 경우 기도를 수평으로 유지

3) 2회 인공호흡(Breathing)

4) 구급차가 올 때까지 계속하여 반복



[그림 4] 소아 심폐소생술 위치 및 방법 [그림 5] 영아/신생아 심폐소생술 위치 및 방법

● 흉부 압박 방법

연령	압박/호흡 비율	
	1인 구조자	2인 구조자
신생아	3:1	3:1
영아(<1세)	30:2	15:2
소아	30:2	15:2
성인	30:2	30:2

<참고문헌>

1. World Allergy, Organization. World Allergy Organization survey on global availability of essentials for the assessment and management of anaphylaxis by allergy-immunology specialists in health care settings. *Annals of allergy, asthma & immunology* 2010 May;104(5):405-12.
2. Bohlke K, Davis RL, Marcy Sm et al. Risk of anaphylaxis after vaccination of children and adolescents. *Pediatrics*. 2003 Oct;112(4):815-20.



참고 1

아나필락시스 치료제 (체중연령별 용량)

연령대	체중(kg)	에피네프린 근주용량	항히스타민 (디펜히드라민 근주용량 12.5 mg/mL)
1-6개월	4-7kg	0.05mg(0.05mL)	5mg
7-18개월	7-11kg	0.1mg(0.1mL)	10mg
19-36개월	11-14kg	0.15mg(0.15mL)	15mg
37-48개월	14-17kg		20mg
49-59개월	17-19kg		30mg
5-7세	19-23kg	0.2mg(0.2mL)	
8-10세	23-35kg	0.3mg(0.3mL)	40mg
11-12세	35-45kg	0.4mg(0.4mL)	
13세 이상, 성인	45kg 이상	0.5mg(0.5mL)	50-100mg

부 록 8 (의료기관)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사용권한 신청 매뉴얼

1.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접속 및 로그인

①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is.cdc.go.kr>) 사용을 위해 사이트 접속 후 ‘사용자가입’ 및 ‘인증서 등록’이 필요합니다.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사용자가입 문의: ☎1644-1407(정보화 T/F)

※ 사용자가입이 완료되면 로그인 후 관할 보건소로 예방접종관리 업무에 대한 사용자권한을 신청해야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림 1.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접속>

② ‘사용자가입’을 클릭 후 팝업 창에서 가입양식 작성 및 개인정보수집에 대한 동의 후 ‘저장’을 클릭하여 가입을 완료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 시 '저장' 버튼 활성화

※ 이름은 반드시 실명으로 입력해야 함

사용자 가입

*이름 *이름은 한글로 최대 4자리 이내에서 입력해야 합니다.

*아이디 중복검사

*비밀번호 *비밀번호는 영문, 숫자, 특수문자를 각 한문자 이상 포함하며 9자리 이상으로 입력 하세요.

*비밀번호 확인

*기관명 (기관, 병의원, 약국 등) : 기관유형선택 :: ...

*휴대폰번호 등록하기(클릭)

*본인확인 *휴대폰 미소지자는 HELPDESK로 문의해 주십시오.

기관(부서) 전화번호 *지역번호를 포함하여 숫자만 입력하세요.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동의 안내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사용자 중복 가입 방지, 불법적 사용자에 대한 모니터링, 업무 활용
 2. 스택하려는 항목 : 휴대전화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면 회원가입 가능)

닫기

<그림 2.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사용자 가입>

③ 의료기관이 검색되지 않는 경우 '기관등록절차안내'에 따라 팩스 송부 후 의료기관이 등록되면 사용자가임을 완료합니다.

※ FAX 043-719-7069, ☎ 1644-1407

※ 팩스 송부 후 유선으로 팩스 수신여부 확인

기관등록절차안내

사업자등록증에 전화번호, 요양기관코드를 추가 기재 후 팩스로 송부

01 사업자등록증 사본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 기재

사업자등록증

- 전화번호 :
 - 요양기관코드 :
 * 요양기관일 경우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부여한 요양기관코드를 기재

02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팩스로 통합정보시스템 기관등록 담당자에게 송부 (FAX : 043-719-7069)

03 통합정보시스템 기관등록 담당자는 팩스로 송부된 사업자등록증의 내용을 확인한 후 기관 등록 처리

※ 기관 등록 관련 문의 : HELPDESK

검열명감시 웹통계 | 기관등록절차안내 ? | PC보안 SW 설치 | 공인인증서 SW 설치

질병보건 통합관리 시스템

인증서로그인 | 인증서등록·재등록 | 사용자가입 | 아이디찾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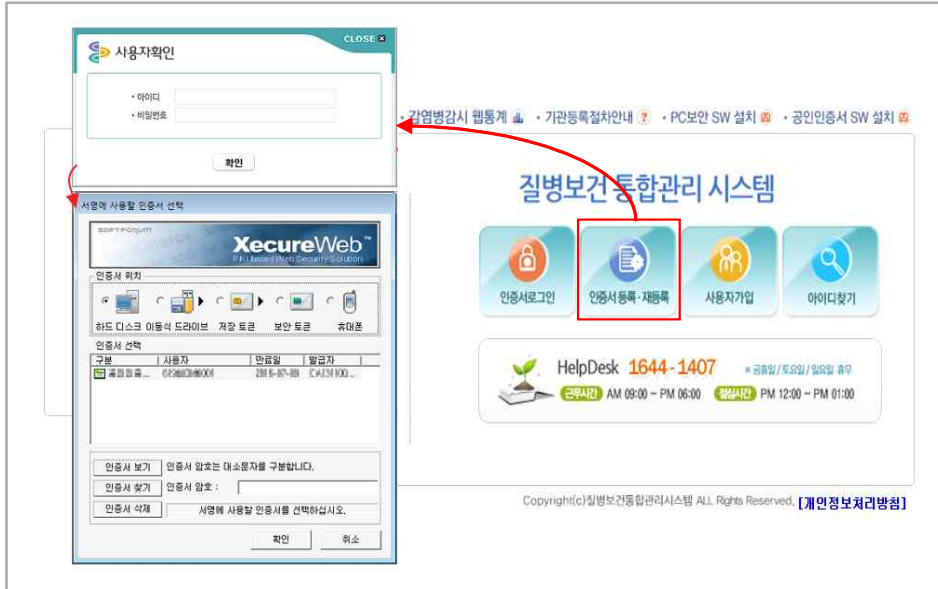
HelpDesk 1644-1407 * 공휴일/토요일/일요일 휴무
 근무시간 AM 09:00 ~ PM 06:00 점심시간 PM 12:00 ~ PM 01:00

Copyright(c)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처리방침]

<그림 3. 기관등록절차 안내>

④ 사용자 가입 후 인증서를 등록합니다.

※ 2015년 2월 25 일부터 인증서 로그인만 가능하며, 반드시 개인인증서를 등록



<그림 4.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인증서등록>

⑤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그림 5.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로그인>



부 록 9 (의료기관)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예방접종 업무 권한신청 매뉴얼

1. IR 의료기관 사용자 권한 신청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예방접종관리업무 사용자 권한' 신청 절차

메뉴보기 → 권한/부가정보관리 → 예방접종업무 권한 상태 조회 → 승인기관(관할 보건소) 선택 → [예방접종관리 User 권한] 신청 → 권한승인 후 로그인 → '예방접종관리' 메뉴 클릭 → 의료기관 부가정보 입력 →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사용 가능
 ※ 의료기관 부가정보 입력 완료 후 관할 보건소에서 참여 의료기관 승인 가능

- ① 시스템을 처음 사용하는 의료기관일 경우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로그인 후 예방접종 관리업무에 대한 사용자 권한 신청이 필요합니다. 좌측 메뉴보기에서 '권한/ 부가정보 관리'를 클릭합니다.



<그림 1. 예방접종관리 User 권한 신청(1)>

- ② '권한 및 부가정보 관리' 메뉴의 권한그룹선택에서 예방접종을 선택하거나 스크롤을 하단으로 내리면 [예방접종관리 User] 권한 신청항목이 보입니다.



<그림 2. 예방접종관리 User 권한 신청(2)>

※ 교육이수를 위해 [교육관리 User] 권한도 신청. 교육과정 수료내역은 개인(실명)별로 관리되니, **회원가입시 교육생 본인 실명으로 반드시 기입하기** 바람. 과정 수강중이거나 수료후에는 성명 변경 불가.



<그림 2-1. 교육관리 User(학습자)>

③ 예방접종관리 User(IR의원)의 ‘승인기관’을 클릭하여 관할 보건소를 선택한 후 ‘신청’을 클릭하면 권한신청이 완료됩니다. 보건소에서 권한신청을 승인하면 권한상태가 ‘신청중’에서 ‘승인’으로 변경됩니다.



<그림 3. 예방접종관리 User 권한 신청(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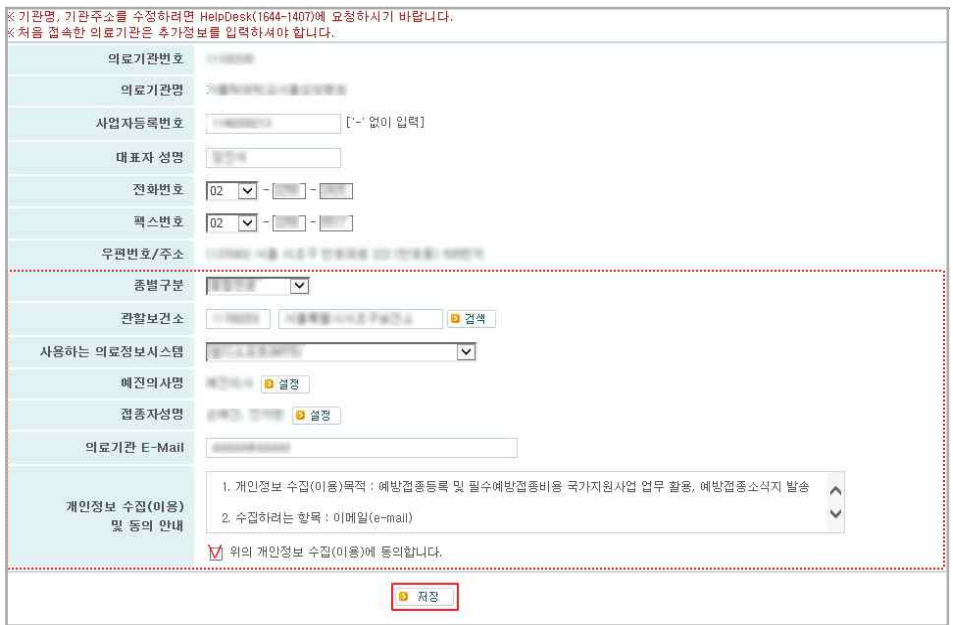
- ④ 예방접종관리 User 권한이 승인되면 로그인 시 메뉴보기에서 '예방접종관리' 메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림 4. 예방접종관리 User 권한 승인 후 메뉴>

- ⑤ 초기 '예방접종관리' 메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부가정보를 입력해야 하며, 입력이 완료되어야 관할 보건소에서 위탁사업정보 등록이 가능합니다. '예방접종관리' 메뉴 클릭 시 부가정보 입력화면으로 자동 연동되며, 저장이 완료되면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부가정보 : 기관 종별구분, 사용 의료정보시스템명, 예진의사명, 접종자명, 기관 E-mail 등



<그림 5. 의료기관 부가정보 입력>

부 록 10 (의료기관) 노인 인플루엔자 시스템 매뉴얼

1. 예방접종관리업무 계약 신청

1.1 의료기관 정보 및 계약 안내

- ①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 신청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메뉴의 ‘예방접종관리’ > ‘예방접종등록’ > ‘국가예방접종지원사업’ > ‘계약신청(노인)’ 메뉴에서 의료기관 기본정보 및 기관인증서 등록 여부 등을 확인하고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 서류를 등록하고 위탁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그림 1. 의료기관 계약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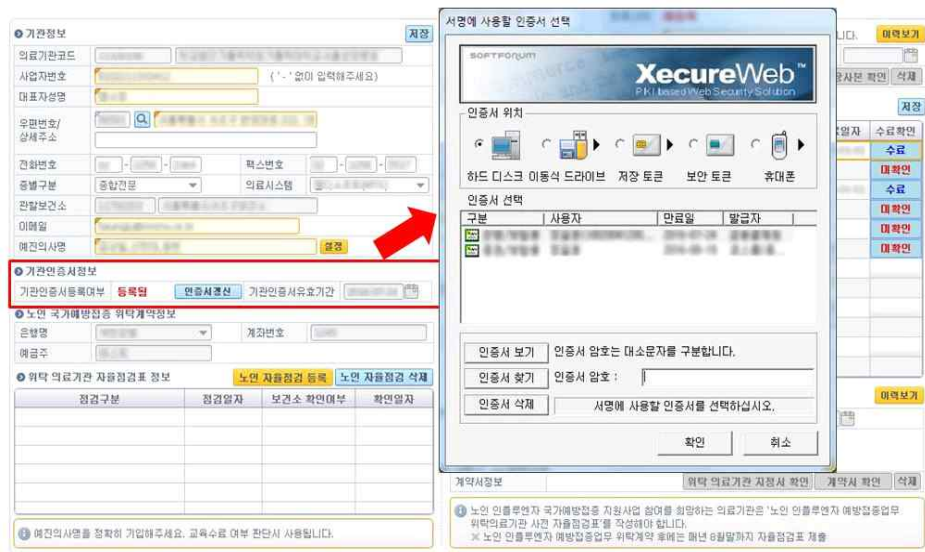


1.2 기관인증서 등록 및 갱신

위탁계약 신청 전 기관인증서 등록하여야 합니다.

- ①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메뉴의 '예방접종관리' > '예방접종등록' >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 '계약신청(노인)' 메뉴로 이동합니다.
- ② '기관인증서 정보'에서 전자계약신청 및 의료기관점검 시 사용될 기관인증서 등록여부 및 유효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③ 인증서가 등록되지 않은 의료기관은 [인증서등록] 버튼을 클릭하여 기관인증서를 등록하고, 인증서가 만료된 경우 [인증서갱신] 버튼을 클릭하여 인증서를 변경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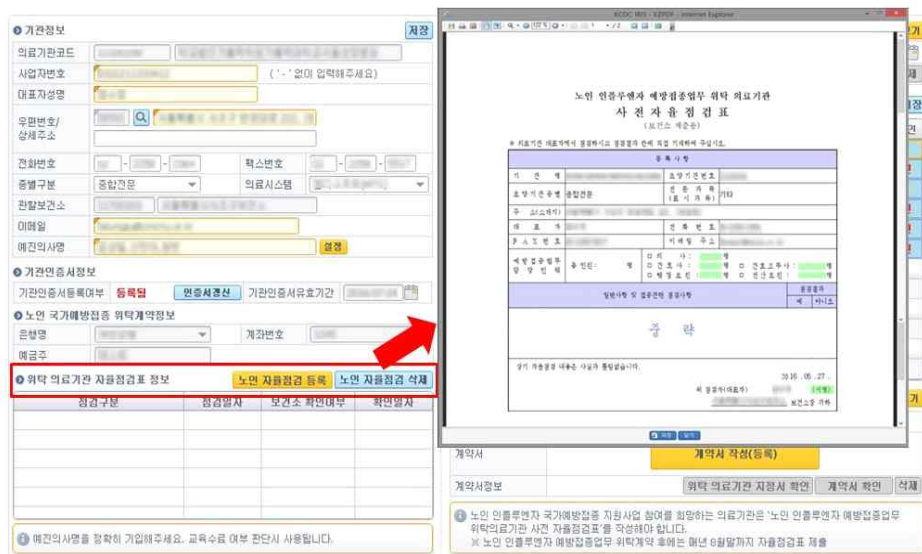
* 기관인증서 등록 시 의료기관의 사업자 등록번호로 등록 된 인증서만 등록 가능



<그림 2. 의료기관 기관인증서 등록>

1.3 위탁의료기관 자율점검표 등록

- ① ‘노인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계약체결 전 동 사업에 대한 사전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점검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 ② [노인 자율점검 등록] 버튼 클릭 하면 해당 사업의 자율점검 전산등록 화면이 생성되며 내용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 ③ 자율점검 내용을 작성 하고, (서명)을 클릭하여 기관인증서 서명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등록이 완료됩니다.
 - *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의 경우 ‘어린이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자율점검표’로 대체 가능합니다.
- ④ 자율점검표 등록을 완료하면 정보 내역에 “미확인” 상태가 되며 관할보건소에서 확인을 하면 “확인완료” 상태로 변경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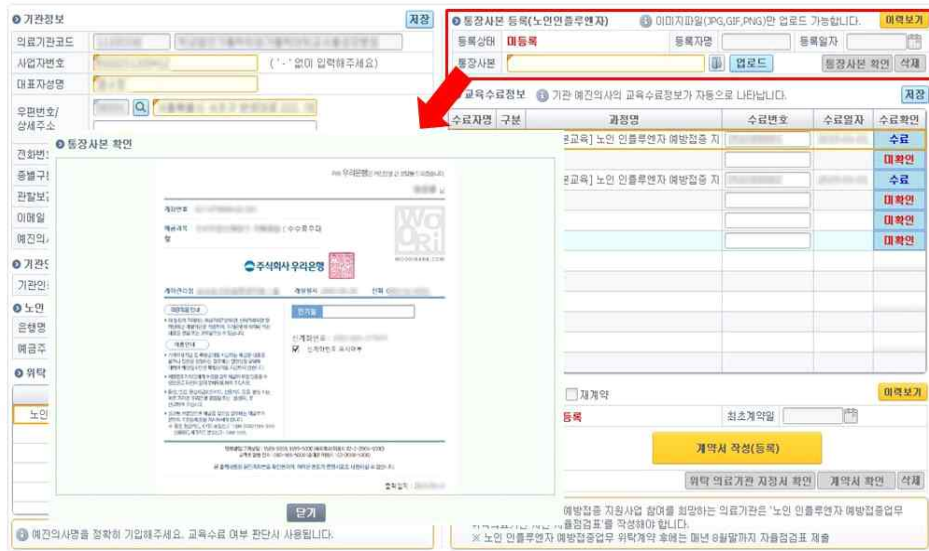


<그림 3. 의료기관 사전 자율점검표 등록>



1.4 통장사본 등록

- ① 위탁계약 체결 후 비용지급 시 사용될 통장사본 파일을 등록합니다.
- ② ‘통장사본 등록(국가예방접종)’ 항목에서 파일조회 후 [업로드] 버튼을 클릭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 * 통장사본 등록 시 가능한 파일은 5MB이하의 확장명은 jpg, gif, png 파일만 가능
- ③ 통장사본 등록을 완료하면 “승인대기” 상태가 되며, 관할 보건소에서 확인 후 승인을 하면 “승인완료” 상태로 변경됩니다.
- ④ 업로드 후 [통장사본 확인], [통장사본 삭제] 버튼이 생기며, 클릭 시 미리보기화면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승인 전까지는 [삭제] 버튼을 클릭하여 업로드 된 이미지를 삭제 후 재등록 하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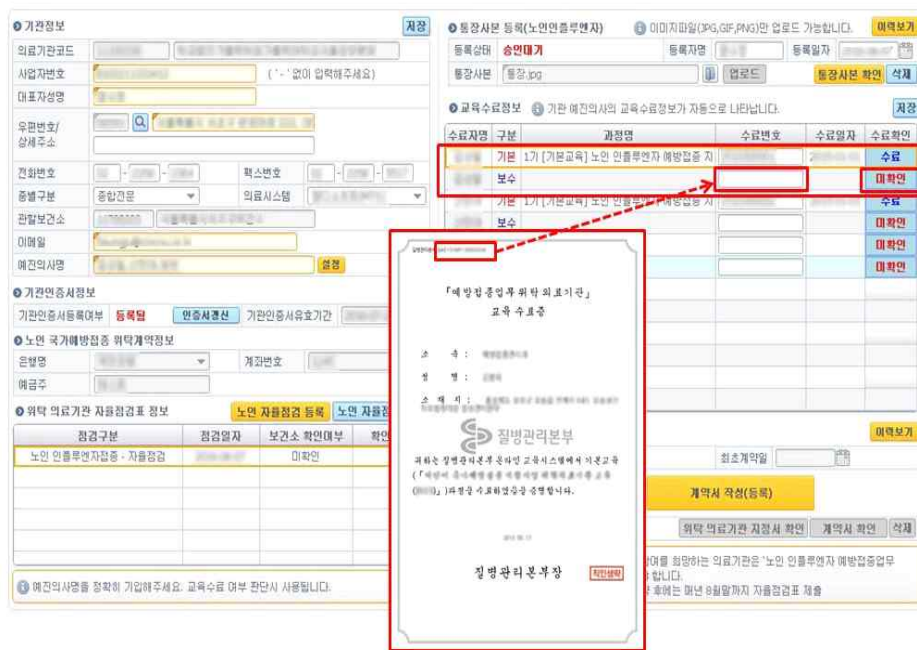
<그림 4. 의료기관 통장이미지 등록>

1.5 교육수료정보 확인

① 교육수료증은 계약에 필요한 서류로, ‘교육수료정보’항목에서 해당기관의 예진의사의 교육수료내역이 나타납니다.

* 다만, 자동으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 교육수료증을 교육시스템(<http://edu.cdc.go.kr>)에서 다운로드(PDF파일)하여 상단에 위치한 수료번호(숫자10자리)를 입력하고 [미확인]버튼을 클릭하여 수료여부를 검증해주세요. 검증 후 “저장”버튼 클릭

* 신규 계약시 기본교육 이수가 완료되어야 하며, 재계약시 보수교육 이수가 완료 되어야함.



<그림 5. 의료기관 교육수료 등록 및 확인>

1.6 계약서 작성

① [계약서 작성] 버튼 클릭하면 ‘예방접종 위탁계약서’ 화면이 생성되며,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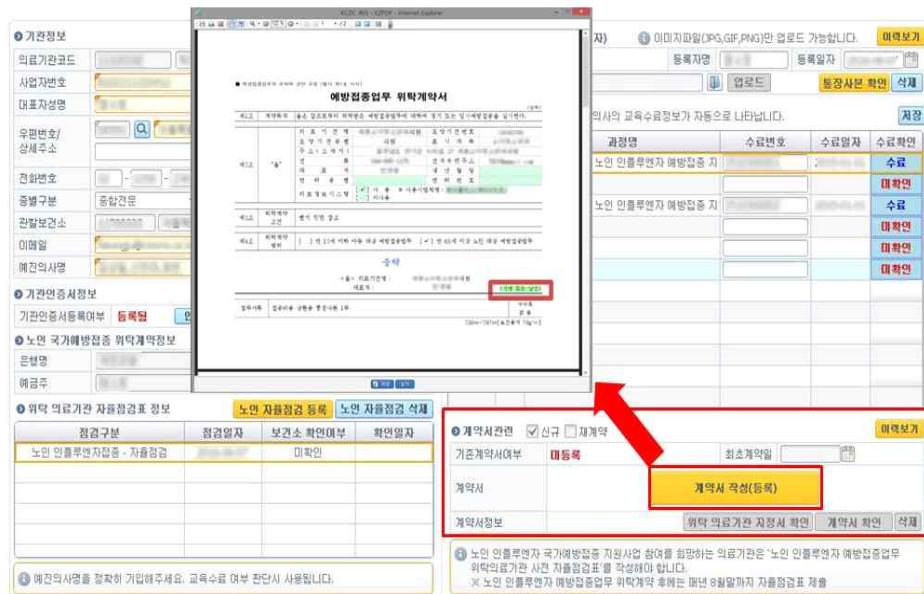
※ 위탁계약 시 제출(등록)해야 하는 서류가 미등록 된 경우 진행 불가합니다(단, 교육수료정보와 자율점검등록정보는 별도 확인 필요).

② 위탁계약서를 작성하고, 하단의 (서명 또는 날인)을 클릭하여 서명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 등록이 완료됩니다.

③ 등록 완료 시 “승인대기” 상태가 되며 관할보건소에서 승인을 하면 “승인완료” 상태로 변경됩니다.

④ 업로드가 되어있으면 [계약서 확인], [계약서 삭제] 버튼이 생기며 [확인]버튼 클릭 시 다음과 같이 미리보기화면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승인 전까지는 [계약서 삭제] 버튼을 클릭하여 업로드 된 이미지를 삭제 하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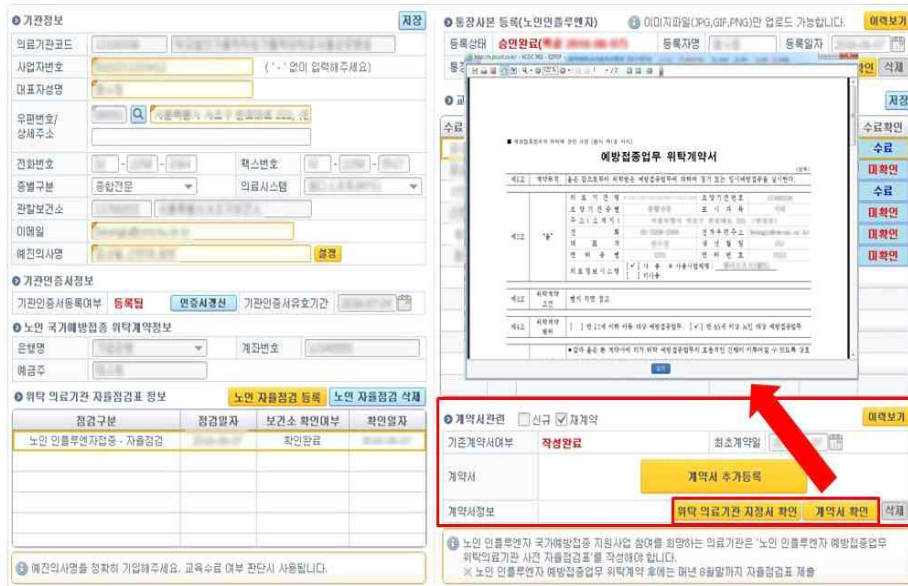
* 보건소에서 최종적으로 계약서에 승인 서명을 완료하면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 성립



<그림 6. 의료기관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 작성>

1.7 계약서 완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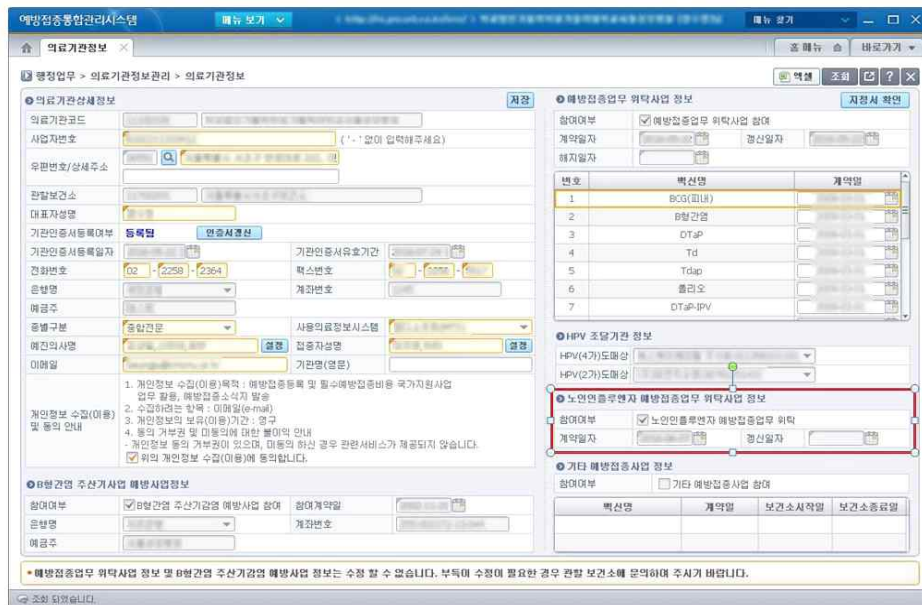
- ① 보건소에서 계약서 내용 및 계약서류 확인시 계약이 완료되며 '위탁의료기관 지침서 확인'과 '계약서 확인' 사항이 화면에 표시됩니다.
- * 계약서 확인은 승인 대기 중에도 나타나며, 작성하신 계약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위탁의료기관 지침서 확인' 및 '계약서 확인'을 클릭하여 필요 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그림 7. 의료기관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 완료>

1.8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 정보 확인

- ①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로그인 후 '예방 접종 관리' > '예방접종등록' > '인터넷 예방접종등록'을 클릭합니다.
- ② 보건소에서 승인한 위탁계약 내용은 시스템 내 의료기관정보에 반영됩니다. '행정업무' > '의료기관정보관리' > '의료기관정보' 메뉴에서 계약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림 8. 의료기관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 정보 확인>

* 계약 해지

- ①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 해지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메뉴의 ‘예방접종관리’ > ‘예방접종등록’ > ‘국가예방접종지원사업’ > ‘계약신청(노인)’ 메뉴에서 의료기관 계약이 완료되었을 경우 [계약 해지 신청서 등록] 버튼이 나타납니다.
- ② [계약 해지 신청서 등록] 버튼을 클릭하고 계약해지 신청서 작성 후 [저장]버튼을 클릭하면 완료되며 즉시 사업해지가 되므로 신중하게 작성해주세요.

The screenshot shows a web-based form for terminating a contract. The form is titled "노인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업무 위탁 의료기관 계약 해지 신청서". It includes several sections for data entry:

- 기관정보 (Hospital Information):** Fields for hospital name, address, and contact details.
- 기관인증서정보 (Institution Certificate Information):** Fields for certificate number and expiration date.
- 노인 국가예방접종 위탁계약정보 (Elderly National Immunization Contract Information):** Fields for contract type and contract number.
- 위탁 의료기관 자용점검표 정보 (Contracted Medical Institution Self-Inspection Table Information):** A table with columns for inspection item, inspector, date, and status.

At the bottom right of the form, there are buttons for "작성완료" (Save), "계약서 추가등록" (Add Contract), and "계약해지 신청서 등록" (Register Contract Termination). A red arrow points to the "작성완료" button.

<그림 9. 의료기관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 해지 신청>



2. 백신관리

2.1 예상수요량 등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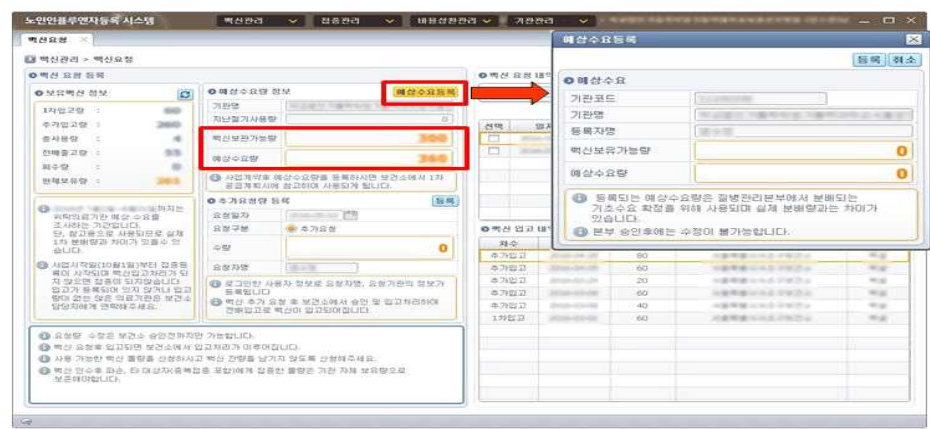
- ① 노인인플루엔자 계약이 완료되면 ‘노인인플루엔자 등록시스템’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②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메뉴의 ‘예방접종관리’ > ‘예방접종등록’ > ‘노인인플루엔자 등록시스템’를 클릭하여 노인인플루엔자 등록시스템을 실행합니다.
- ③ 상단 메뉴 ‘백신관리’ > ‘백신요청’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그림 10. 백신요청>

- ④ [예상수요량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예상수요등록 팝업창이 나타나며 ‘백신보유 가능량’과 ‘예상수요량’을 입력하시고 [등록]버튼을 클릭합니다.

* 보건소 승인전까지는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림 11. 백신예상수요량 등록>

2.2 추가 수요 요청

- ① 사업시작일(2016년10월1일) 이후부터 추가 수요 요청이 가능합니다.
- ② 먼저 추가 요청 필요시 추가수요량 등록란에 수량을 입력하고 [등록]버튼을 클릭하면 화면 우측 상단의 백신 요청내역에 추가됩니다.
- ③ 보건소 승인 후 백신 입고가 이루어지면 우측 하단의 백신입고내역에서 입고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림 12. 추가요청량 등록>



3. 접종관리

3.1 기본값 등록

① 노인인플루엔자 등록시스템의 상단 메뉴 '접종관리' > '인플루엔자 접종등록'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 백신이 입고완료 후 화면 우측하단의 현재 총보유량이 존재해야만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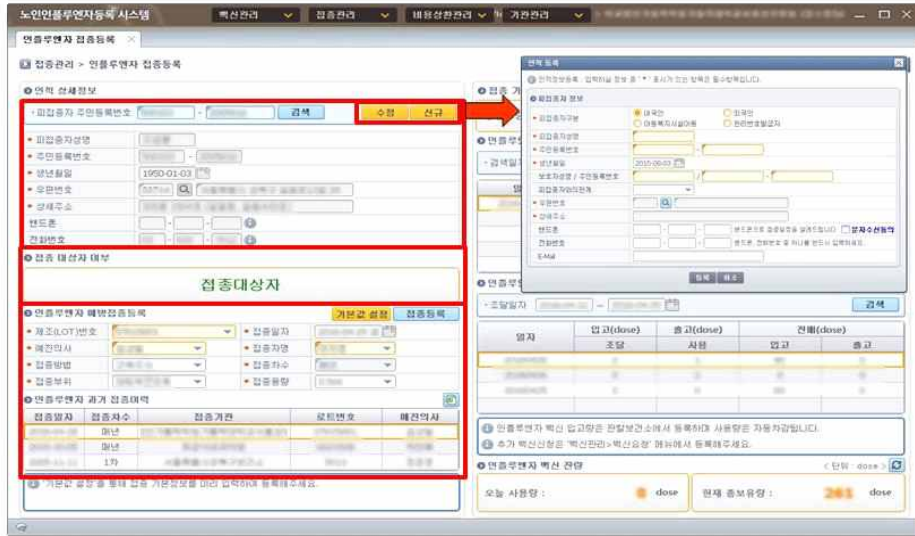
② 먼저 [기본값 설정] 버튼을 클릭하여 사용자 별 기본값을 설정하여 접종등록 시 편리하게 등록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림 13. 접종 기본 값 설정>

3.2 접종등록

- ① 접종할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 후 검색합니다.
- ② 조회된 인적의 '접종대상자 여부'칸에 피접종자의 접종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하단에 과거접종이력 내역을 볼 수 있습니다.
- ③ 조회되지 않는 인적 정보는 [신규]버튼을 클릭하여 인적 정보를 등록하며 인적 정보 수정 시에는 [수정]버튼을 클릭하여 수정할 수 있습니다.
- ④ 접종 가능 대상자면 [접종등록]버튼이 활성화되며 접종 등록이 가능합니다.
- ⑤ 기본 설정된 값이 등록정보란에 자동으로 선택이 되어있으며, 접종 정보 및 인적 정보 확인 후 [접종등록]버튼을 클릭하여 등록합니다.



<그림 14. 인적 및 접종 등록>

- ⑥ 접종등록이 완료 되면, 화면 좌측하단의 ‘오늘사용량’에 업데이트되며 ‘현재 총 보유량’에서 자동차감 됩니다.
 - * 접종등록시 자동으로 비용상환 신청이 되며, 행자부 검증을 거쳐 보건소에서 신청접수하게 됩니다.
- ⑦ 기관별 통계 및 입출고 내역 조회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며 조회일자별로 선택하여 조회 가능합니다.



<그림 15. 접종 등록 및 각종 내역 화면>



3.3 접종등록내역

- ① 노인인플루엔자 등록시스템의 상단 메뉴 '접종관리'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내역'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 ② 접종기간 및 구분을 선택하고 [조회]버튼을 클릭합니다.
- ③ 해당기관에서 접종기간에 접종한 내역이 나타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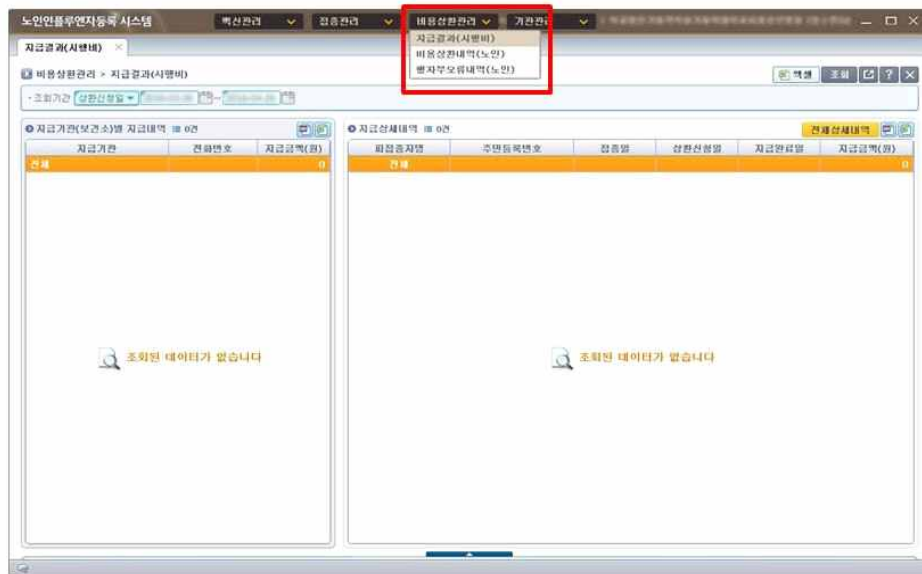
<그림 16.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내역 조회>

4. 비용상환관리

4.1 지급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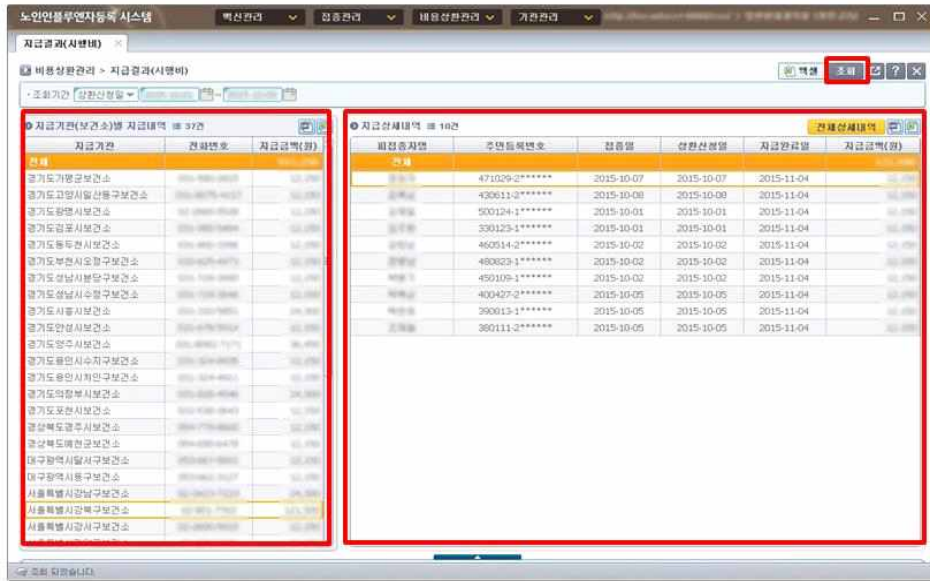
- ① 노인인플루엔자 등록시스템의 상단 메뉴 ‘비용상환관리’ > ‘지급결과(시행비)’를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 접종 등록 후 인적 관할 보건소 비용상환 지급 완료된 건이 조회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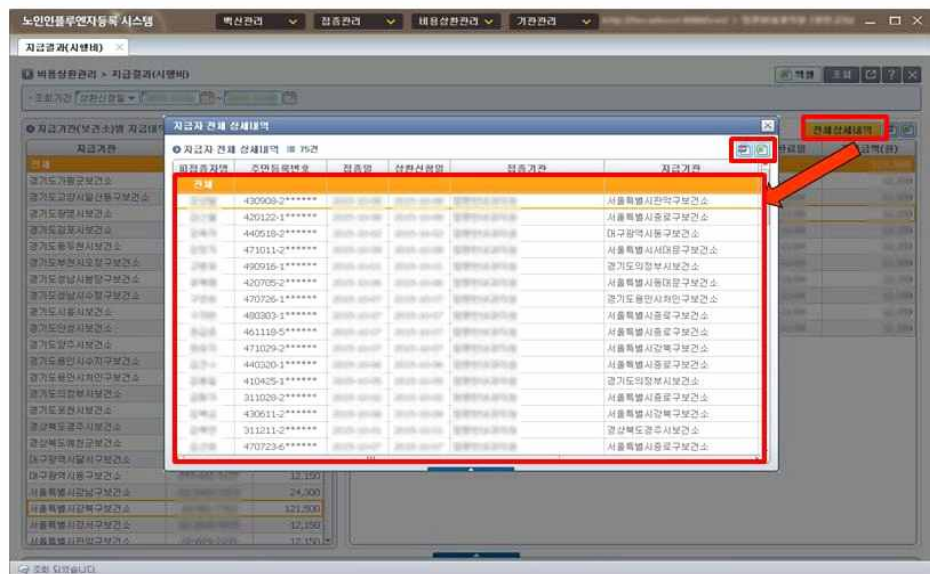
<그림 17. 지급결과(시행비) 화면>

- ② 조회기간을 상환신청일 또는 지급 승인 일을 기준으로 설정 후 [조회]버튼을 클릭합니다.
- ③ 화면 왼쪽 내역에 보건소별 지급된 내역이 나타납니다.
- ④ 화면 왼쪽 내역의 보건소를 더블 클릭하면 우측 지급상세내역에 선택한 보건소의 상세 지급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림 18. 지급결과(시행비) 조회>

- ⑤ [전체상세내역] 버튼을 클릭하면 조회 기간의 전체 지급 상세 내역 팝업창이 나타납니다.
- ⑥ 팝업창 우측 상단의 [엑셀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여 내역을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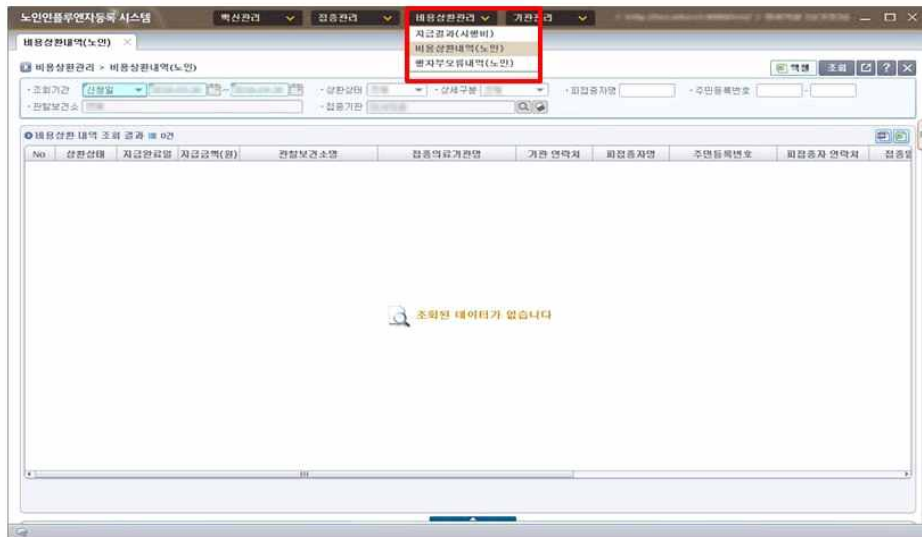


<그림 19. 지급결과(시행비) 전체 조회>

4.2 비용상환내역

① 노인인플루엔자 등록시스템의 상단 메뉴 ‘비용상환관리’ > ‘비용상환내역(노인)’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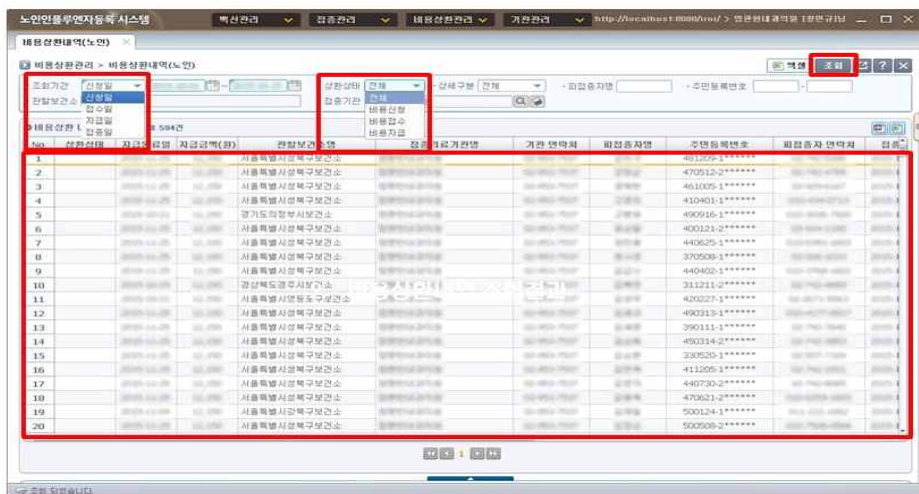
* 의료기관에서 신청한 비용상환내역을 조회함.



<그림 20. 비용상환 메뉴 선택>

② 조회할 기간 및 상환상태를 선택하고 [조회]버튼을 클릭합니다.

③ 아래 내역에 의료기관에서 신청한 비용상환 내역이 조회됩니다.



<그림 21. 비용상환 내역 조회>



4.3 행자부오류내역

① 노인인플루엔자 등록시스템의 상단 메뉴 ‘비용상환관리’ > ‘행자부오류내역(노인)’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 행자부 확인 결과 오류로 확인된 내역을 조회함.



<그림 22. 행정자치부 오류내역 메뉴 선택>

② 조회 기간을 선택하고 [조회]버튼을 클릭합니다.

③ 아래 내역에 행자부 확인결과 오류로 확인된 내역이 조회됩니다.



<그림 23. 행정자치부 오류내역 조회>

- ④ 행자부 오류내역을 수정하기 위하여 해당 오류 내역을 더블 클릭합니다.
- ⑤ 인적 정보 수정 창에 오류내용을 확인한 후 피접종자의 정보를 수정하고 [저장]버튼을 클릭하면 수정이 완료됩니다.
- * 이후 수정된 내역은 다시 한 번 행자부 확인을 거친 후 지급 처리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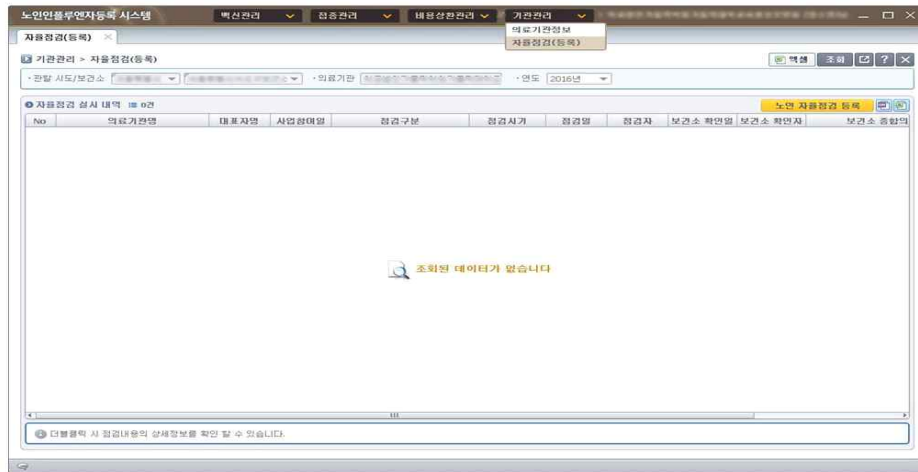


<그림 24. 행정자치부 오류내역 인적수정>



5. 점검관리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is.cdc.go.kr/>) 사용자정보 ‘노인인플루엔자 등록시스템’에서 ‘의료기관점검관리’ 업무가 가능합니다.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로그인 후 좌측 메뉴에서 ‘예방 접종 관리’ > ‘예방접종등록’ > ‘노인인플루엔자 등록시스템’을 클릭합니다.
- 상단 메뉴보기에서 ‘기관관리’ > ‘자율점검(등록)’ 메뉴로 이동하여 의료기관자율점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림 25. 자율점검 메뉴 선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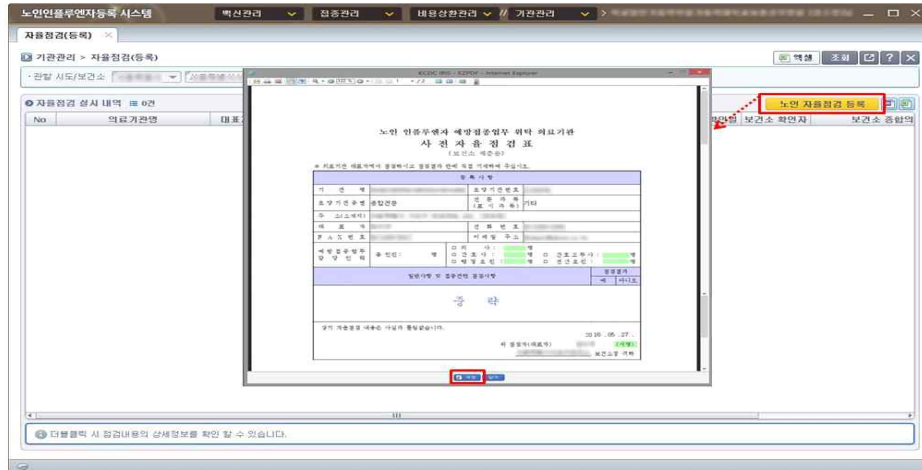
5.1 의료기관정보 확인 및 수정

- ① <1.2 기관인증서 등록 및 갱신>을 참고하여 의료기관 정보를 확인하고 기관의 최신 인증서로 갱신합니다.

* 기관인증서 갱신 시 의료기관의 사업자 등록번호로 등록 된 인증서만 등록 가능

5.2 노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전자율점검

- ① ‘자율점검’ 메뉴 상단 [노인 자율점검 등록] 버튼을 클릭합니다.
 - ② ‘노인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업무 위탁 의료기관 사전자율점검표’ 팝업화면이 생성됩니다.
 - ③ 점검내용 작성 후 (서명)을 클릭하여 기관인증서로 서명을 완료합니다.
 - ④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점검표 제출이 완료되며, 점검내역 리스트에서 제출내역 확인이 가능합니다.
 - ⑤ 리스트를 더블 클릭하면 제출한 점검표 내용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⑥ ‘노인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사업’ 위탁 의료기관은 매년 사업 시행 전 ‘사전 자율 점검표’를 작성하고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사전 자율점검표 제출기한 : 계약년도에는 계약시, 그 외는 8월말까지
- * ‘어린이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의 경우 ‘어린이 예방접종업무 자율점검표’로 대체 가능



<그림 26. 노인인플루엔자 사전점검 등록>



6. 이상반응 전산관리

6.1. 이상반응 신고방법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is.cdc.go.kr>) → 예방접종관리 → 예방접종안전관리 → 이상반응 → 병원/보건소 신고관리
: 보건소 및 의료기관 신고



<그림 27.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병원/보건소 신고 화면 1 >

- ① 아래의 검색조건 중 하나를 선택 → [조회] 버튼 클릭
 - 피접종자 주민등록번호
 - 보호자 주민등록번호
- ② 피접종자 검색결과에서 해당 피접종자 클릭 → 해당 접종내역 클릭 → [이상반응 신고] 버튼 클릭

<그림 28.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병의원/보건소 신고 화면 2 >

- ① 이상반응환자 인적정보 확인
- ② 접종기관정보 확인
- ③ 예방접종정보 확인
- ④ 이상반응 신고기관정보 확인
- ⑤ [이상반응 종류 및 진행상황 입력버튼] 클릭
 - 이상반응 종류와 진행상황을 반드시 체크
- ⑥ 입력내용 확인 후 [저장] 버튼 클릭

※ 인적정보, 접종기관정보, 예방접종정보, 신고기관정보 등이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직접 입력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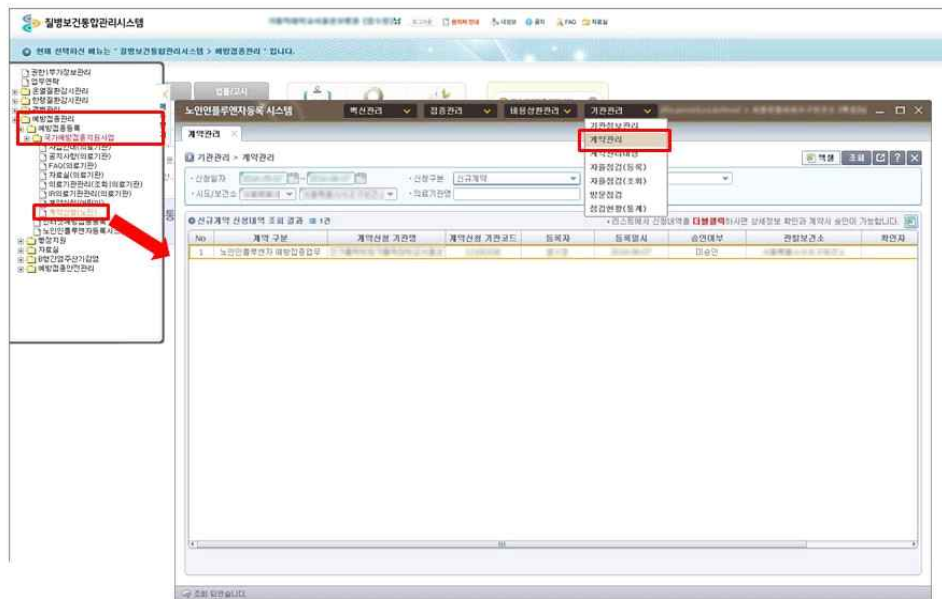


부 록 11

(보건소) 노인인플루엔자 시스템 매뉴얼

1. 예방접종관리업무 계약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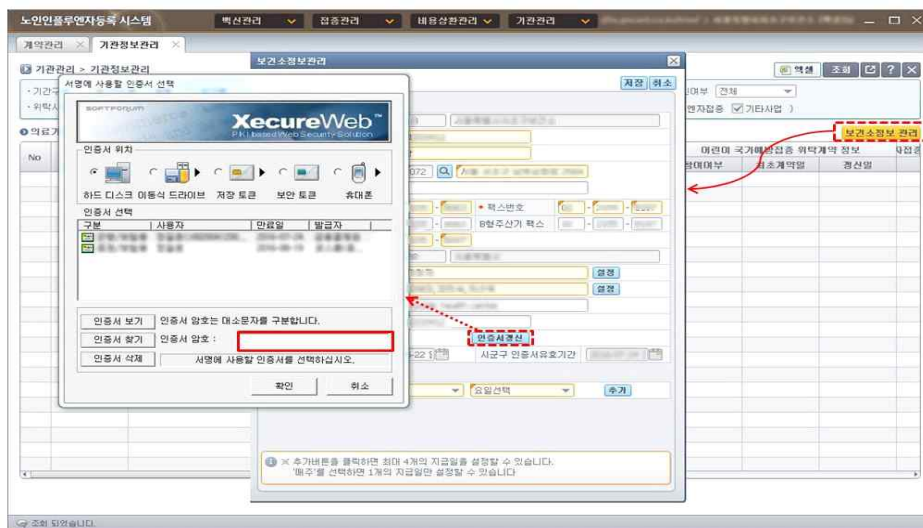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로그인 후 좌측 메뉴에서 '예방 접종 관리 > 예방접종등록 > 노인인플루엔자 등록시스템'을 클릭합니다.



<그림 1. 의료기관 계약관리 메뉴>

1.1 보건소 정보 확인 및 기관인증서 등록

- ① 상위 메뉴의 '기관관리 > 기관정보관리' 메뉴 우측상단의 [보건소정보관리] 버튼을 클릭합니다.
 - ② '보건소정보관리' 팝업에서 보건소의 상세정보 확인 및 수정이 가능하며, 보건소의 기관인증서 등록여부 확인 후 인증서를 등록합니다.
- * 해당 시·군·구로 발급된 인증서만 등록 가능
 - * 등록된 기관인증서는 전자계약 및 위탁의료기관 점검 관리시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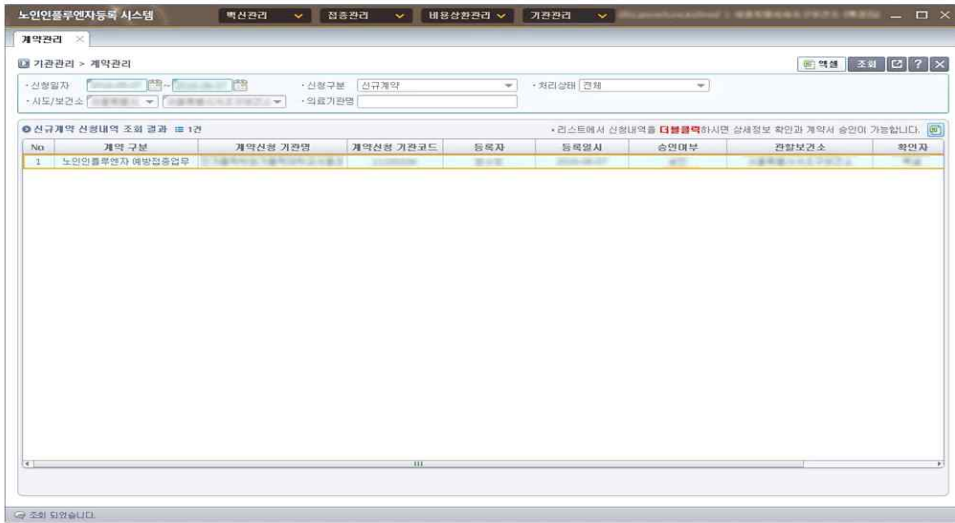


<그림 2. 보건소 인증서 갱신>



1.2 계약관리 조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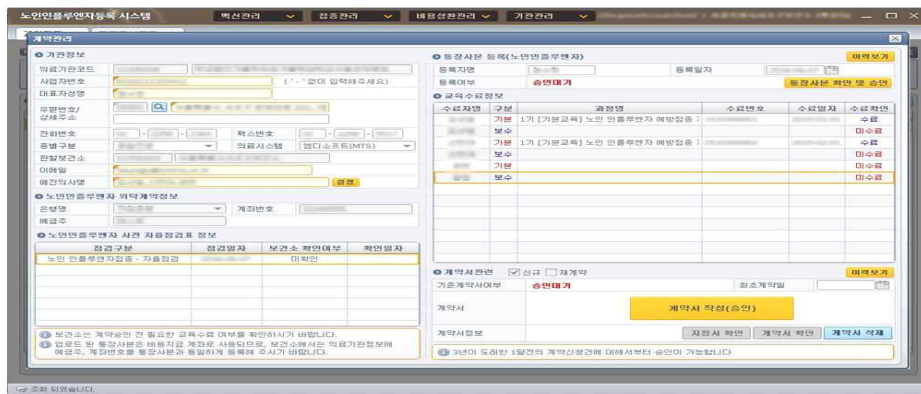
- ① 조회조건(신청일자, 보건소 처리상태(승인, 미승인), 의료기관명 등) 설정 후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 ② 조회된 내역을 더블 클릭하여 해당 기관에서 등록된 상세정보를 확인하고, 전자계약 승인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림 3. 의료기관 계약신청 조회>

1.3. 계약관리 및 승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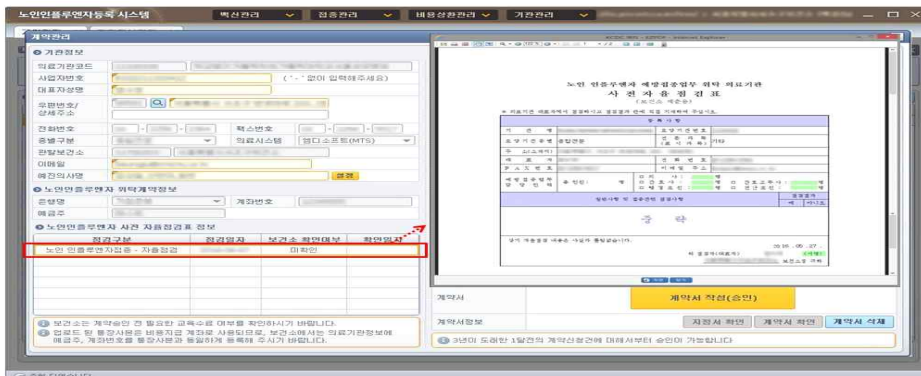
- ① ‘신규 계약 신청 내역’에서 해당 기관명을 더블 클릭 시 ‘계약관리’창이 생성됩니다.
- ② 위탁계약에 필요한 정보(의료기관 기본정보, 교육수료정보, 통장사본 등록정보, 자율점검 시행여부)와 위탁계약서 작성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③ 의료기관 정보 및 의료기관에서 등록·제출한 전자문서의 유효 여부를 확인한 후 계약 승인 절차를 진행합니다.



<그림 4. 의료기관 계약신청 승인>

1.3.1. 위탁의료기관 자율점검표 확인 및 승인

- ① 위탁의료기관 자율점검표 정보 리스트를 더블 클릭하여 해당 의료기관에서 실시한 자율점검 내역을 확인합니다.
- ② 자율점검 내용 확인 후 담당자 확인란에 담당자 의견(필요시 기재)하고, 담당자 (서명)을 클릭한 후 [저장] 합니다.
- ③ 저장 완료시 “확인완료”로 변경되고 확인일자가 표기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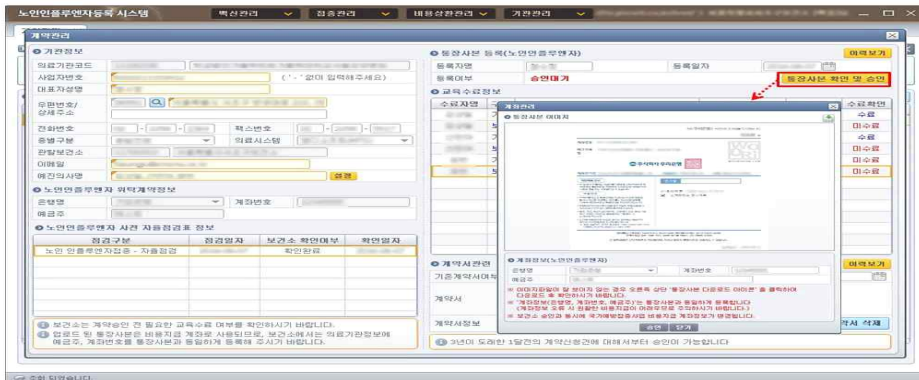
<그림 5. 의료기관 신청 자율점검표 확인>



1.3.2. 통장사본 확인 및 승인

의료기관에서 통장사본 등록한 경우 ‘승인대기’ 상태로 보여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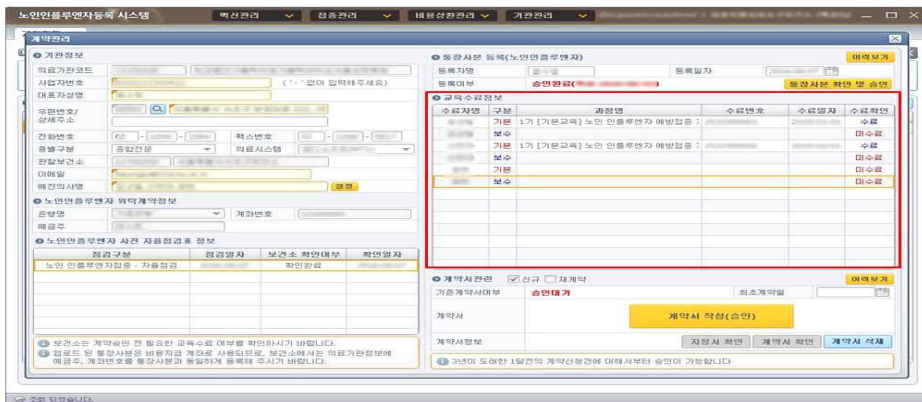
- ① [통장사본 확인 및 승인] 버튼을 클릭하여 ‘계좌관리’ 팝업 화면에서 등록된 통장사본을 확인합니다.
- ② 화면 하단 ‘계좌정보(노인인플루엔자)’에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를 동일하게 입력하고, [승인]버튼을 클릭하면 계좌정보 등록이 완료됩니다.
* 등록된 계좌정보는 비용지급 계좌로 사용되므로 반드시 동일하게 입력
- ③ 보건소에서 계좌정보 등록 완료시 “승인완료”로 변경됩니다.



<그림 6. 의료기관 지급통장 확인>

1.3.3. 교육수료 정보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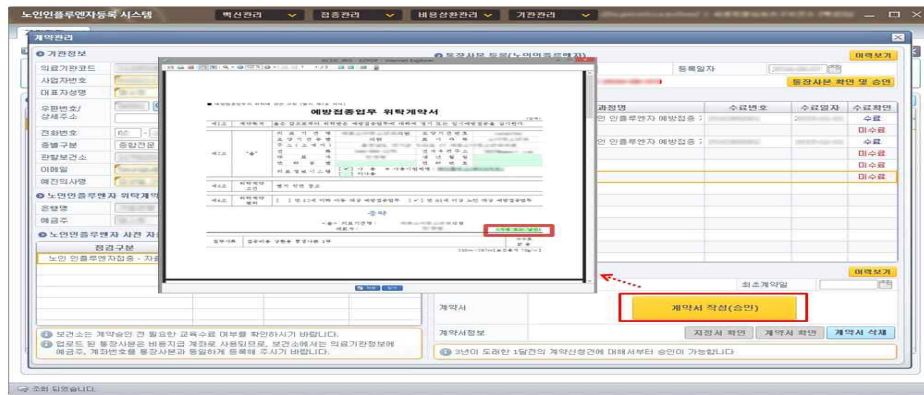
교육수료정보에서 위탁계약을 신청하는 기관의 예진의사 교육수료내용이 조회됩니다. 교육수료 정보가 없는 경우 계약 성립이 불가하므로, 의료기관에 위탁 계약 전 필요한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요청합니다.



<그림 7. 의료기관 교육수료 확인>

1.3.4. 계약서 서명

- ① ‘계약서 관련’ 메뉴의 [계약서 서명] 버튼을 클릭합니다.
- ②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 팝업창의 위탁계약 내용을 최종 확인한 후 보건소(서명 또는 날인)과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전자계약) 절차가 완료됩니다.



<그림 8. 계약서 작성>

1.4. 계약정보 확인

- ① 의료기관정보는 ‘기관관리’ > ‘기관정보관리’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② ‘기관정보관리’ 메뉴에서 조회 조건을 설정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 ③ 해당 의료기관 상세정보 팝업창 화면 오른쪽 ‘예방접종업무 위탁사업 정보’ 및 왼쪽의 ‘기본정보- 계좌번호 등 은행정보’ 내용이 정확히 등록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계좌정보는 반드시 사본과 동일하게 등록(특히, 예금주 등록 시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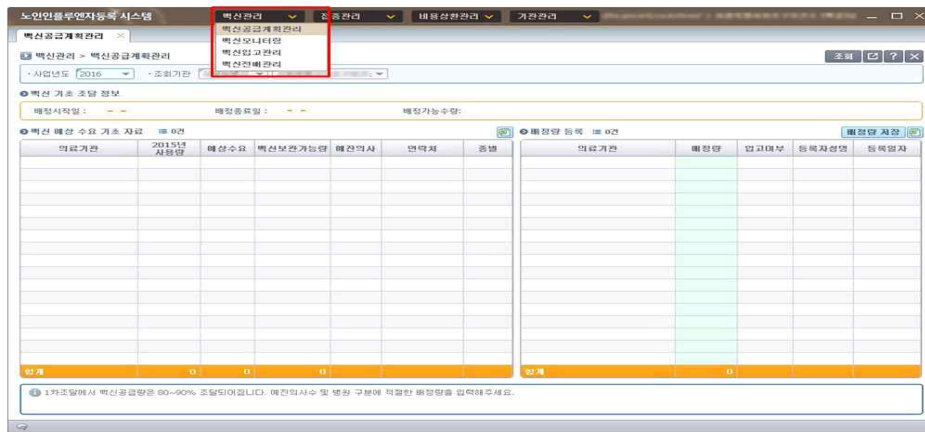
<그림 9. 의료기관 정보조회(계약확인)>



2. 백신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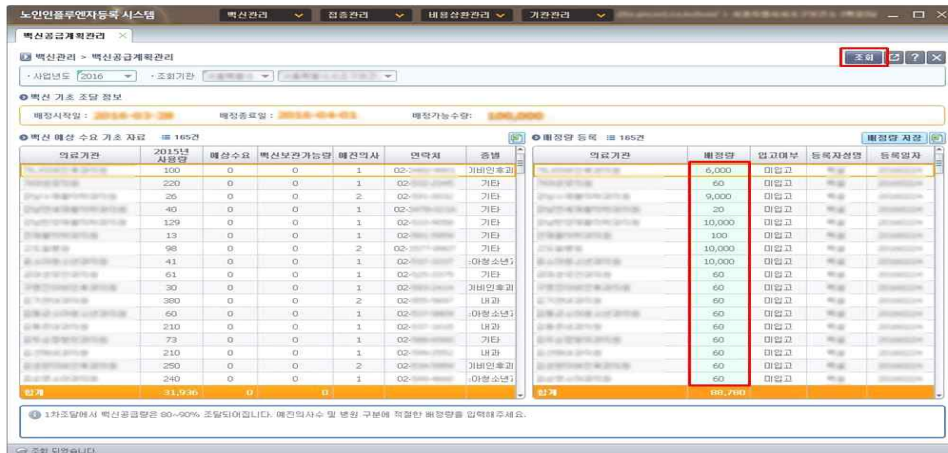
2.1 백신공급계획관리

- ①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메뉴의 ‘예방접종관리’ > ‘예방접종등록’ > ‘노인인플루엔자 등록시스템’를 클릭하여 노인인플루엔자 등록시스템을 실행합니다.
- ② 상단 메뉴 ‘백신관리’ > ‘백신공급계획관리’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그림 10. 백신공급계획 선택>

- ③ [조회]버튼을 클릭하여 백신 조달정보 내역을 조회합니다.
- ④ 백신기초조달정보 및 백신 예상수요 기초자료를 참고하여 배정량 등록란에 배정량을 등록 후 [배정량 저장]버튼을 클릭합니다.
- * 배정가능수량과 배정량 합계 수량이 같아야 저장이 가능합니다.



<그림 11. 백신수요 요청 및 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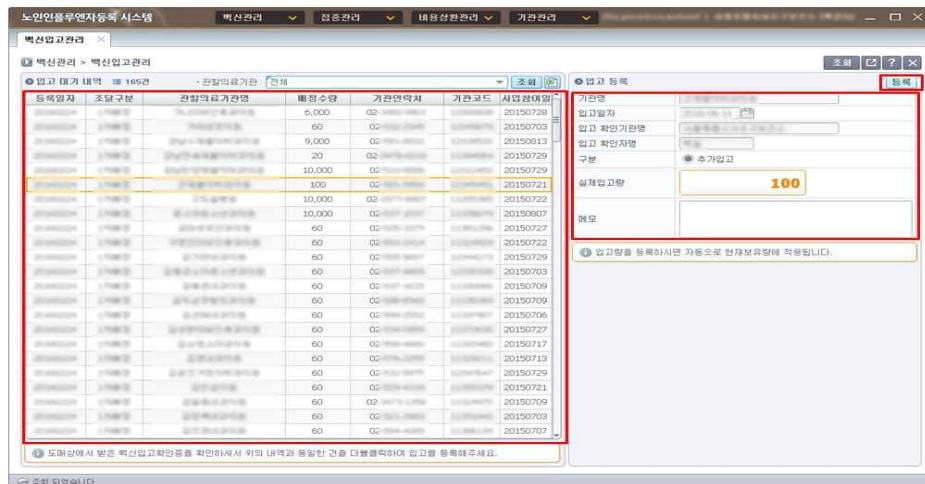
2.3 백신입고관리

① 상단 메뉴 '백신관리' > '백신입고관리'를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그림 14. 백신입고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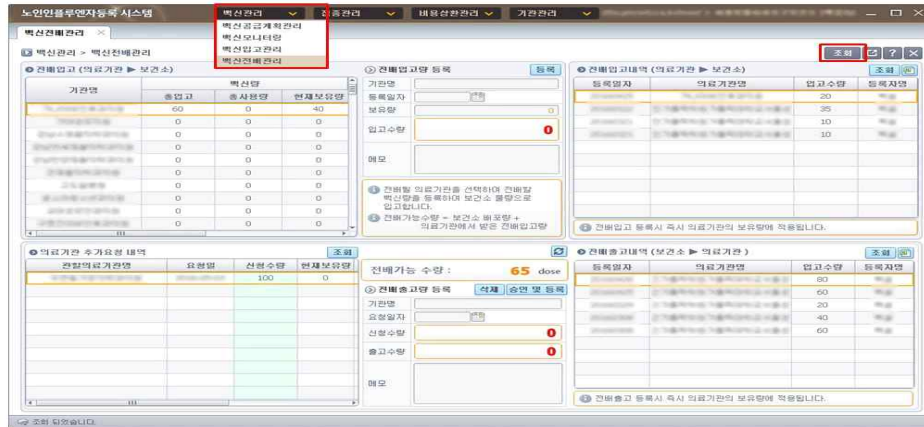
- ② [조회]버튼을 클릭하여 의료기관 입고 대기 내역을 조회합니다.
 - ③ 도매상에서 받은 '백신 입고 확인증'을 확인하여 해당건을 더블클릭합니다.
 - ④ 화면 우측의 입고 등록창에 정보가 입력되며, [등록]버튼을 클릭하여 의료기관의 백신 입고량을 등록합니다.
- * 등록이 되면 대기내역에서 사라지므로 정확하게 등록해주세요.



<그림 15. 백신 입고 등록>

2.4 백신전배관리

① 상단 메뉴 ‘백신관리’ > ‘백신전배관리’를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그림 16. 백신 전배관리>

- ② 좌측 상단의 내역에서는 관할 의료기관의 백신 정보가 나타나며, 전배입고할 의료기관을 선택하여 더블클릭합니다.
- ③ 전배입고량 등록칸에 정보들이 자동 입력되며, 전배입고할 수량 및 메모를 입력하고 [등록]버튼을 클릭합니다.
- ④ 정상적으로 전배입고가 등록되면 우측 상단의 전배입고내역에 나타나며, 전배가능 수량에 합산되어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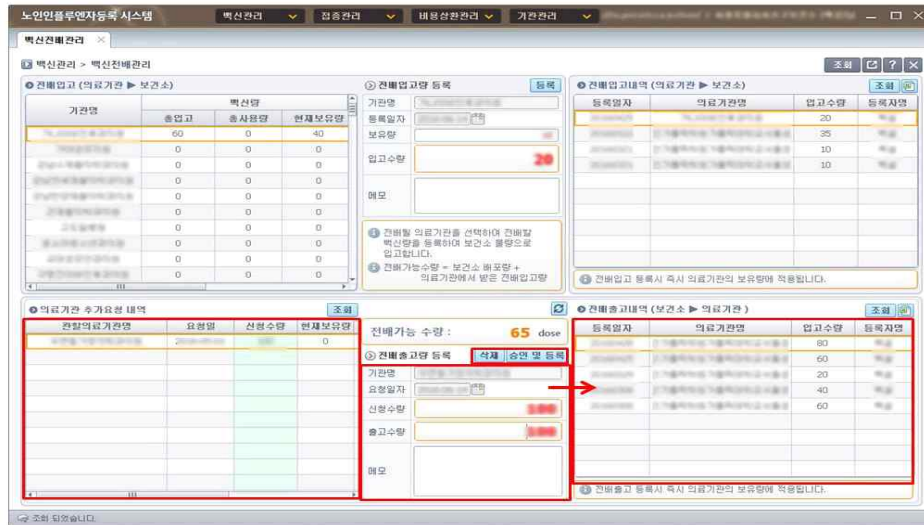
* 전배입고가 되면 해당 의료기관의 보유량이 차감됩니다.



<그림 17. 백신 전배 입고>



- ⑤ 우측하단의 의료기관 추가 요청내역에는 관할 의료기관이 백신을 추가로 요청한 내역이 나타납니다.
 - ⑥ 신청수량 및 현재 보유량을 확인하시고 해당 건을 더블클릭합니다.
 - ⑦ 전배출고량 등록 란에 정보들이 자동 입력되며, [승인 및 등록] 버튼을 클릭하여 추가 요청 등록합니다.
 - ⑧ 잘못된 요청 건에 대해서는 [삭제]버튼을 눌러 삭제 할 수 있습니다.
- * 의료기관으로 전배출고가 되면 해당 의료기관의 보유량에 즉시 합산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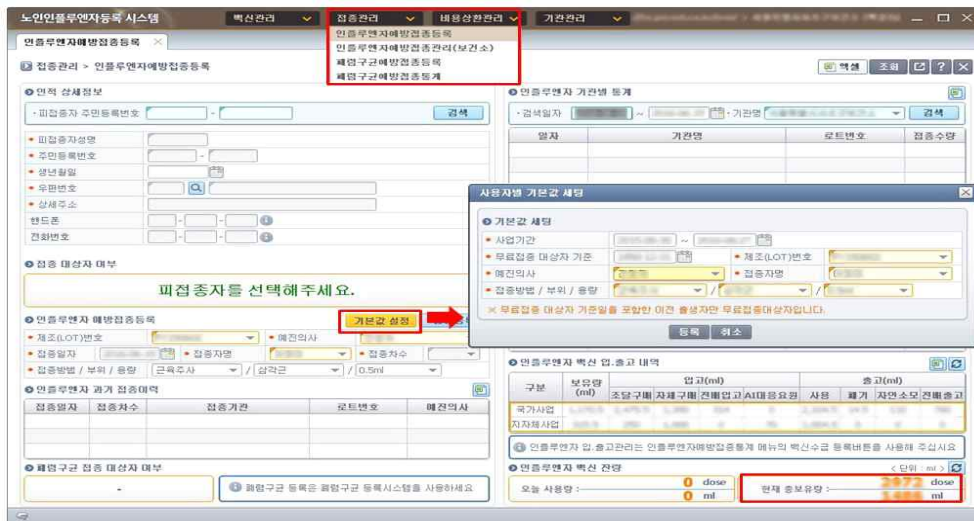
<그림 18. 백신 전배 출고>

3. 접종관리

3.1 기본값 등록

- ① 노인인플루엔자 등록시스템의 상단 메뉴 '접종관리' > '인플루엔자 접종등록'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 ② 먼저 [기본값 설정] 버튼을 클릭하여 사용자 별 기본값을 설정하여 접종등록 시 편리하게 등록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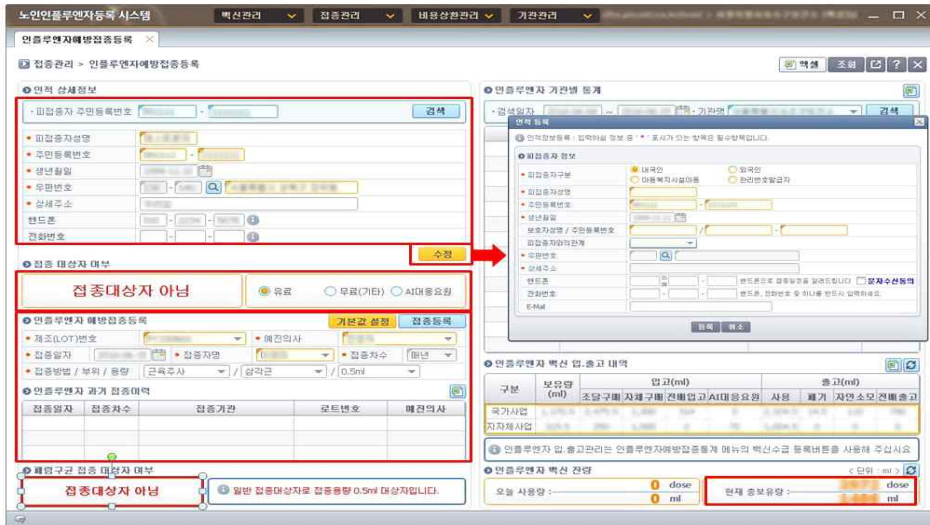
* 올해 사업 기본값이 존재하지 않을시 자동으로 팝업이 나타남.



<그림 19. 접종 기본 값 설정>

3.2 접종등록

- ① 접종할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 후 검색합니다.
 - ② 조회된 인적의 '접종대상자 여부'칸에 피접종자의 접종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하단에 과거접종이력 내역을 볼 수 있습니다.
 - ③ 조회되지 않는 인적 정보는 자동으로 인적 정보 등록 팝업이 나타나며 인적 정보 수정 시에는 [수정]버튼을 클릭하여 수정할 수 있습니다.
 - ④ 접종 가능 대상자면 [접종등록]버튼이 활성화되며 접종 등록이 가능합니다.
 - ⑤ 기본 설정된 값이 등록정보란에 자동으로 선택이 되어있으며, 접종 정보 및 인적 정보 확인 후 [접종등록]버튼을 클릭하여 등록합니다.
- * 좌측 하단에서 폐렴구균 접종대상 여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림 20. 접종 등록>

- ⑥ 접종등록이 완료 되면, 화면 좌측하단의 ‘오늘사용량’에 업데이트되며 현재 보유량에서 사업별로 자동차감 됩니다.
 - * 국가사업과 지자체사업으로 나눠서 보유량이 표시됩니다.
- ⑦ 기관별 통계 및 입출고 내역 조회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며 조회일자별로 선택하여 조회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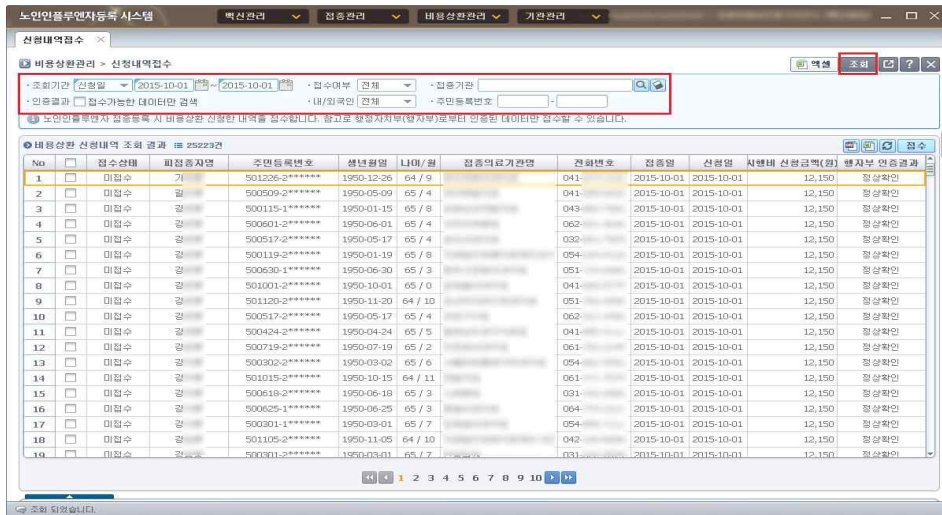


<그림 21. 접종 통계>

4. 비용상환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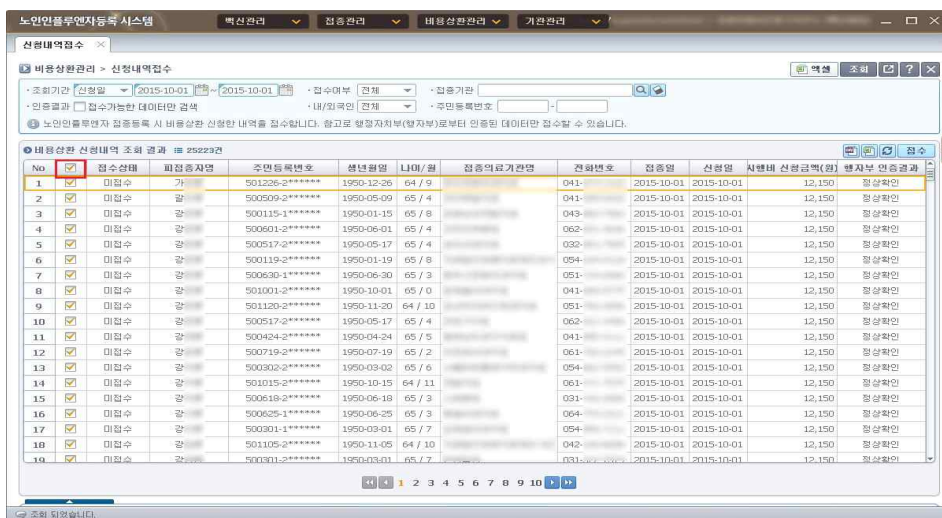
4.1. 신청내역접수

- ① 신청내역접수는 '비용상환관리' > '신청내역접수' 메뉴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② 화면 상단에서 조건 설정 후 [조회]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림 22. 비용상환 신청 조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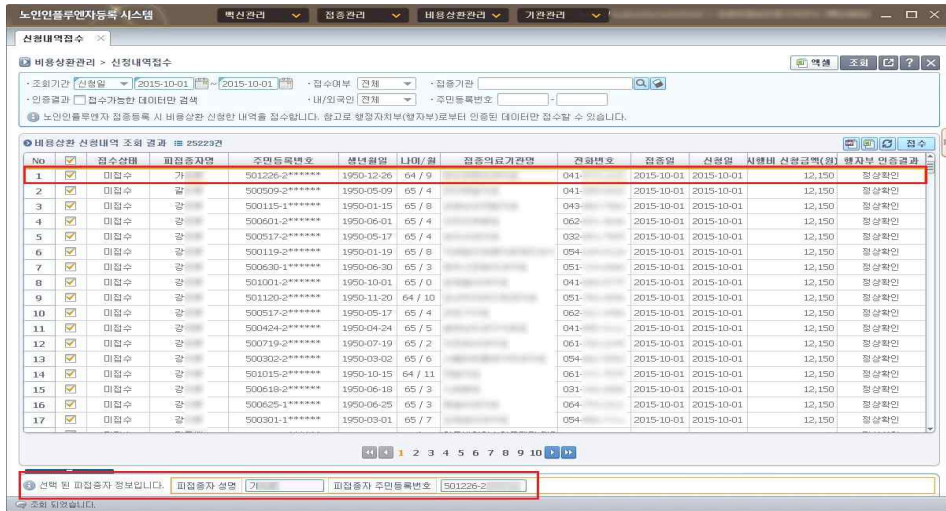
- ③ 조회리스트에서 접수할 내역을 체크박스를 클릭하여 선택합니다. 한 번에 접수 가능한 데이터는 500건입니다.



<그림 23. 비용상환 신청 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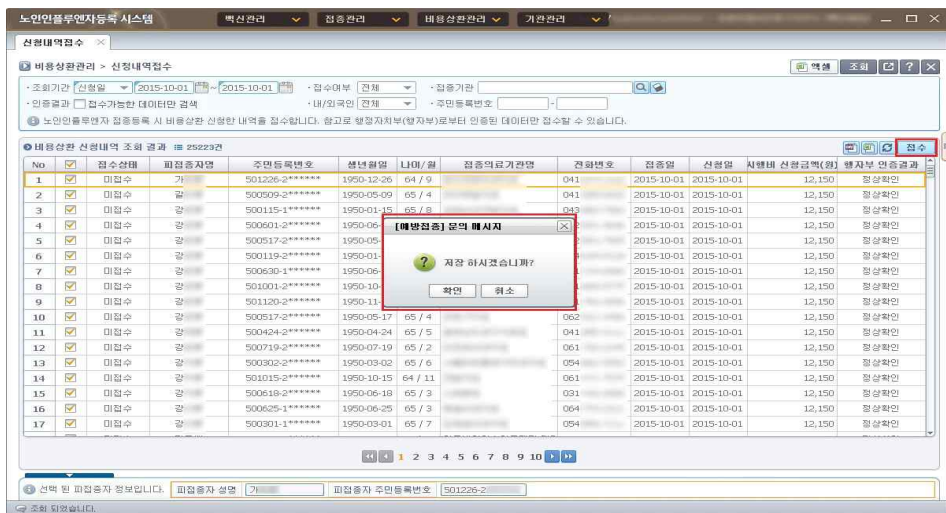


- ④ 조회된 리스트 중 데이터 하나를 선택하여 더블 클릭하면 피접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하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림 24. 비용상환 대상 세부 확인>

- ⑤ 전체선택 후 우측 상단의 접수 버튼을 클릭하면 “저장 하시겠습니까?” 메시지가 출력되며 확인을 클릭하면 신청내역이 접수됩니다.



<그림 25. 비용상환 접수>

⑥ 접수가 완료되면 접수상태가 ‘미접수’에서 ‘접수완료’로 바뀌게 됩니다.



<그림 26. 비용상환 접수 확인>

4.2. 지급관리(시행비)

① 지급관리(시행비)는 ‘비용상환관리’ > ‘지급관리(시행비)’ 메뉴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4.2.1. 지급요청전(前) 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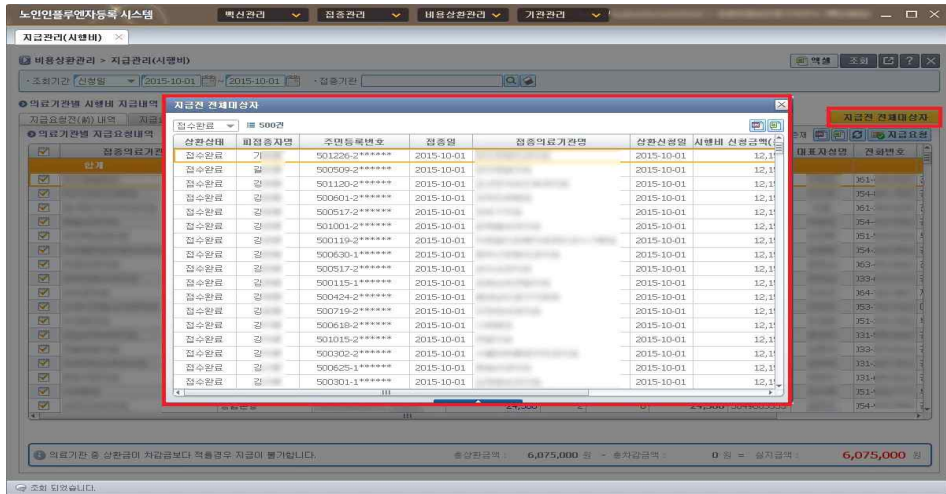
② 화면 상단에서 조건 설정 후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림 27. 비용상환 지급 대상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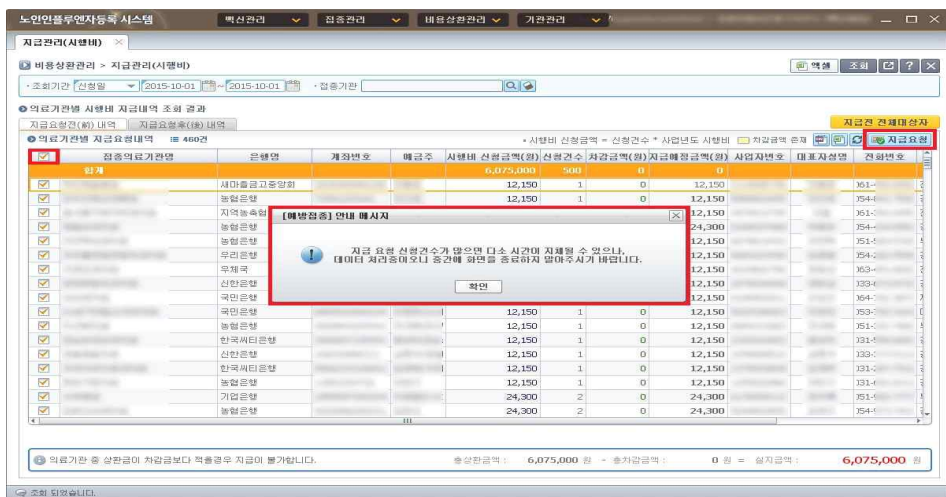


- ③ 오른쪽 상단에 '지급전 전체대상자' 버튼을 클릭하면 접수된 전체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림 28. 비용상환 전체 대상자 확인>

- ④ 조회된 내역에서 체크박스를 클릭하여 전체 선택 후 '지급요청'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안내 메시지가 출력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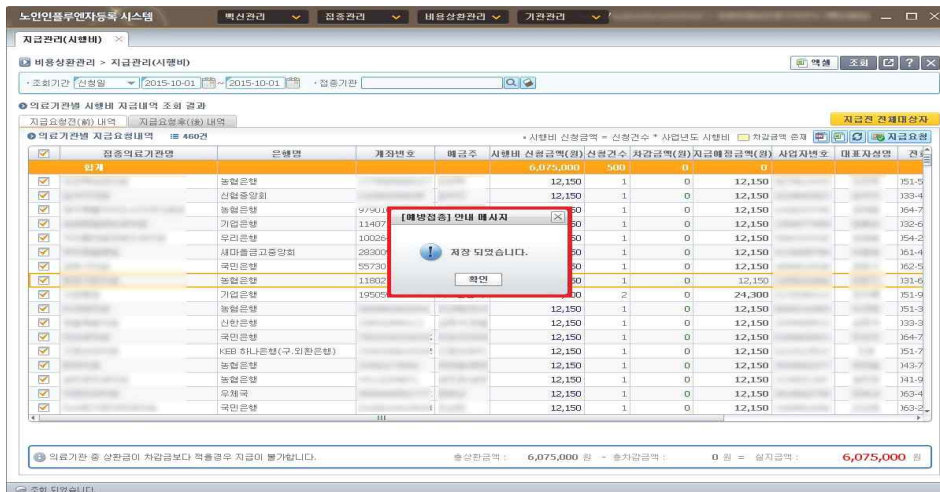
<그림 29. 비용상환 지급 요청>

- ④ 위의 메시지에서 확인을 하시면 아래와 같은 메시지가 출력되고, 하단에 실지금액을 확인 하신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지급요청이 진행됩니다.



<그림 30. 비용상환 지급요청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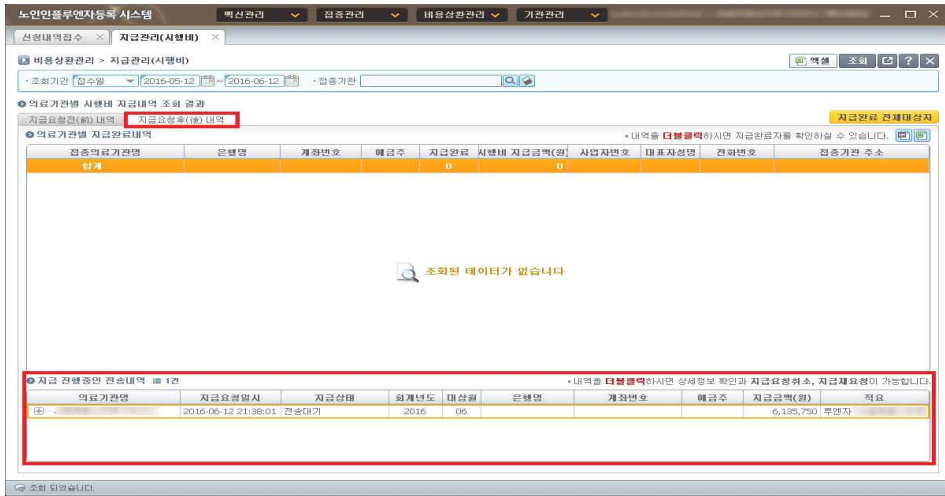
- ⑤ 지급요청이 완료 되면 다음과 같은 메시지가 출력됩니다.



<그림 31. 비용상환 지급요청 완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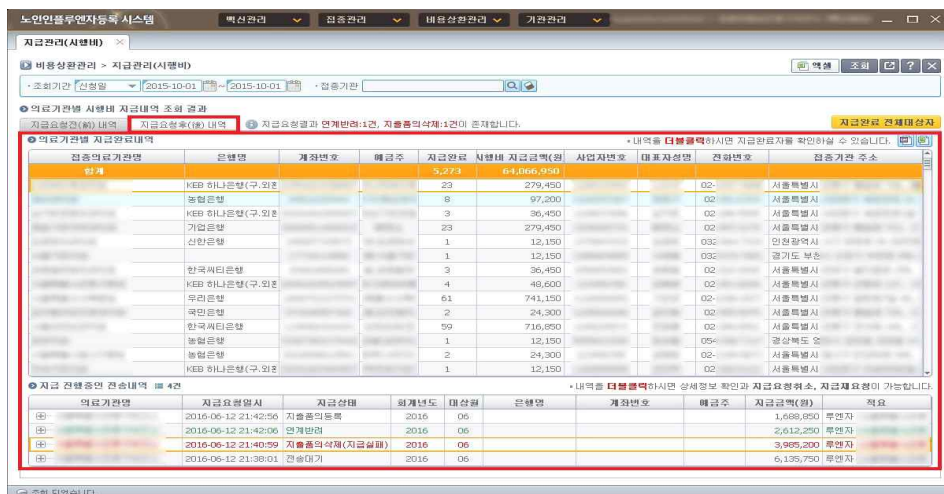
- ⑥ 지급요청 후(後) 내역을 클릭 후 지급 진행중인 전송내역 리스트에서 지급 요청한 내용을 확인 할 수 있고, 이후 e호조 시스템에서 지출품의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지출품의 등록을 하시면 지급상태가 전송대기에서 지출품의등록으로 바뀝니다.



<그림 32. 비용상환 지급요청 진행사항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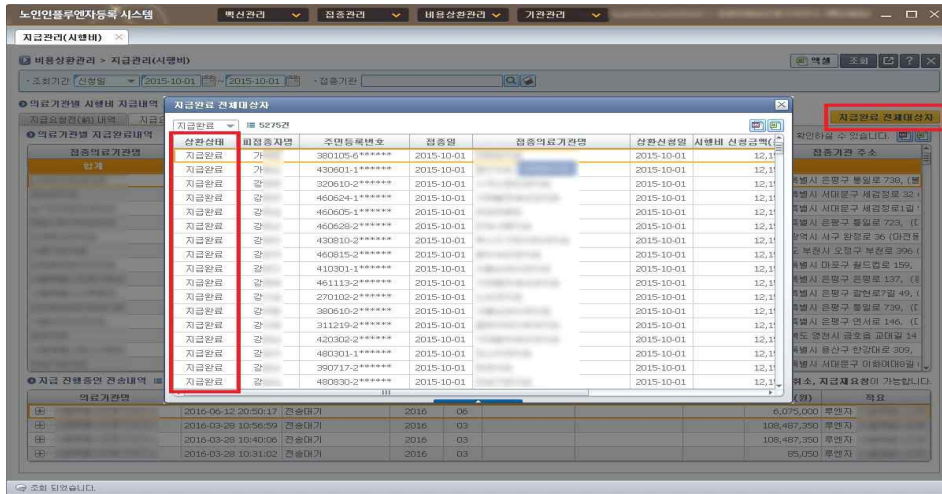
4.2.2. 지급요청후(後) 내역

- ⑦ 지급요청후(後) 내역을 클릭하면 지급완료내역과 지급 진행중인 내역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그림 33. 비용상환 지급요청 완료 내역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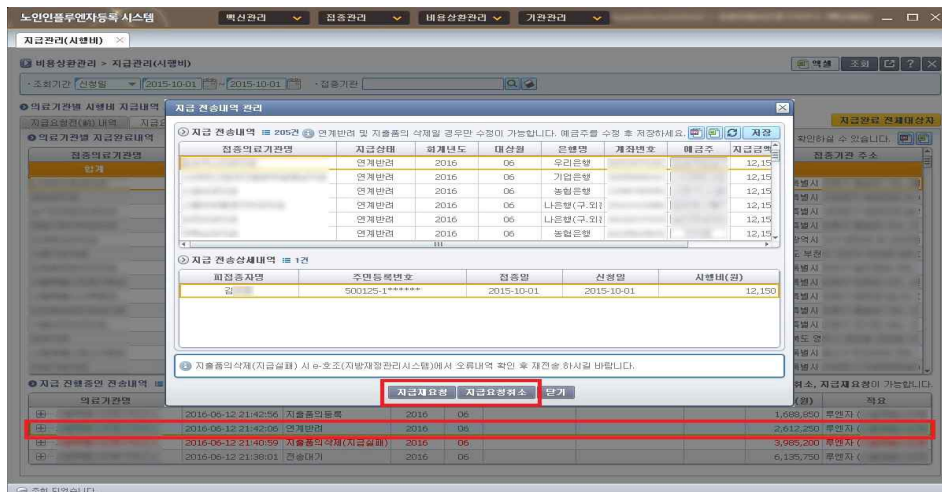
- ⑧ ‘지급완료 전체대상자’ 버튼을 클릭하면 지급완료 된 전체 대상자를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림 34. 비용상환 지급완료 전체 대상자 확인>

4.2.3. 지급전송내역관리(팝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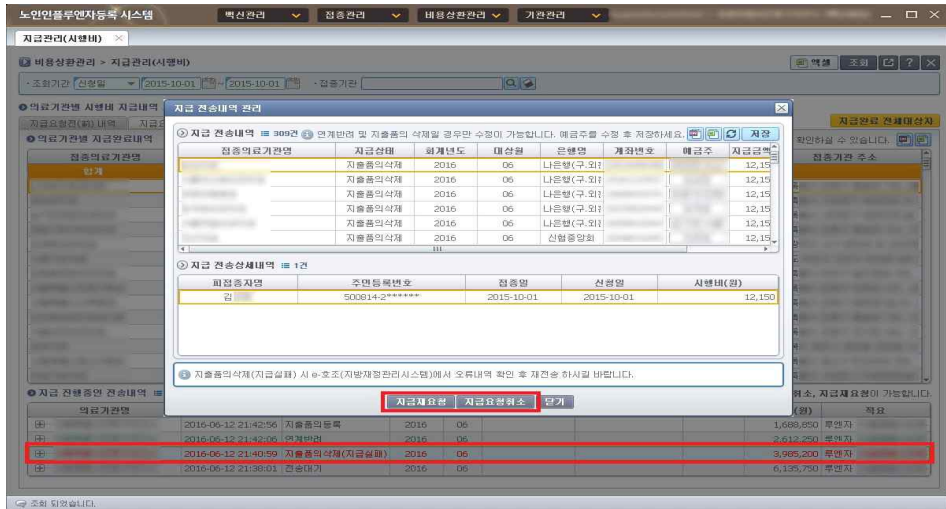
- ⑨ 지급 진행중인 전송내역 리스트에서 데이터 선택 후 더블 클릭하면 지급 진행중인 내역의 상세 정보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⑩ 연계반려 더블 클릭시 화면입니다. 지급재요청 또는 지급요청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림 35. 비용상환 지급 진행 중 세부내역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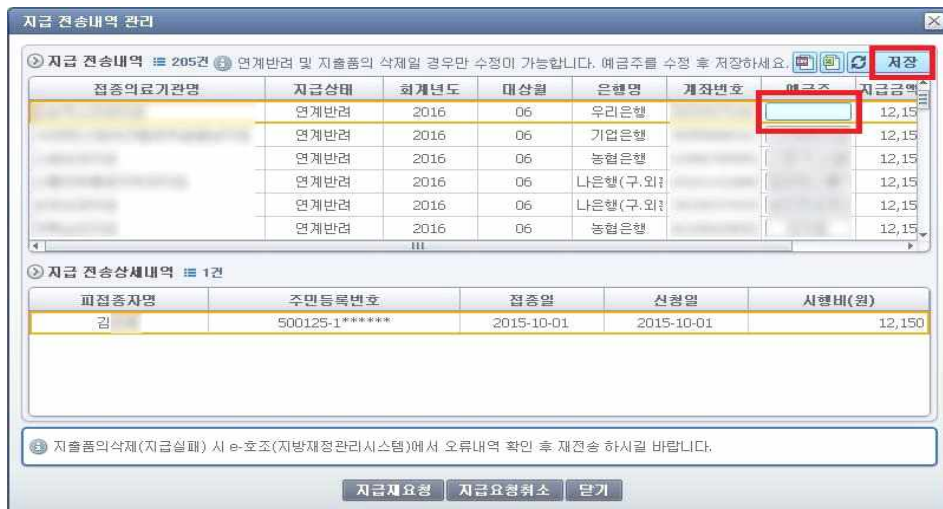


- ⑪ 지출품의삭제 더블 클릭시 화면입니다. 지급재요청 또는 지급요청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림 36. 비용상환 지급 오류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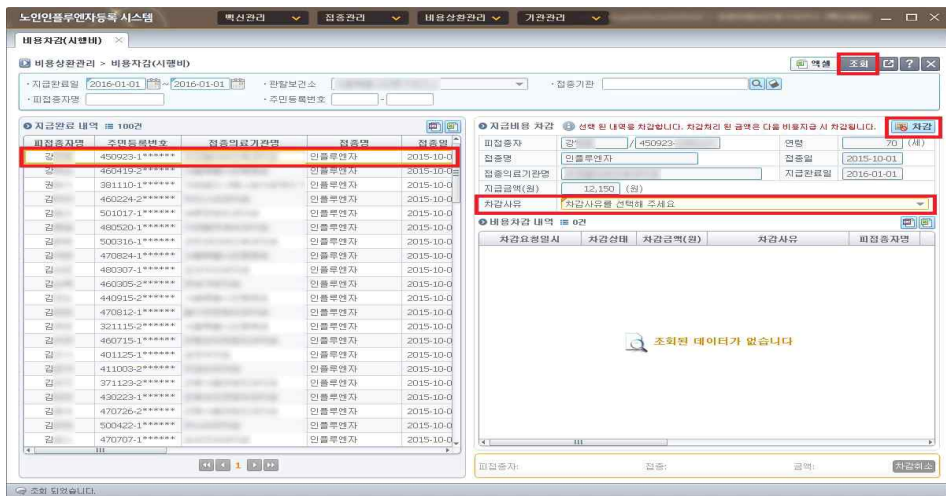
- ⑫ 연계반려 또는 지출품의삭제 일 경우에만 예금주명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예금주명 수정 후 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림 37. 비용상환 지급요청 내역 수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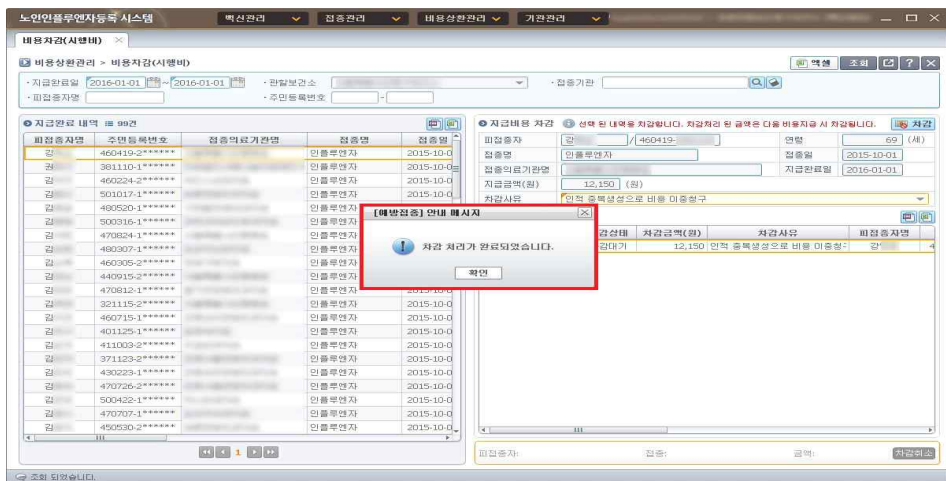
4.3. 비용차감(시행비)

- ① 비용차감(시행비)는 '비용상환관리' > '비용차감(시행비)' 메뉴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② 화면 상단에서 조건 설정 후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왼쪽 지급완료 내역에 리스트가 출력되고 완료 내역 중 차감할 데이터를 선택 후 차감사유(필수선택)를 선택하고 '차감'버튼을 클릭하여 차감을 합니다.



<그림 38. 비용차감 대상 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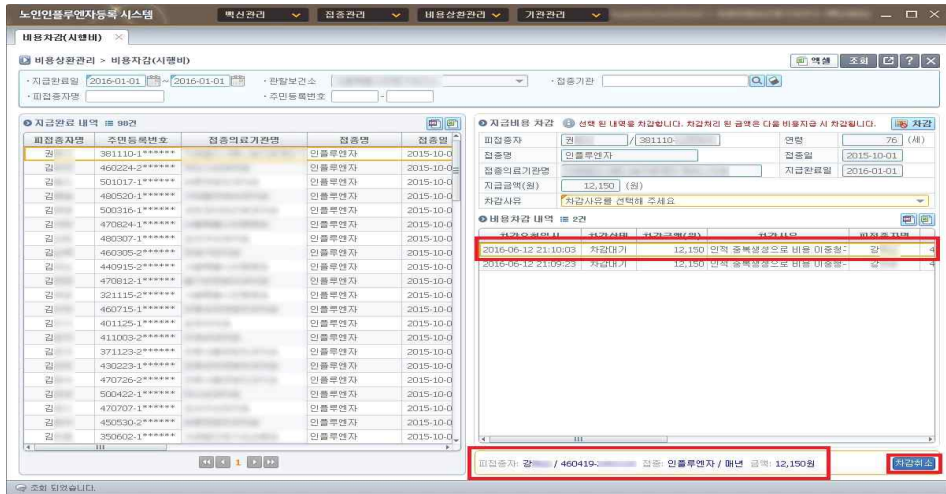
- ③ 차감이 등록되면 다음과 같은 메시지 출력 후 비용차감 내역에 차감상태-차감대기 상태로 리스트에 출력됩니다.



<그림 39. 비용차감 완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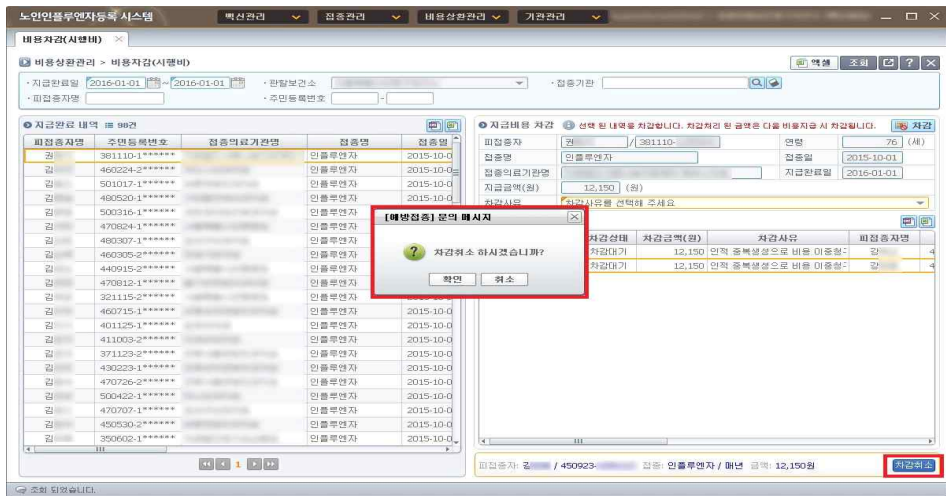


- ④ 비용차감 내역에서 데이터 선택 후 더블클릭을 하면 차감 신청된 피접종자의 정보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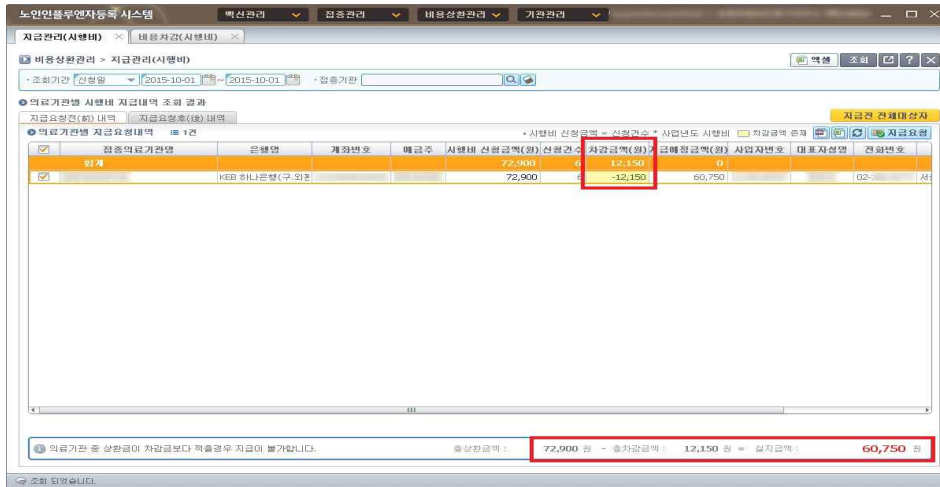
<그림 40. 비용차감 확인>

- ⑤ 하단에 '지급취소' 버튼을 클릭하면 비용차감 신청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그림 41. 비용차감 취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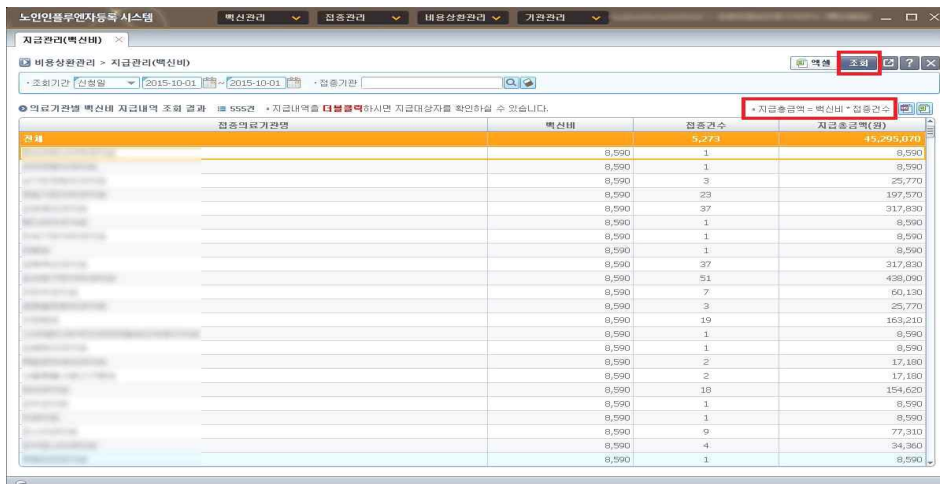
- ⑥ 비용차감을 등록하면 지급요청 시 지급관리(시행비)에서 해당 의료기관에서 자동 차감되어 집니다.



<그림 42. 비용차감 자동등록 확인>

4.4. 지급관리(백신비)

- ① 지급관리(백신비)는 ‘비용상환관리’ > ‘지급관리(백신비)’ 메뉴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② 화면 상단에서 조건 설정 후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시행비가 지급완료 된 해당 의료기관들의 백신비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그림 43. 백신비 지급 조회>

4.5. 비용상환내역(노인)

- ① 비용상환내역(노인)는 '비용상환관리' > '비용상환내역(노인)' 메뉴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② 화면 상단에서 조건 설정 후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비용상환내역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No	상환상내	지급완료액	자금금액(원)	관할보건소명	진료요기관명	기관 연도처	피접종자명	주민등록번호	피접종자 연도
1	비용지급(지급완료)	2015-11-12	12,150			02-	가	380105-6*****	010-
2	비용지급(지급완료)	2015-11-12	12,150			02-	가	430601-1*****	032
3	비용지급(지급완료)					041-	가	501226-2*****	041
4	비용지급(지급완료)					041-	갈	500509-2*****	041
5	비용지급(지급완료)	2015-11-12	12,150			02-	랑	320610-2*****	02-
6	비용지급(지급완료)	2015-11-12	12,150			02-	랑	460204-1*****	02-
7	비용지급(지급완료)					051-	랑	500630-1*****	051
8	비용지급(지급완료)					062-	랑	500517-2*****	062
9	비용지급(지급완료)					054-	랑	500119-2*****	054
10	비용지급(지급완료)					041-	랑	501001-2*****	041
11	비용지급(지급완료)					043-	랑	500115-1*****	043
12	비용지급(지급완료)					051-	랑	501120-2*****	010-
13	비용지급(지급완료)					062-	랑	500601-2*****	062
14	비용지급(지급완료)					032-	랑	500517-2*****	010-
15	비용지급(지급완료)	2015-11-12	12,150			02-	랑	460605-1*****	010-
16	비용지급(지급완료)	2015-11-12	12,150			02-	랑	460628-2*****	010-
17	비용지급(지급완료)	2015-11-12	12,150			02-	랑	430810-2*****	02-
18	비용지급(지급완료)	2015-11-12	12,150			02-	랑	460815-2*****	010-
19	비용지급(지급완료)	2015-11-12	12,150			02-	랑	410301-1*****	017
20	비용지급(지급완료)					041-	랑	500424-2*****	010-

<그림 44. 피접종자 비용지급 확인>

4.6. 비용상환현황(노인)

- ① 비용상환현황(노인)는 '비용상환관리' > '비용상환현황(노인)' 메뉴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② 화면 상단에서 조건 설정 후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비용상환현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명	개	내원상환 신청현황		개	미지급	지급처리 현황	
		내원수	완수			지급대기	지급완료
계	31,499	23,247	6,051	15,298	11,117	11,180	1,183
보건소	1	1	0	0	0	0	0
가정	2	2	0	0	0	0	0
노인복지관	1	1	0	1	1	0	0
지역사회	2	2	0	0	0	0	0
지역사회	2	2	0	0	0	0	0
지역사회	2	2	0	0	0	0	0
지역사회	5	5	0	0	0	0	0
지역사회	4	4	0	4	4	0	0
지역사회	1	1	0	1	1	0	0
지역사회	4	4	0	4	4	0	0
지역사회	2	2	0	2	2	0	0
지역사회	7	7	0	0	0	0	0
지역사회	3	2	1	1	0	1	0
지역사회	6	5	1	1	0	1	0
지역사회	1	1	0	0	0	0	0
지역사회	2	2	0	2	2	0	0
지역사회	3	3	0	0	0	0	0
지역사회	2	2	0	0	0	0	0
지역사회	1	1	0	0	0	0	0
지역사회	2	2	0	0	0	0	0
지역사회	1	1	0	0	0	0	0
지역사회	3	3	0	0	0	0	0

<그림 45. 비용상환 통계현황>

4.7. 행자부오류내역(노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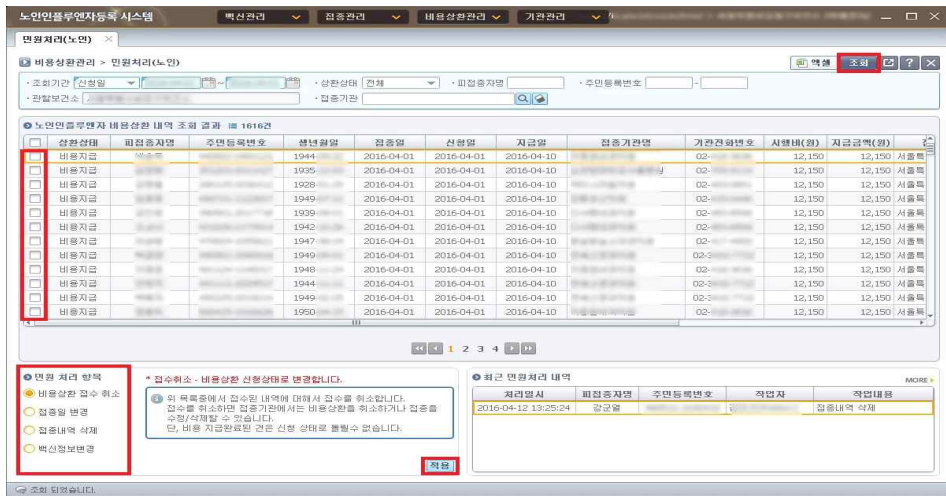
- ① 행자부오류내역(노인)는 ‘비용상환관리’ > ‘행자부오류내역(노인)’ 메뉴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② 화면 상단에서 조건 설정 후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행자부오류내역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No	피점증자명	피점증자 주민등록번호	피점증자 연역지	점증기관명	점증기관 관화번호	오류내용	점증명	신청일
1		200220-2*****	03		02	증제하지 않은 주민등록번호		
2		300514-2*****	011		02	증제하지 않은 주민등록번호		
3		410112-1*****	02		02	증제하지 않은 주민등록번호		

<그림 46. 행정자치부 검증 오류내역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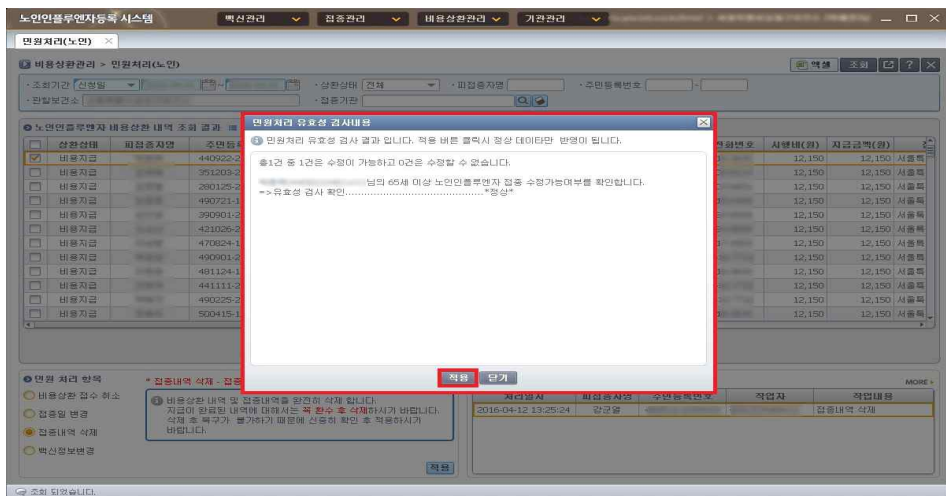
4.8. 민원처리(노인)

- ① 민원처리(노인)는 '비용상환관리' > '민원처리(노인)' 메뉴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② 화면 상단에서 조건 설정 후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조건에 맞는 비용상환 내역이 출력 되고 민원처리 할 데이터를 체크박스에서 선택 합니다. 선택 후 민원처리 항목에서 수행할 내용을 선택하고 '적용'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림 47. 집중등록 민원처리>

- ③ 민원처리 유효성 검사내용을 확인 후 '적용' 버튼을 클릭하면 민원처리가 완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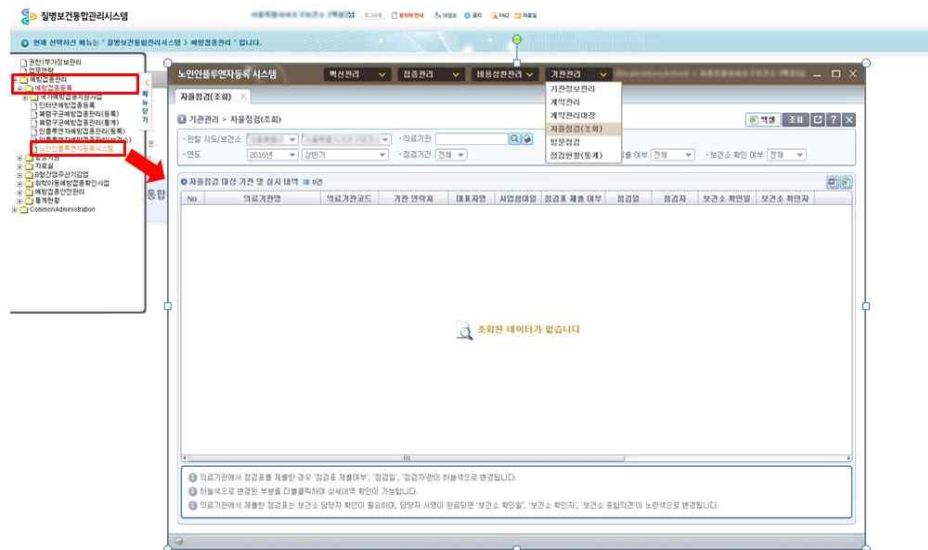
<그림 48. 민원처리 결과 확인>

5. 점검관리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is.cdc.go.kr/>) 사용자정보 ‘노인인플루엔자 등록시스템’에서 ‘의료기관점검관리’ 업무가 가능합니다.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로그인 후 좌측 메뉴에서 ‘예방 접종 관리’ > ‘예방접종등록’ > ‘노인인플루엔자 등록시스템’을 클릭합니다.

상단 메뉴보기에서 ‘기관관리’ > ‘자율점검(조회)’ 메뉴로 이동하여 의료기관자율점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림 49. 노인인플루엔자 사업 자율점검 메뉴>

5.2. 방문점검

- ① ‘기관관리’ > ‘방문점검’ 메뉴에서 관내 위탁의료기관 방문점검 내역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 ② 방문점검 실시내역을 연도, 점검기간, 점검상태 등의 조건을 구분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 ③ 조회리스트에서 해당기관의 이력보기 항목의 ‘보기’를 더블클릭 시 전산등록 완료된 방문점검 이력을 조회할 수 있으며, 점검등록 항목의 [등록]을 더블클릭 시 방문 점검내역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 ④ 보건소에서 점검실시내역을 등록 시 점검상태가 ‘미완료’에서 ‘점검완료’로 변경되며, 내역이 파란색으로 보여집니다

① 보건소에서 실시한 방문점검결과를 등록하는 메뉴입니다. 방문점검은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권리가 미충한 의료기관은 마중 사항에 대해 재검閲하여 조치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② 방문점검 종합결과에 의해 최종 등록된 방문점검표 결과값 기준으로 자동 산출됩니다.
(양자) 모든 항목이 '합합' 또는 '매우합합'인 경우, (미충) '미충' 항목이 한 개 이상인 경우, (매우미충) '매우미충' 항목이 한 개 이상인 경우

③ 방문점검 메뉴관련 상세 내용은 오른쪽 상단 [도움말]버튼을 클릭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그림 51. 방문점검 관리>



5.2.1. 방문점검 등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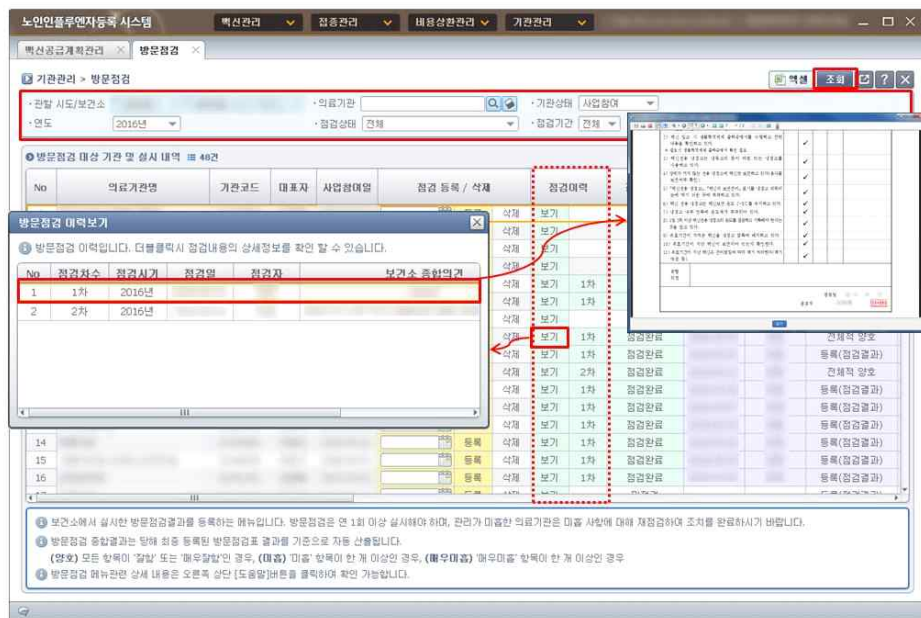
- ① 화면 상단에서 조건 설정 후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 ② 조회 리스트에서 방문점검 결과를 전산 등록할 의료기관에서 날짜 선택후 [등록] 버튼을 더블 클릭하면 '방문점검표' 팝업화면이 생성됩니다.
- ③ '방문점검표' 의 문항별 결과체크 및 종합의견을 작성합니다.
- ④ (서명)을 클릭하여 인증서 서명을 완료하고,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방문점검 등록이 완료됩니다.
- ⑤ 등록완료 내역은 점검여부가 '점검완료'로 바뀌고, 배경색은 보라색으로 변경됩니다.
- ⑥ 등록된 방문점검표 상세내용은 '이력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⑦ 재점검을 실시할 경우에도 같은 방법으로 등록합니다.



<그림 52. 방문점검 등록 관리>

5.2.2 방문점검 이력조회

- ① 보건소에서 등록한 방문점검 결과는 의료기관별로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② 화면 상단에서 조건 설정 후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 ③ 조회리스트에서 확인하고 싶은 의료기관의 '이력보기'에서 [보기]를 더블 클릭하면 '방문점검 이력보기' 팝업화면이 생성됩니다.
- ④ 팝업화면에 해당 의료기관의 방문점검내역이 조회되며, 내역을 더블클릭 시 등록된 방문점검표의 상세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림 53. 방문점검 이력 확인>



6. 이상반응 전산관리

6.1. 이상반응 신고방법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is.cdc.go.kr>) → 예방접종관리 → 예방접종안전관리 → 이상반응 → 병원/보건소 신고관리 : 보건소 및 의료기관 신고



<그림 54.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병원/보건소 신고 1>

- ① 아래의 검색조건 중 하나를 선택 → [조회] 버튼 클릭
 - 피접종자 주민등록번호
 - 보호자 주민등록번호
- ② 피접종자 검색결과에서 해당 피접종자 클릭 → 해당 접종내역 클릭 → [이상반응 신고] 버튼 클릭

The screenshot shows a web-based form for reporting abnormal reactions. It includes fields for patient name, birth date, and address. There are sections for the reporting agency (date, name) and the reporting agency (name, address). A large section is dedicated to selecting the type of reaction and its progress status from multiple radio button options. A '저장' (Save) button is at the bottom, and a yellow button for '이상반응 종류 및 진행상황 입력' is highlighted with a blue arr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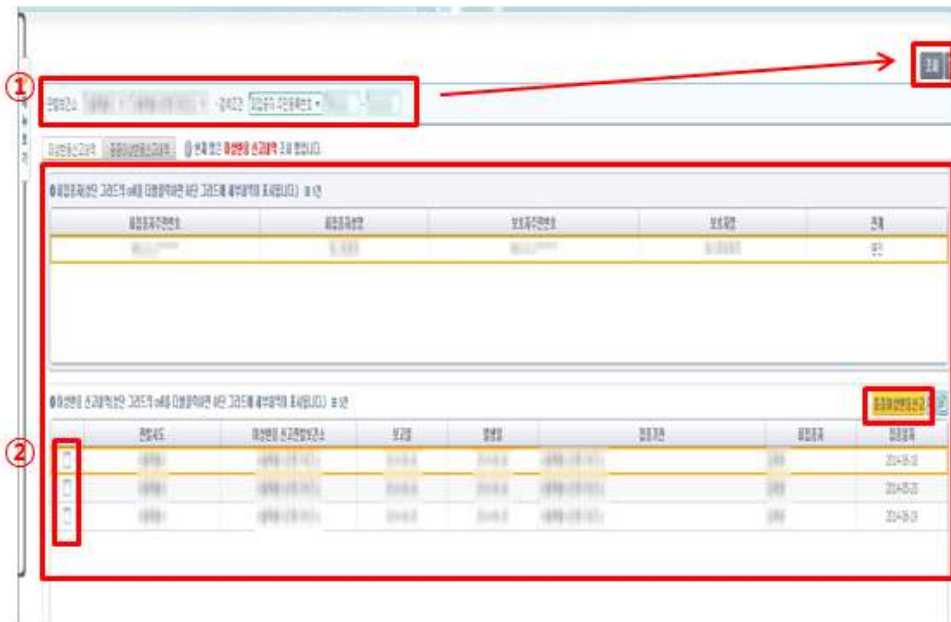
<그림 55.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병의원/보건소 신고 2>

- ① 이상반응환자 인적정보 확인
 - ② 접종기관정보 확인
 - ③ 예방접종정보 확인
 - ④ 이상반응 신고기관정보 확인
 - ⑤ [이상반응 종류 및 진행상황 입력버튼] 클릭
 - 이상반응 종류와 진행상황을 **반드시** 체크
 - ⑥ 입력내용 확인 후 [저장] 버튼 클릭
- ※ 인적정보, 접종기관정보, 예방접종정보, 신고기관정보 등이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직접 입력함



6.2 중증이상반응 신고방법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is.cdc.go.kr>) → 예방접종관리 → 예방접종안전관리 → 이상반응 → 중증이상반응 신고관리 : 보건소만 신고



<그림 56. 중증이상반응 신고 1>

- ① 아래의 검색조건 중 하나를 선택 → [조회] 버튼 클릭
 - 피접종자 주민등록번호
 - 피접종자 성명
- ② 이상반응 신고 내역에서 해당 건 선택하고 → [중증이상반응신고] 버튼 클릭
 - ※ 이상반응 신고내역이 있어야 중증이상반응 신고 가능

<그림 57. 중증이상반응 신고 2>

- ① 이상반응환자 인적정보, 접종기관정보, 이상반응 등록 접종내역 확인
- ② [기초조사 사항] 버튼 클릭 → 기초조사사항 내역 입력 후 [저장] 버튼 클릭
 - 기초조사 사항: 접종현황, 인적사항, 개인적 특성, 발생경위, 현재상태(진단명), 예방접종내역, 예방접종 과정, 동일 제조번호 백신 접종자의 이상 유무 확인, 기타 특이사항
- ③ 입력내역 확인 후 [저장] 버튼 클릭 → 수정사항 없으면 [확인] 버튼 클릭
- ④ 2차 보고가 있을 경우 입력



부 록 12 계절 인플루엔자 관련 FAQ

Q 1. 인플루엔자는 감기와 다른가요? 인플루엔자 백신을 접종하면 감기도 예방할 수 있나요?

☞ 인플루엔자는 흔히 독감이라고 불리기 때문에 감기와 같은 병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같은 급성 호흡기 감염증이라도 독감과 감기는 다른 병입니다. 감기는 다양한 감기 바이러스에 의해서 발생하는 급성 호흡기 질환을 말하며, 인플루엔자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호흡기(코, 인후, 기관지, 폐 등)를 통하여 감염되어 생기는 병으로 감기와는 달리 심한 증상을 나타내거나 생명이 위험한 합병증(폐렴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 기침, 재채기를 하거나 말을 할 때에 공기 중으로 바이러스가 배출되면서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이므로 다른 종류의 바이러스에 의한 감기에는 효과가 없습니다.

Q 2. 인플루엔자에 걸리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나요?

☞ 열감(발열), 두통, 전신쇠약감, 마른기침, 인두통, 코막힘 및 근육통 등이 인플루엔자의 흔한 증상입니다. 어린이의 경우에는 성인과는 달리 오심, 구토 및 설사 등의 위장관 증상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Q 3. 인플루엔자에 걸리면 어떤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 인플루엔자의 가장 흔한 합병증은 세균성 폐렴이며 이외에도 심근염, 심낭염, 기흉, 기종격동, 뇌염, 뇌증, 횡단성 척수염, 횡문근 용해, 라이 증후군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만성기관지염이나 만성호흡기질환, 만성심혈관계 질환의 경우 인플루엔자 감염으로 악화될 수 있습니다. 합병증은 노인, 소아, 만성질환자 등에서 잘 발생하며 이로 인해 입원하거나 사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Q 4.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노출된 후 얼마 만에 증상이 나타나며, 얼마동안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킬 수 있나요?

☞ 인플루엔자 증상은 바이러스에 노출된 후 보통 1~4일(평균 2일) 정도 지나면 나타나게 됩니다. 인플루엔자 환자의 경우 나이에 따라서 전염기간에 차이가 있는데, 성인의 경우 대개 증상이 생기기 하루 전부터 증상이 생긴 후 약 5일 동안 감염력이 있으나 소아의 경우에는 증상 발생 후 10일 이상 감염력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Q 5. 인플루엔자 백신 내의 티메로살의 안전성에 논란이 있습니다. 티메로살이 든 백신을 접종받아도 안전한가요?

☞ 현재 국내에서 사용되는 인플루엔자 백신 중 다회용(멀티도스) 백신과 1회 접종용 백신 일부에 티메로살이 포함되어 있으나, 티메로살이 유해하다는 증거는 없으며 티메로살에 포함된 에틸머큐리(ethylmercury)는 독성이 알려진 메틸머큐리 (methylmercury)와는 달리 체외로 잘 배설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수은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영유아 대상 백신에는 가급적 티메로살을 사용하지 않거나 소량만을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Q 6.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독감을 일으킬 수도 있나요?

☞ 인플루엔자 불활성화 백신의 경우 감염을 유발할 수 없습니다. 생백신의 경우 살아있는 바이러스가 들어있으나 약독화된 바이러스로 감염을 유발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면역력이 저하되어 있는 사람이나 임신부의 경우 최대한 안전을 기하기 위해 불활성화 백신 접종을 권고합니다.

Q 7. 인플루엔자 생백신을 접종받은 후 다른 사람에게 백신 바이러스를 전파시킬 수 있나요?

☞ 임상시험 결과 아주 드물게 백신 바이러스가 전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백신 바이러스가 전파되었다 하더라도 병을 일으킬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조혈모세포이식을 받은 사람과 같이 심각하게 면역기능이 저하된 사람과 접촉해야 하는 사람이라면 불활성화백신 접종을 권고합니다. 또한 생백신을 접종받은 사람은 백신 접종 후 7일간 심한 면역저하자와의 접촉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8.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얼마나 효과가 있나요?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건강한 젊은 사람에서는 약 70~90%의 예방효과가 있으나, 노인이나 만성질환이 있는 사람에서는 효과가 약간 떨어집니다. 그러나 노인이나 만성질환자의 경우에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으로 인플루엔자로 인한 입원과 사망을 줄이는 데 매우 효과적이므로 이들은 접종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Q 9. 올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했는데 인플루엔자에 걸릴 수 있나요?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더라도 인플루엔자에 걸릴 수 있습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후 약 2주 가량 경과되면 방어항체가 형성됩니다. 따라서 그 이전에는 인플루엔자에 감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접종한 백신의 바이러스와 당해 유행 바이러스의 종류가 다르면 백신의 효과가 떨어집니다. 백신을 접종받는 사람의 연령이나 기저질환, 건강상태에 따라서도 백신 효과가 떨어질 수 있으며 이 경우 인플루엔자에 걸릴 수 있습니다.

Q 10. 아픈 사람도 인플루엔자 생백신을 맞을 수 있나요?

☞ 가벼운 질환 즉, 설사나 가벼운 상기도 감염이 있는 정도라면 생백신 접종이 가능합니다. 단, 현재 코막힘 증상이 있는 경우 생백신 접종 방법의 특성상 백신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코막힘 증상이 호전된 후 생백신 접종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11. 인플루엔자에 효과적인 약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나요?

☞ 인플루엔자에 대한 항바이러스제로는 Amantadine, Rimantadine, Zanamivir, Oseltamivir, Peramivir 등이 있습니다. 항바이러스제는 인플루엔자 증상 발현 후 48시간 이내에 사용하는 경우에 증상을 경감시키거나 경과를 단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 항바이러스제 사용 여부는 담당의사와 상의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Q 12. 인플루엔자를 앓고 있는 어린이에게는 아스피린을 사용해도 되나요?

☞ 인플루엔자 유사 증상이 있는 어린이에게는 의사의 자문 없이 아스피린을 투여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특히, 열이 나는 경우에는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이는 라이증후군 (Reye syndrome)이라는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이증후군(Reye syndrome)

원인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인플루엔자나 수두 등 바이러스 질환에 걸린 소아에게서 발생하며 아스피린 등 살리실산 제제의 복용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급성 뇌증과 함께 간의 지방변성을 초래하는 질환으로서 심한 구토와 함께 경련, 혼수, 사망에 이를 수 있다.

Q 13. 임신 동안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해도 괜찮은가요?

☞ 임신 동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금기사항이 아니며 오히려 임신 시 인플루엔자 감염은 일반인에 비해 인플루엔자 감염으로 인한 합병증 위험성이 더 크기 때문에 접종을 권고합니다. 인플루엔자 유행 시기에 임신 중에 있는 사람은 임신 시기에 상관없이 불활성화 백신 접종을 권장합니다.

Q 14. 과거 백신접종 경력이 없는 소아가 만 35개월에 1차 접종을 하고 만 36개월에 2차 접종을 하는 경우 백신 접종 용량은 어떻게 되나요?

☞ 인플루엔자 백신의 접종용량은 백신 접종 당시의 연령에 맞춰 선택해야 합니다. 따라서, 만35개월에 1차 접종 시는 0.25mL를 접종하고, 만36개월에 2차 접종 시는 0.5mL를 접종하면 됩니다.

Q 15. 26개월 된 아기입니다. 작년에 처음 인플루엔자 백신을 접종하였는데 1회만 접종 하였습니다. 올해 두 번 접종을 해야 하나요?

☞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첫 해에 1회만 접종받은 경우 그 다음해 4주 간격으로 2회 접종을 실시해야 하므로 2015-2016절기 백신으로 4주 이상 간격을 유지하여 2회 접종합니다.



Q 16. 현재 만 8세 소아로 2010년도에 인플루엔자 백신을 처음 접종하였는데 1회만 접종하였고, 그 이후로는 접종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접종횟수는 어떻게 되나요?

☞ 2015년 7월 이전 인플루엔자 접종력이 1회만 있는 경우에는 4주 이상 간격을 유지하여 2회 접종을 실시합니다.

Q 17. '16~'17절기 인플루엔자 접종 권장 주는 어떻게 되나요?

☞ '16~'17절기 WHO 권장주는 A/California/7/2009(H1N1)pdm09-like virus, A/Hong/4801/2014(H3N2)-like virus, B/Brisbane/60/2008-like virus입니다.

부 록 13 노인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련 FAQ

사업 총괄

Q 1. 사업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사업기간은 2016. 10. 4.(화) ~ 2016. 11. 15.(화)까지이지만 의료기관에 백신 잔량이 있을 경우 관할 보건소와 협의하여 11월 내에서 사업기간을 연장하실 수 있습니다.

Q 2. 사업 개시일 이전에도 접종이 가능한가요?

☞ 사업 개시일 이전에는 접종이 불가능합니다. 접종일 기준 2016. 10. 4.부터 전산등록 및 비용상환 가능합니다.

Q 3. 고혈압 등 타질환으로 진료가 동일한 날에 이루어지더라도 청구는 문제없나?

☞ 예방접종 당일 고혈압 등 타질환으로 진료한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 청구는 가능하며, 기타 진료비 청구와 관련된 사항은 건강보험공단에 문의(☎ 1577-1000)하시기 바랍니다.

기관인증서 등록 관련

Q 4. 전산으로 노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사업 위탁계약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로그인 시 이미 인증서로 로그인을 하고 있는데, 기관 인증서를 등록해야 하나요?

☞ 그렇습니다.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로그인은 “개인인증서”로 하고, 이후 전자계약 시에는 ‘개인인증서’가 아닌 “기관인증서”를 등록해야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Q 5. 계약에 필요한 의료기관인증서는 어떤 인증서를 등록하면 되나요?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급하여 건강보험관리공단 조회 시 사용하는 기관 인증서를 등록합니다.

유효하지 않으므로, 전자서명이 불가합니다. '의료기관정보'에 등록된 인증서를 새로 발급받은 인증서로 갱신(재등록) 한 후 다시 시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수료정보 관련

Q 9. 계약신청 메뉴의 교육수료정보에서 이수한 교육내역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계약수료정보'에는 기관에 등록된 모든 예진의사의 교육정보가 조회됩니다. 예진의사의 교육수료정보가 보이지 않는다면 질병보건통합시스템에 사용자 정보가 없거나 의사명과 기관코드의 매칭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입니다. 해당 기관 소속 예진의사를 정확하게 등록하시고 교육 수료를 완료했으나 조회되지 않는 예진의사의 교육정보는 교육수료증을 다운로드 후 상단의 교육 수료번호를 입력하고 '미확인'버튼을 클릭해서 검증을 하시면 교육수료 완료시에 '미확인'버튼이 '수료'로 바뀌며 검증이 완료됩니다.

* 교육수료증은 질병관리본부 교육시스템(educdc.go.kr)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Q 10. 어린이 예방접종사업 위탁의료기관은 아닌데, 「1기 노인플루 예방접종사업 위탁 의료기관 교육」 과정이 보여 이 과정을 수료하였습니다. 이 수료증으로 노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 위탁 체결을 할 수 있나요?

☞ 의료기관 중, 최근 3년(2014~2016)이내에 어린이 사업 관련 이러닝 교육(기본 또는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한 내역이 있는 경우, 자동으로 「1기 노인플루 예방접종사업 위탁의료기관 교육(4차시)」을 신청할 수 있도록 보여줍니다. 어린이 사업관련 이러닝 과정과 「(1기) 노인플루 예방접종지원사업 위탁의료기관 교육」 과정 모두를 이수한 경우 사업에 필요한 내용을 모두 학습하였으므로 사업 체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단, 두 과정에 대한 수료여부를 관할 보건소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11. 어린이 예방접종사업 위탁의료기관인데 2기과정이 보입니다. 왜 그런가요?

☞ 교육 수강 내역은 개인별로 관리가 되므로 어린이 예방접종사업 위탁의료



기관이라도 예방접종을 시행하는 의사가 다수인 경우, 어린이 예방접종사업 관련 이러닝 교육과정 (기본 또는 보수)을 수료하지 않은 의사가 교육시스템에 로그인을 하면 2기과정이 보여집니다. 어린이 예방접종사업에 참여하면서 관련 기본 또는 보수 교육을 수강한 적이 없다면 먼저 「(기본교육)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위탁 의료기관 교육」 과정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1기) 노인플루 예방접종사업 위탁의료기관 교육」 과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 12. 병원급입니다. 어린이 예방접종사업 참여의료기관인데, 노인 인플루엔자 접종은 다른 의사(내과 혹은 타과의 의사)가 접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어떤 과정을 이수해야 하나요?

☞ 어린이 예방접종을 시행하는 의사와 노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시행하는 의사가 다른 경우, 노인 인플루엔자 접종을 시행할 의사는 「(2기) 노인플루 예방접종사업 위탁의료기관 교육(8차시)」 과정을 이수하시면 됩니다. 「(1기) 노인플루 예방접종사업 위탁의료기관 교육(4차시)」 과정을 잘못 신청하신 경우, 질병관리본부 (☎ 043-719-6848-68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 13. 노인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입니다. 예방접종을 시행할 의사가 다수인 경우, 모두 교육을 들어야 하나요?

☞ 위탁의료기관의 의료인(의사)은 사업 실시 이전에 예방접종업무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안전한 예방접종시행 및 사업내용 숙지를 위하여 예방접종을 시행하는 의료인은 모두 교육과정을 이수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위탁 계약시에는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인(1인 기본)의 교육수료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질병관리본부 교육시스템(<http://edu.cdc.go.kr>)에서 회원가입(실명 기입) 및 개인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 공인인증서는 중복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접종 의사가 다수인 경우, 회원 가입시 개인의 은행 공인인증서도 등록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14.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수료증을 출력해보니 성명란에 “병원이름” 또는 “타인 이름”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수정하나요?

☞ 교육 수료증에는 회원가입 시 성명란에 기입한 대로 출력이 됩니다. 실명이 아닌 다른 명으로 기입을 하고 이미 과정을 이수한 경우는 성명 수정이 불가합니다.

이때는 실제 예방접종 시행 의사 실명으로 다시 회원가입 하시고 재수강하셔야 합니다. 단, 교육과정 수강 전이라면, 질병관리본부 (☎ 국번없이 1644-14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통장사본 업로드

Q 15. 현재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노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사업 위탁계약을 신청하려는데 통장사본을 업로드 해야 하나요?

A 기존 위탁계약정보가 있다 하더라도 재계약 시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동일한 계좌로 비용을 지급 받는다 하더라도 통장사본 업로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통장사본은 이미지 파일(JPG, GIF, PNG)만 업로드 가능합니다.

*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사업 위탁계약 구비 서류: 교육수료증, 통장사본, 참여백신 시행 확인증

* 노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위탁계약 구비 서류: 교육수료증, 통장사본, 사전 자율점검표

Q 16. 비용지급에 사용할 계좌정보를 변경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위탁계약 체결 이후 계좌변경이 필요한 경우 계약신청(노인) 메뉴에서 통장사본을 다시 업로드 하시기 바랍니다. 업로드한 통장사본을 보건소에서 승인한 이후부터 변경된 계좌정보로 비용지급 됩니다.

계약서, 지정서

Q 17. 현재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데 ‘노인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 지원사업’도 참여하고자 합니다. 계약서를 사업별로 각각 작성해야 하나요?

A 네 그렇습니다.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별 계약신청 메뉴에서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각각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Q 18. 전자계약 체결 후 의료기관에서 '위탁 의료기관 지정서' 출력이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보건소에서 계약서에 서명을 완료하면 계약이 성립되며, 의료기관에서 직접 온라인으로 계약서와 지정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전자계약 관련 기타

Q 19. 위탁 계약 체결을 위한 사전 조건은 무엇입니까?

- ☞ 위탁계약 체결을 위하여 의료기관 예진의사는 예방접종 업무에 관한 교육 과정을 반드시 이수하셔야 합니다.
- ☞ 신규 참여 의료기관은 계약 전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자율점검표를 제출해야 계약체결이 가능하며, 계약체결 이후에는 매년 8월말까지 관할 보건소에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사전 자율점검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Q 20. 계약신청 메뉴에서 관련 서류를 작성하려는데 팝업(참여백신 시행확인증, 사전자율 점검표, 위탁계약서)화면 내용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관련 프로그램이 미설치된 경우입니다. 화면 상단 또는 하단에 ezPDFReader 프로그램 설치 안내에 따라 설치를 완료하고, 시스템 종료 후 다시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 만약, 설치문구가 보이지 않는 경우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 '예방접종관리' → '자료실' → '프로그램/ 매뉴얼'에서 ezPDFReader 수동 설치파일을 다운로드 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Q 21. 팝업화면은 보이는데, 내용 작성 후 [저장]버튼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ezPDFReader 설치 후에도 화면이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는 경우라면 모니터 해상도 조절이 필요합니다. 화면 해상도가 낮은 PC환경에서는 화면 하단부분이 다 보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바탕화면에서 권장 픽셀로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백신 관련

Q 24. 위탁계약 체결에 따른 예상수요(수량 신청) 제출 기한은 언제인가요?

- ☞ 지난절기에 계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은 7월 1일부터 8월 12일까지 이며, 신규



계약하는 의료기관은 계약 완료(보건소 승인) 후 8월 12일까지입니다.

Q 25. 의료기관 백신 배정 기준은 무엇입니까?

☞ 보건소 국가사업목표량(주민등록 상 65세 이상 인구의 82%)과 지역내 인구수, 지난절기 공급량, 사용량, 회수량, 지역적 특성 등을 참고로 검토하여 백신량을 배정합니다.

Q 26. 백신 예상 소요량을 작성하려고 합니다. 작성 시 사업기간 내 소요량을 작성하면 되나요? 그리고 어떤 부분을 고려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백신 예상 소요량 작성 시 사업기간 내 소요량을 모두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이 때 작년 동기간(인플루엔자 사업기간)에 의료기관 내원자 수, 지난 절기 백신공급량·사용량·회수량, 위탁의료기관 당 하루 100명이라는 상한 조건을 고려하여 최대한 구체적인 수요를 산출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백신 포장단위가 20 도즈이므로 최소 20 도즈부터 공급이 가능하며, 날개로는 공급이 불가합니다.

Q 27. 위탁 의료기관에 백신 공급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위탁의료기관에서 제출한 예상수요량을 보건소에서 검토·확정하여 백신 배정량을 결정합니다. 결정된 백신배정량의 80~90%는 9월 중 의료기관으로 공급이 완료되며, 그 외 10~20%는 보건소에서 보관하고, 의료기관의 추가수요가 있을시 공급하게 됩니다. 사업 기간내 의료기관의 백신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관할 보건소에 백신을 추가공급 요청하면 보건소에서 추가 수요량에 대해 검토 후 추가 공급을 실시합니다.

Q 28. 공급 받은 백신을 모두 소진하고 백신 추가 신청건의 공급이 늦어지는 공백기가 생긴다면 의료기관에서 확보하고 있는 다른 백신으로 먼저 접종을 하고 추후 백신을 공급받으면 문제가 되는지요?

☞ 국가사업용으로 공급된 백신 외에 의료기관에서 자체 보유하고 있는 백신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백신이 소진되기 전 관할 보건소에 추가 공급 요청을 통해 사전에 백신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 단, 위탁의료기관에서 백신 보관 중 파손, 타 대상자(중복접종 포함)에게 접종한

물량은 의료기관 자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백신으로 대체하여야 합니다.

Q 29. 위탁 의료기관에서 신청한 백신을 사업기간 내에 모두 사용하지 못해 백신이 남을 경우 어떤 방법으로 처리되나요? 의료기관에 그에 따른 불이익은 없나요?

☞ 신청한 백신이 남을 경우, 사업기간이 종료된 이후 남은 백신은 조달계약 도매상을 통해 회수할 예정입니다. 단, 조달계약 시 3%까지의 잔량에 대해서 조달 도매상(제조사)이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였기에, 백신이 과도하게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기관의 백신은 사전에 보건소의 관리하에 백신이 부족한 의료기관으로 전배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 종료시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백신에 대해 보건소의 전배 요청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차년도 위탁계약 및 백신공급에 불이익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Q 30. 사업 종결 후 반품이 불가능한 백신을 65세 미만의 대상자에게 접종하고 시장 가격을 받으면 문제가 되나요?

☞ 국가사업용 백신을 65세 미만의 접종자에게 접종하시면 안됩니다. 사업 종료 후에는 국가사업용 백신을 전량 수거할 예정이나, 혹시라도 의료기관에 남아 있는 국가사업용 백신을 사업 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접종하는 일이 없도록 백신 및 접종자 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31. 사업기간 종결 시 백신 잔량이 발생한 경우 기간 연장이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관할 보건소와 협의하여 11월 내에서 사업기간을 연장하실 수 있습니다.

Q 32. 예방접종 과정에서 백신이 파손되거나 바늘이 오염되어 접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반품이 가능한지요?

☞ 백신 인수 시 발견한 파손에 대해서는 배송 과정의 문제로 다음 번 공급 시 추가적으로 공급받으실 수 있으나, 인수 후 의료기관 보관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자체 보유 물량으로 대체하셔야 합니다.

Q 33.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노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국가예방접종사업으로 피해보상 신청이 가능한 예방접종입니다. 만약 접종자가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인해 진료비 등이 발생했다면 관할 보건소를 통해 피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이상반응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피해보상 신청이 가능하며, 보상과 관련된 서류는 관할보건소로 문의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시면 됩니다.

* 국가보상절차 : 보상관련 서류를 관할보건소에 제출 → 역학조사 및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회의 →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 심의 → 보상판정 시 보상금 지급, 기각 시 이의 신청 1회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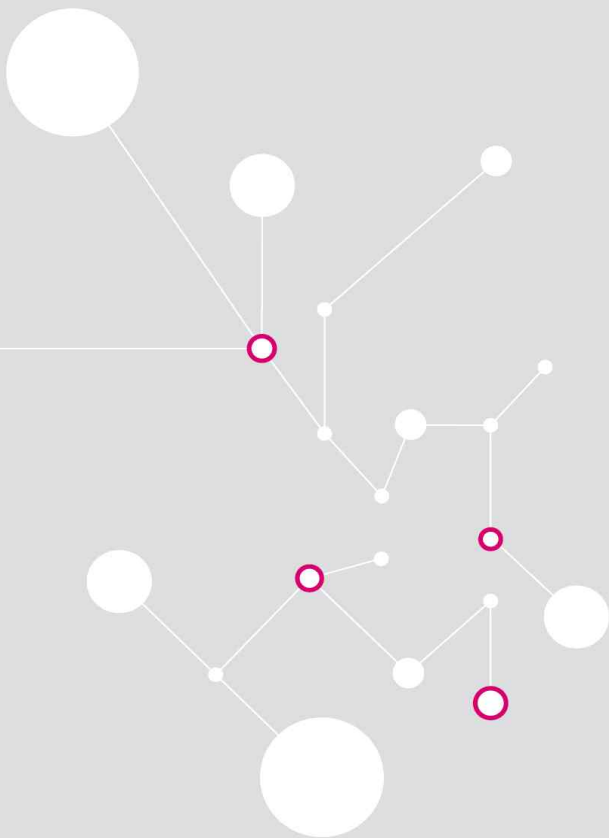
☞ 의료기관에서는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을 대비하여 예방접종의 일반원칙 및 접종 전, 후의 주의사항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34.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과 관련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이 아나필락시스 발생에 대비한 응급처치 장비를 구비하지 않으면 계약체결이 불가능한가요?

☞ 아나필락시스 발생에 대비한 응급처치 장비 구비가 계약서 상에 명시된 필수조건은 아니지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의 대상자가 65세 이상의 고위험군임을 감안할 때 관련 장비를 구비하여 사업을 수행하실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참 고 자 료

1. 항바이러스제 요양급여 기준
2. 관련부서 역할 및 연락처
3.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연락처



참고자료 1 항바이러스제 영양급여 기준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p data-bbox="232 840 387 1071">Oseltamivir phosphate 경구제 (품명: 타미플루캡셀 등)</p>	<p data-bbox="402 498 1264 568">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영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 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p> <p data-bbox="757 609 919 635" style="text-align: center;">- 아 래 -</p> <p data-bbox="402 649 1264 880">가. 인플루엔자(신종인플루엔자 포함)주의보(해외유입 인플루엔자주의보 포함)가 발표된 이후나 검사에서 인플루엔자(신종인플루엔자 포함)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된 경우 다음의 고위험군 환자에게 초기증상(기침, 두통, 인후통 등 2개 이상의 증상 및 고열)이 발생한지 48시간 이내에 투여 시 영양급여를 인정함. 다만, 입원 환자는 증상발생 48시간 이후라도 의사가 투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투여한 경우 영양급여를 인정함.</p> <p data-bbox="757 921 919 948" style="text-align: center;">- 다 음 -</p> <ol data-bbox="402 962 863 1275" style="list-style-type: none"> 1) 1세 이상 9세 이하 소아 2) 임신부 3) 65세 이상 4) 면역저하자 5) 대사장애(Metabolic disorders) 6) 심장질환(Cardiac disease) 7) 폐질환(Pulmonary disease) 8) 신장기능장애(Renal dysfunction) 등 <p data-bbox="402 1304 1264 1412">나. 조류인플루엔자의 경우 조류인플루엔자주의보가 발표된 이후나 검사상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된 경우에는 허가사항 범위 내(치료 및 예방) 투여 시 영양급여를 인정함.</p>
<p data-bbox="232 1535 387 1725">Zanamivir 외용제 (품명: 리렌자 로타디스크)</p>	<p data-bbox="402 1443 1264 1512">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영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 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p> <p data-bbox="757 1553 919 1580" style="text-align: center;">- 아 래 -</p> <p data-bbox="402 1594 1264 1825">가. 인플루엔자(신종인플루엔자 포함)주의보(해외유입 인플루엔자주의보 포함)가 발표된 이후나 검사상 인플루엔자(신종인플루엔자 포함)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된 경우 다음의 고위험군 환자에게 초기증상(기침, 두통, 인후통 등 2개 이상의 증상 및 고열)이 발생한지 48시간 이내에 투여 시 영양급여를 인정함. 다만, 입원환자는 증상발생 48시간 이후라도 의사가 투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투여한 경우 영양급여를 인정함.</p>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p style="text-align: center;">- 다 음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7세 이상 12세 이하 소아 2) 임신 3개월 이상 임신부 3) 65세 이상 4) 면역저하자 5) 대사장애(Metabolic disorders) 6) 심장질환(Cardiac disease) 7) 폐질환(Pulmonary disease) 8) 신기능장애(Renal dysfunction) 등 <p>나. 조류인플루엔자의 경우 조류인플루엔자주의보가 발표된 이후나 검사상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된 경우에는 허가사항 범위 내(치료 및 예방) 투여 시 영양급여를 인정함.</p>

※ 자료원 : 영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고시 제2015-117호('15.6.30)]

참고자료 2 > 관련부서 역할 및 연락처

부서명		주요역할	전화번호
질병 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 주관	043) 719-6817, 6848~6852(상담)
	감염병감시과	·인플루엔자 표본감시	043) 719-7172
국립 보건연구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과	·인플루엔자 검체수집 및 유전형분석	043) 719-8194



참고자료 3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연락처

지역	주 소	부서명	전화번호
서울	서초구 양재동 203-3 (137-130)	바이러스검사팀	02) 570-3429
부산	북구 함박봉로 140번길 120 (616-110)	역학조사과	051) 309-2811
대구	수성구 지산동 771번지 (706-090)	역학조사과	053) 760-1342
인천	중구 신흥동 2가 18-4번지 (405-220)	질병조사과	032) 440-5438
광주	서구 화정3동 898 시청2청사(502-837)	미생물팀	062) 613-7631
대전	유성구 구성동 21-1 (305-338)	질병조사과	042) 870-3416
울산	울산광역시 남구 옥동 832 (680-845)	미생물과	052) 229-5222
경기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324-1 (440-290)	미생물팀	031) 250-2552
경기 북부	의정부시 신곡동 800 (480-764)	미생물검사팀	031) 8030-5926
강원	춘천시 신북읍 신천리 728 (200-822)	미생물과	033) 248-6418
충북	청원군 강외면 오송생명1로 194-14 (363-915)	미생물과	043) 220-5922
충남	대전시 동구 가양2동 44-1 (300-290)	미생물검사과	041) 635-6824
전북	임실군 임실읍 성가리 55 (566-806)	인수공통감염과	063) 290-5224
전남	무안군 삼향읍 남약리 1593-1 (534-821)	미생물과	061) 240-5213
경북	영천시 금호읍 원제리 산 58-17 (770-762)	미생물검사과	054) 339-8242
경남	창원시 사림동 133-1 (641-241)	미생물역학과	055) 254-2246
제주	제주시 연동 1452-1 (690-170)	미생물과	064) 710-7514

2016~2017절기 인플루엔자관리지침

발 행 : 2016년 7월

발 행 처 : 질병관리본부

편 집 인 : 홍 정 익

편집위원 : 유정희, 신인숙, 김명진, 정연화, 이화영

주 소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보건의료행정타운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

전 화 : 043-719-6848~52

F A X : 043-719-6859

편집·기획 : 대승사(044-868-2027, 2037)
